

입법평가 연구 09-16-□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차현숙 · 윤석진 · 윤계형 · 장건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Support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연구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a, Hyun-Sook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oon, Seok-Jin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Yun, Gye-Hyeong

장건춘(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Jang, Guhn-Choon

2009. 10. 30.

국문 요약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출산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의 양육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 부담 중 큰 원인인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료 관련 규정과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번 입법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는 규범론적 평가,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 회의 및 실태조사를 선택하였다. 특히 비교법적 연구 및 전문가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된 학부모 및 시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입법대안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로 보육료 지원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은 크게 보육료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다양화와 지원의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은 관련 법안의 제·개정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다만 보육료 지원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안 및 권고가 제시되어 영유아 보육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성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보육료 산정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도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차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 키워드 : 영유아보육법, 입법평가, 보육료, 보육료 지원, 공공성, 다양성

Abstract

As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is active, the falling birthrate tendency becomes remarkable, and the burdens from bringing up children and nursing infants are presented as the cause of that. At this point, especi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support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providing the care cost which is the primary cause of the burdens from nursing infant child, is in nee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support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will be proceeding on the regulations regard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its Enforcement Rule, the guide of care service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so forth. The normative evaluation, the research in comparative laws, the specialists' conference, and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are chosen as the judgement standard for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basis of The receptive capacity on the alternative legislation will be surveyed with focus on the research, being especially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in comparative laws and the specialists' conference, on the actual conditions on parents of students and the directors of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supporting care cost in Infant Care Act, the alternative on supporting care cost is presented. The alternative might be widely divided into the ensuring systemicity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care cost, the enlargement of public element of child-care, and the providing of care service oriented toward user. Especially, in the providing of care service oriented toward user, the diversification of service and the support rationalization as a alternative i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supporting care cost. This alternative will be the material

which can be reflected in enacting and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but this paper says that the review on the systemicity of laws all related to the nursing infant child, and economic analysis related to the computation of care cost were not conducted, because of the alternative and advice being presented with focus on the supporting care cost. Hereafter, it should be reflected, when enacting and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Infant Care Act.

※ Key Words : Infant Care Ac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care cost, supporting care cost, public element, diversification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서									
1. 입법평가의 대상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 보육료 지원 관련 법제 ○ 보육사업안내 								
2. 입법평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차현숙 ○ 공동연구자: 윤석진, 윤계형, 장건춘 								
3. 입법평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저출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저출산의 원인 중 양육·육아의 부담이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양육·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에 관한 법제들을 점검하여 불 필요성이 있음 								
4. 입법평가의 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문헌조사</td> <td>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입법체계와 보육정책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규범적 분석</td> <td>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체계성을 부여하고,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들에 대하여 검토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교법적 분석</td> <td>공동 육아형 국가와 대리 육아형 국가로 나누어 각각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사회학적 분석</td> <td>시설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수용성·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td> </tr> </table>	문헌조사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입법체계와 보육정책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함	규범적 분석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체계성을 부여하고,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들에 대하여 검토함	비교법적 분석	공동 육아형 국가와 대리 육아형 국가로 나누어 각각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함	법사회학적 분석	시설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수용성·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문헌조사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 입법체계와 보육정책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함							
	규범적 분석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체계성을 부여하고,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들에 대하여 검토함							
	비교법적 분석	공동 육아형 국가와 대리 육아형 국가로 나누어 각각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함							
법사회학적 분석	시설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제에 대한 인지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수용성·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입법평가서														
	비용· 편익 분석	입법평가의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은 유용하지 만, 이 평가에서는 의미있게 분석하지 못하였음.												
5. 입법평가의 절차	평가기간	2009. 3. 1.-10. 31.(8개월)												
	워크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회의 (2009. 6. 4) ○ 설문 문항 관련 워크숍 등 총 4회의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설문조사	시설장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HRC MS패널을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대상: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 표본크기: 150명 ○ 표본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공립 (사회복지법인 포함)</th> <th>민간</th> <th>가정</th> <th>직장 보육 시설</th> <th>총</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55</td> <td>55</td> <td>10</td> <td>150</td> </tr> </tbody> </table>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포함)	민간	가정	직장 보육 시설	총	30	55	55	1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수도권 외)을 각각 75명씩 조사. ○ 표본추출방법: 표본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 조사기간: 2009년 8월 21일~ 2009년 9월 1일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8.00%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포함)	민간	가정	직장 보육 시설	총							
30	55	55	10	150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HRC MS패널을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대상: 만 0세~5세(03.1.1~ 현재 출생)까지 보육시 													

입법평가서																	
			<p>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크기: 500명 ○ 표본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서울</th> <th>경기 (인천 포함)</th> <th>경상</th> <th>호남</th> <th>충청</th> <th>강원</th> <th>총</th> </tr> </thead> <tbody> <tr> <td>130</td> <td>160</td> <td>110</td> <td>40</td> <td>45</td> <td>15</td> <td>5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방법: 표본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 조사기간: 2009년 8월 21일~ 2009년 9월 1일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38\%$ 	서울	경기 (인천 포함)	경상	호남	충청	강원	총	130	160	110	40	45	15	500
서울	경기 (인천 포함)	경상	호남	충청	강원	총											
130	160	110	40	45	15	500											
6. 대안 및 한계	대안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지원사업의 위임근거 명확화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보육 인력의 전문성 확대 -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 - 취업모 지원 - 가정보육교사제도 확대 - 다양한 보육과정의 확대와 비용지원 - 보육료 및 부대비용 지원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강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지원은 보육정책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향후 영유아보육법 등 보육료 지원 관련 법제에 대한 제·개정시 보육정 															

입법평가서		
		<p>책의 이념·철학 등과 연계하여 법과 정책·제도가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p>
	<p>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체계성 평가의 한계: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전반에 대한 체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한계: 입법평가의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은 유용함.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인력적 한계 및 시간적 한계로 실시하지 못했음. 차후 입법 시에는 경제적 분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9
I. 입법평가의 필요성	19
II. 입법평가의 목적	20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20
제 3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21
I. 규범론적 평가	21
II.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등	22
III. 비교법적 분석	23
IV. 전문가워크숍	23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25
제 1 절 영유아 보육료 관련 법제	25
I. 영유아보육 및 관련 법제 연혁	25
II. 현행 영유아보육료 관련 법제	29
제 2 절 영유아보육료 관련 정책	50
I. 영유아 보육료 지급정책	50

II. 2009년 보육료 지원단가 관련 현황	70
III.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소개	71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91
제 1 절 규범론적 평가	91
I. 입법체계상의 문제	91
II. 위임입법의 한계	92
제 2 절 비교법적 분석	97
I. 스웨덴의 보육정책	98
II. 프랑스의 보육정책	101
III. 미국의 보육정책	104
IV. 영국의 보육정책	106
V. 소 결	109
제 3 절 전문가회의	114
제 4 절 실태조사 분석	115
I. 조사 개요	116
II. 시설장 설문 조사 결과	127
III.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161
IV. 시설장과 학부모의 조사결과 비교	208
제 4 장 대안 및 권고	217
제 1 절 대안 : 관련 법령 개선안	217
I. 보육료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	217
II. 보육의 공공성·보편적 서비스화	219
III.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220

제 2 절 입법평가의 한계	238
참 고 문 헌	241

【자 료】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249
자료 2.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중 비용 관련 규정	261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261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262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63
(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65
(5)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266
(6)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267
(7)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268
(8) 강원도 보육조례	269
(9)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270
(10)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271
(11) 경상북도 보육조례	272
(12)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273
(13)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274
자료 3. 관련 서식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275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283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301

제 1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I. 입법평가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출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¹⁾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는 부모의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일을 포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노동 시장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노동시간 동안 아이의 양육을 맡아줄 기재가 없기 때문이다.²⁾

20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교육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다.³⁾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자녀들의 보육권의 보장 뿐 아니라 어머니들의 노동권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육정책은 아동복지·여성복지·가정복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

1)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비 부담과 사회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2) 2005년 OECD 세계여성정책동향,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자료(원자료 출처 : http://www.oecd.org/infobycountry/0,2646,en_2649_34819_1_1_1_1,00.html), 2면 이하 참조.

3) 변화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직장여성중심(1만불이하) → 직장여성중심+아동보육(1~2만불) → 직장여성중심+아동보육·교육(2~3만불) → 아동보육·교육>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참조(2009년 3월 20일 검색) http://www.mw.go.kr/front/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2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와 조기교육 과열 현상 등으로 양육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반위에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키며, 출산을 하락과 같은 인구문제, 아동 빈곤과 교육적 불이익의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의 보육료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행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입법평가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중에서 보육과 관련 하여 중요한 기준의 하나인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평가 방법론을 선택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영유아보육법제에 있어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우선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다. 또한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 지급과 관련

4) OECD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II,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2면.

된 보육사업 안내 등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 3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다양한 기준이 선택될 수 있다. 이는 목표달성도, 비용, 비용편익, 수용성, 실효성, 부수적 효과 등의 심사기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평가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학부모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규범론적 평가와 비교법적 연구방법 그리고 전문가회의를 선택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I. 규범론적 평가

1. 목표달성도 평가

규범론적 분석은 특히 입법의 목적이 현재에 달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 및 그 입법목적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목표달성도를 심사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종종 법률에는 일반적인 상위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타목표와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목표와 조치들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유용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특정 법률의 상위목표를 목표달성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① 특정 법률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② 그 법률의 주 목표는 무엇인가, ③ 어떠한 하위목표, 부수목표 등이 추구되는가, ④ 목표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⑤ 목표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개별적

인 조치들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⑥ 주목표, 기타 목표 및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들간의 추측된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⁵⁾

2. 규범연혁적·체계적 분석

영유아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규범론적 분석을 통하여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규범론적 분석은 우선 현행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제에 대한 연역적 분석 및 법체계성 분석⁶⁾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현재 개별 법령의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진행한다. 물론 제안되어 있는 입법안들은 개별 법령에 대한 입법대안의 하나로서 입법평가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II.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등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는 법규정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법사회학적 방법론의 일환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료 지급과 관련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5)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2007), 187면.

6) 이와 같은 법규정에 대한 체계성 심사는 법규범의 내부적인 구조 및 법적인 논증의 실제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해가능성의 검토는 용어의 개념적인 명확성과 언어적인 분명함을 높여주는 도구이기도 한다. 이해가능성의 검토는 법규범들이 이해 가능한지와 준수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정해야 한다. 법규정의 본질적인 의미 내용은 규범수범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하고, 법규정은 규범수범자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박영도, 앞의 책, 107면 이하 참조.

Ⅲ. 비교법적 분석

영유아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와 유사한 문제들을 겪은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Ⅳ. 전문가워크숍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하여 전문가회의 및 워크숍을 활용한다. 해당 분야의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보육정책 관련 공무원 내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또한 입법대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 보육은 과거 ‘탁아’에서 발달된 용어이다. 영어로 ‘day care’로 표기되는 탁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낮 동안 아이를 맡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육은 일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보육서비스가 반드시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맡는다’라는 용어에는 마치 아동을 물건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보육(child care)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보육은 과거에 사용하던 탁아 개념에서 발전하여 ‘교육’과 ‘보호’의 합성어인 ‘보육(educare)’로 변화했다고 설명된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아동은 출생시부터 부모나 사회로부터 존중되고 보살핌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보육이 필요하다.⁷⁾

아래에서는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육 및 보육관련 법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영유아 보육료 관련 법제

I. 영유아보육 및 관련 법제 연혁

1. 보육사업의 태동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7) 황휘선, 영유아보육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면.

2.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공포로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조정·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이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하고, 국가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재·교구를 연구개발하며, 교원을 양성하고 유아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지도는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군교육장이 하도록 하며,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및 폐지의 인가와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며, 새마을유아원교직원의 자격·직무·복무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유아원의 인가청은 새마을유아원의 자립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의 제정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8)

4.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2조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9)

5.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및 이후 개정연혁10)

영유아보육법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라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시설 설립 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 곤란, 관장부처의 다원화로 체

8) 황휘선, 앞의 논문, 10면.

9) 황휘선, 앞의 논문, 10면.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연혁법령 및 황휘선, 앞의 논문, 11-12면을 참조하여 정리함.

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고,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는 등 영유아가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절차가 승계되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제도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II. 현행 영유아보육료 관련 법제

현행 보육료 지급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다.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 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p>	<p>제25조(사업주의 비용 보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p>		<p>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p>		<p>[전문개정 2009.7.3]</p> <p>제35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p>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p> <p>②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 [중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7.3>]</p>
<p>제34조의2 (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p>	<p>제21조의6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득</p> <p>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p> <p>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도</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매업·소매업·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p> <p>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p> <p>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기적 금품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p> <p>2. 재산</p> <p>가. 일반재산: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임차보증금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재산</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p> <p>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p> <p>③제1항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방법,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6.30]</p>	
<p>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p>		<p>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 35조의 3 제 2 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7.3]</p>
<p>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제21조의7(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4 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p>	<p>제35조의5(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신용 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12.19]</p>	<p>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p> <p>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p> <p>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p> <p>②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p> <p>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p> <p>③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p> <p>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p>[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9.6.30>]</p>	<p>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p> <p>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주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 17호의3서식</p> <p>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p>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원 신청자에게 비용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2에서 이동 <2009.7.3>]</p>
<p>제 34조의5(조사·질문)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p>		<p>제35조의6(확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 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p>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7.3] [제35조의3에서 이동</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⑥보육비용 지원대상에</p>		<p><2009.7.3>]</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9]</p>		
<p>제34조의6 (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p>	<p>제21조의8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p>	<p>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p> <p>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p>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4에서 이동 <2009.6.30>]</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12.19]</p>		
<p>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p>	<p>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p>	<p>제35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p> <p>③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p>②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p> <p>②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7.3]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7.3>]</p>
<p>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 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약보육 실시 비용</p> <p>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p>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39조(세제 지원) ①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p>		
<p>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p>[전문개정 2007.10.17]</p>		
<p>제56조(과태료) ①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p>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p> <p>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29></p> <p>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p>		<p>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09.6.30]</p>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07.10.17]</p>		
		<p>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p> <p>[본조신설 2009.7.3]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7.3>]</p>

제 2 절 영유아보육료 관련 정책

I. 영유아 보육료 지급정책

현재의 정부의 보육료지급은 2008년 유아에 대하여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기본보조금지원정책은 보육시설¹¹⁾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부모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되었으나, 2009년 그 지급체계 및 지원단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보육비용 지원¹²⁾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1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12) 보육비용지원의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09년 6월 4일 실시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의 전문가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서문희 실장이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동 워크숍 자료집 10-32면 참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크게 설치비나 개보수비원, 시설 운영비, 보육료의 세 가지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말하며, 시설운영비와 아동 보육비 지원은 각각 전달방식에 따라 시설보조금, 부모보조금으로 구분되고 시설 공급 주체에 따라서 지원 종류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보육시설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보육비용 지원 방식

1)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되며,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¹³⁾

한편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¹⁴⁾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3)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직장보육 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다.

14)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표>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 교사 80%) - 추가지원: 농어촌, 폐광지역, 도서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40인 미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 (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18명 이상)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 유아반 별도 편성 : 보육교사 인건비 30% -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80% -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구 분		지원내용
민간가정 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120만원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24시간 보육시설	-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직장보육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12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연도별 국공립·법인보육시설 이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12월말기준)	연령	국공립	법인	유아반교사 수 추정
2008	계	123,604	114,082	-
	0세	2,218	2,790	-
	만1세	11,216	10,403	-
	만2세	23,152	22,349	-
	만3세	28,195	26,717	10,211
	만4세	28,232	23,875	
	만5세	26,214	24,010	
	만6세	2,259	1,462	
	만7세이상	2,118	2,476	
2007	계	119,141	118,211	-
	0세	1,879	2,183	-
	만1세	9,403	8,626	-
	만2세	21,560	21,375	-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연 도 (12월말기준)	연령	국공립	법인	유아반교사 수 추정
	만3세	26,950	28,006	10,682
	만4세	28,180	27,027	
	만5세	24,935	24,278	
	만6세이상	6,234	6,716	
2006	계	128,677	146,737	-
	2세미만	13,579	17,436	-
	만2세	21,977	27,435	-
	만3~5세	87,223	97,391	9,749
	만6세이상	5,898	4,475	
2005	계	120,969	148,336	-
	2세미만	12,494	16,878	-
	만2세	20,671	27,129	-
	만3~5세	82,786	99,655	9,607
	만6세이상	5,018	4,674	
2004	계	107,335	135,531	-
	0세	1,513	1,254	-
	만1세	7,591	7,069	-
	만2세	17,561	18,874	-
	만3세	25,911	33,793	9,607
	만4세	26,819	36,802	
	만5세	24,318	32,812	

제 2 절 영유아보육료 관련 정책

연 도 (12월말기준)	연령	국공립	법인	유아반교사 수 추정
	만6세이상	3,622	4,927	
2003	계	109,234	157,700	-
	2세미만	11,056	14,206	-
	만2세	19,408	25,951	-
	만3~5세	75,179	112,226	9,816
	만6세이상	3,591	5,317	
2002	계	103,351	142,035	-
	0세	1,063	595	-
	만1세	6,867	5,986	-
	만2세	16,233	19,283	-
	만3세	25,230	35,803	9,173
	만4세	26,483	39,913	
	만5세	22,871	33,158	
	만6세이상	4,604	7,297	
2001	계	102,118	161,419	-
	6개월미만	202	108	-
	12개월미만	681	785	-
	24개월미만	6,846	7,224	-
	만2세	16,245	21,396	-
	만3세이상	78,144	131,906	10,503

* 유아는 만 3세 이상 아동이며, 유아반교사 수 추정은 시설이용자/20(교사 편성기준)을 한 결과임.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보육시설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보육시설 유형		국공립/법인/법인의외	민간개인/가정/협동/직장(일부)
보육료	차등보육료(0~4세)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 0세 733천원, 1세 506천원, 2세 390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지원율	- 상반기 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 하반기 소득하위50%(4층의 일부포함) 100%, 4층 60%, 5층 30%
	만5세아무상보육료	- 단가 172천원, 1~5층 100%	
	장애아무상보육료	- 383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 733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두자녀이상보육료	-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연령별 단가의 20~50%	
	방과후보육료	- 1, 2층 및 장애아에 한해 만5세아 단가의 50% 범위 내	
시간연장형보육료	- 시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2,400원(장애아 3,400원) 차등 지원 - 야간보육료 : 주간 단가와 동일(주간 미이용시 지원) - 24시간 보육료 : 연령별 월 보육료의 150% - 휴일 보육료 : 일보육료 (연령별 단가*휴일보육일수/26일) * 150% - 시간제보육료 : 법정저소득층 2,600원, 장애아 3,500원(시간당)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80% 영아반80%, 유아반30% 농어촌 및 평가인증통과 시설 100%	-
	장애아전담	80%(비장애유아30%) (치료사100%, 취사부100%)	80%(비장애유아30%) (치료사100%, 취사부100%)
	영아전담	80%(유아30%)	80%

구분/보육시설 유형		국공립/법인/법인외	민간개인/가정/협동/직장(일부)
		(취사부100%)	(취사부100%)
	장애통합지정교사	80%	100만원(또는 기본보조금
	시간연장지정교사	80%	340천원)
	방과후지정교사	50%(장애아100%)	100만원 지정없음
교재교구비		-	시설당 연 50~120만원
차량운영비		- 농어촌 시설(직장 제외) 및 장애전담시설 월 20만원	
시설 확충	국공립신축 (민간매입포함)	- 단가 : 1,201,300원/m ² - 지원한도액: 237,857천원 (국비)	-
	시설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지원한도액: 237,857천원 (국비)	-
	공동주택리모델링	- 단가 : 50,000천원	-
	기자재구입비	- 장애아전담 신축 80,000 천원 - 일반시설 신축 60,000천원 - 이전 또는 대체신축 30,000천원 - 민간시설 매입 20,000천원 - 공동주택 : 40,000천원	-
	장애아전담신축	- 개소당 396m ² 까지 (단가 : 1,201,300원/m ²)	-
시설 환경 개선	증개축비	- 132m ² 까지(단가 : 751,440원/ m ²) 법인외시설 제외	-
	시설 개보수비	- 시설규모, 개보수 필요에 따라 지원 (단가 : 30,000 천원/개소당)	-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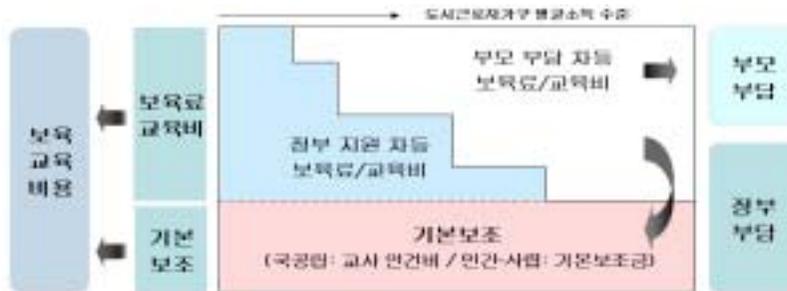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실시하던 영아반 지원¹⁵⁾을 2006년에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시에 부모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민간시설 기본보조금은 민간 보육시설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이용시설 유형에 따른 아동 및 부모에 대한 공적 재원 투입의 불공평성에서 비롯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동별로 액수를 결정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¹⁶⁾

<그림> 영아 보육비용 지원 개념



자료: 서문희 외(2006).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15)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¹⁾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16) 이에 대하여는 지원금이 시설보조금과 아동보조금의 장단점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제도라는 논의가 있다.

(2) 지방정부별 지원 정책

각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고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지방정부 별도의 예산으로 지자체별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수보육사업은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매우 다양하다.

보육료 지원이나 시설운영비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은 시·도에 상관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육료 지원 외에 저소득 계층의 자녀, 둘째 이상 자녀, 셋째 이상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 이외에도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 건강 검진,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교육비 지급은 대부분의 시·도가 지급하며, 이외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지원 등 인프라 관련 사업이 있다.

최근에는 출산이나 입양, 다자녀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7~2009

단위: 백만원, %

구 분	국고사업비 ¹⁷⁾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구 분	국고사업비 ¹⁷⁾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 직장보육시설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¹⁸⁾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25조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 운영비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행규칙 제8조는 수당 지급 시 정부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또한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관

17)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18) 의무사업장의 범위는 199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음.

런 하위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을 포함하여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등으로 설치비 용자 및 무상지원, 운영비 무상지원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지원종류	지원내용
설치비 용자 (고용보험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업주단체 1%, 대기업 2% • 최고 5억,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설치 무상지원 (고용보험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한도는 1억원, 단체의 경우 2억원. - 유구비품비는 교재교구, 장비구입 비용으로 설치시 최고 5천만원 • 5년 주기로 계속 지원 • 자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60%
운영비 무상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시설장은 아동 20명, 취사부는 아동 40명 기준 • 보육교사는 배치기준 초과 시에도 현원대로 지원 - 교재교구비, 영아, 장애아 기본보조금(이상 운영비 지원 시설 제외),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 신축, 구입시 취득 금액의 7% 공제, -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면제 -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 면제

자료: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8)

또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003년 이후에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원 기준도 1997년 월 40만원부터 시작한 이후 계속 증액되어 현재 월 80만원이며, 이러한 지원정책 추진 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 근로자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 기업이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직종의 기업, 그 외 100명 이하의 일반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그 이외 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¹⁹⁾

3.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사업 내용

(당시)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되어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가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2008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는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115호('08.12.15)호에 의한 농촌 및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농

19) 이는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두고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지소유 5ha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농가의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1250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원 금액은 시설 이용아동은 5세 미만아는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5세아는 50%)이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지원 예산

농어민 양육비 지원 예산은 2004년 292억원에서 2005년 4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예산은 총 315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57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4. 부모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차등 지원과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1) 차등보육료 지원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부모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2003년도까지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²⁰⁾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기준단가 100%를

20)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음.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3층은 지원단가의 80%, 4층 60%, 5층 30%를 지원하였다.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는 바,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

<표> 소득수준별 · 연도별 재정지원

단위: %

		2009년 6월 까지					2009년 7월부터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2009. 7.~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10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100(하위소득 50%)
	70%까지	-	-	-				60(하위소득 60%)
5층	100%까지	-	-	-	-	20	30	30(하위소득 70%)
6층	130%까지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보건복지가족부(2009.4) 보도자료

(2) 무상보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²¹⁾, 2009년 현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3) 다가구 지원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하여 2009년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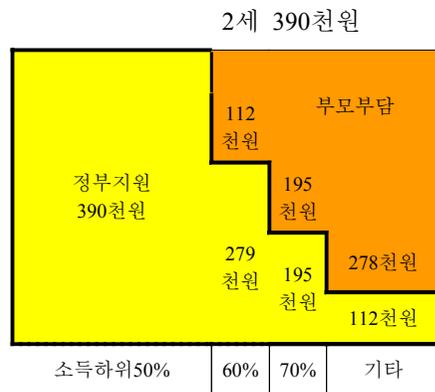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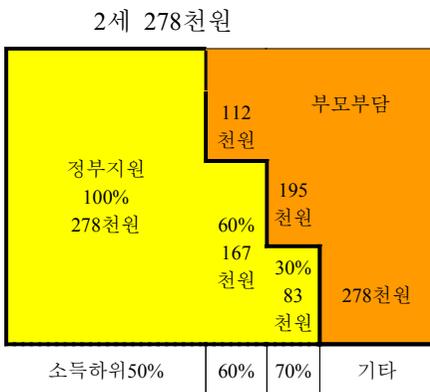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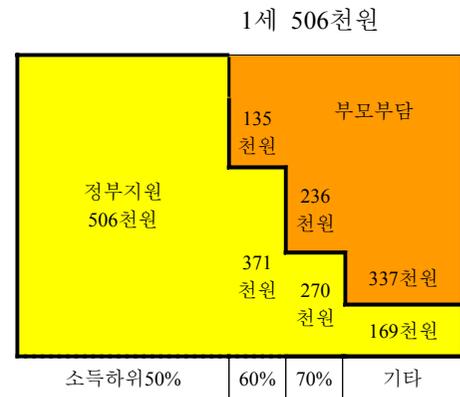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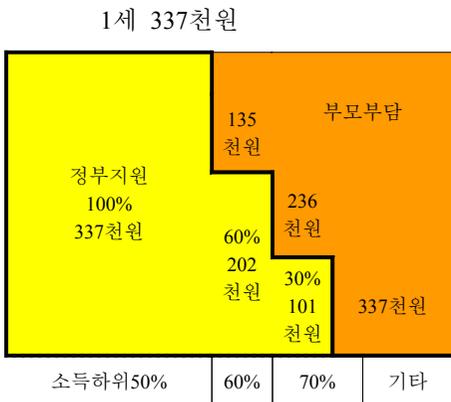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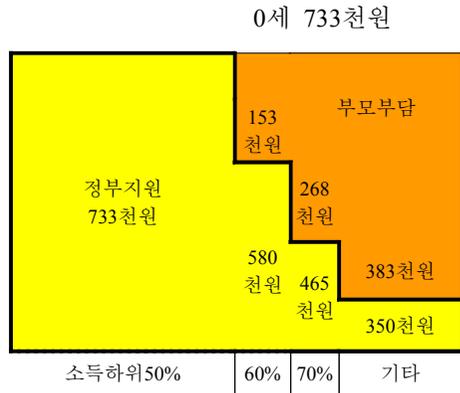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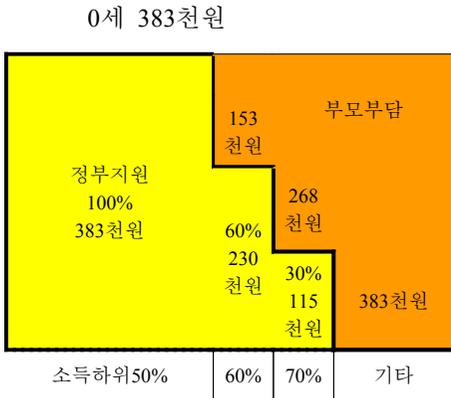
(4) 2009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원 기준

정부의 지원 기준은 각각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공립·법인시설, 장애아·영아·방과후 전담 시설),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이며, 정부미지원시설과 함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 가정시설 등)로 단가는 정부지원시설 단가 종전 기본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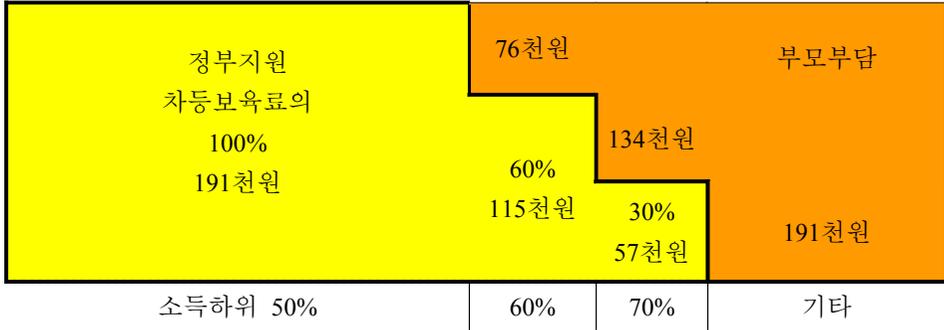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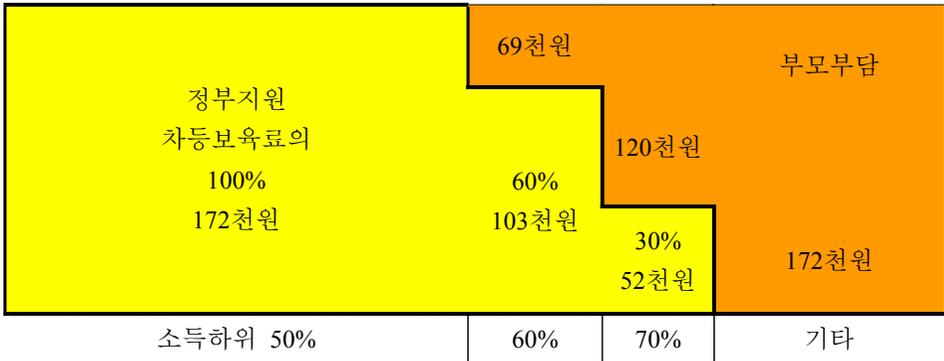


<정부지원 · 미지원시설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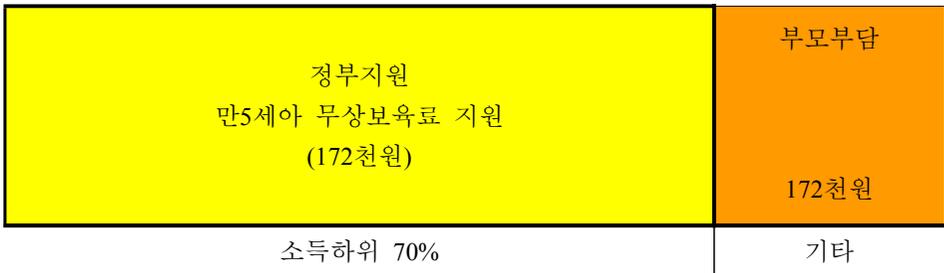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5세 172천원



5. 양육수당 지원

중앙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차상위계층 0,1세 아동에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역이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5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시도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셋째아 이상아를 5년간 지원. 둘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경북 두 지역이고, 전남, 전북, 경북의 7개 지역이 전체 아동을 지원하는데, 전남 강진군, 경북 안동시, 전북 무주군 3개 지역은 출생순위별 기간의 차이를 두지 않으나 전남 구례군, 전북 진안군 순창군, 경북 영양군 4개 지역은 출생순위별로 기간의 차이를 둬. 가장 장기간 지원하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만3세까지 지원하고 셋째아는 만5세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²²⁾

<표> 지방정부 양육비용 지원

구 분	대 상	내 역	실시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첫째아 이상	5만원~70만원	강원도 인제군, 전북 순창군, 전남 광양시 외 13개 시·군·구
	둘째아 이상	5만원~150만원	부산시, 강원도 인제군, 충북 보은군 외 18개 시·군·구
	셋째아 이상	5만원~400만원	서울시 성동구, 인천시 중구, 전남 장흥군 외 57개 시·군·구

22) 보건복지부, 2008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2008), 재정리.

6. 육아비용 세제지원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부모의 보육료·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을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제도를 채택하여²³⁾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며, 공제액 한도는 초기에는 연간 100만원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되었고, 또한 2004년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7. 총 예산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과 농업인 양육비를 모두 합하면 2008년도에 4조 500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다.

<표> 보육, 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8)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1,411,700	1,955,000	3,366,700	0.328
유아교육	226	1,58,982	1,059,207	0.103
농업인양육비	49,412	49,412	98,824	0.010
계	1,461,338	2,163,394	4,524,731	0.44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9).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농림부·농수산식품부(각년도). 농어업인 양육지원사업지침.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자체 특수시책.

23) 조세 납부액에서 보육료, 교육비를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에 비하여 소득역진적이고,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됨.

II. 2009년 보육료 지원단가 관련 현황

영유아보육료의 지원단가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사업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²⁴⁾ 2009년에는 2월과 8월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을 2008년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보육료지원 주요변경내용

내 용	2008년	2009년 2월	2009년 8월																		
보육료지원 총괄		산정방식 ○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산정방식 ○ 입소 또는 퇴소시 보육료지원: 입소시 입소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보육료 지원 단가	○ 정부 지원, 미지원 시설 동일 만0세 372,000원 만1세 327,000원 만2세 270천원 만3세 185,000원 만4세 167,000원 ※ 기본보조금 지원 (민간시설) 만0세 340,000원 만1세 164,000원 만2세 109,000원	○ 정부 미지원시설 영아(0~2세) 보육료에 기본보조금 합산 지원 <table border="1" data-bbox="628 1103 900 1412"> <thead> <tr> <th>연령</th> <th>정부지원시설</th> <th>미지원시설</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td> <td>383,000원</td> <td>733,000원</td> </tr> <tr> <td>만1세</td> <td>337,000원</td> <td>506,000원</td> </tr> <tr> <td>만2세</td> <td>278,000원</td> <td>390,000원</td> </tr> <tr> <td>만3세</td> <td>191,000원</td> <td>191,000원</td> </tr> <tr> <td>만4세</td> <td>172,000원</td> <td>172,000원</td> </tr> </tbody> </table> ※ 기본보조금 지원 종료 미지원시설 0~2세 보육료에 포함	연령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만0세	383,000원	733,000원	만1세	337,000원	506,000원	만2세	278,000원	390,000원	만3세	191,000원	191,000원	만4세	172,000원	172,000원	○ 지원단가는 같음 ○ 계층분류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 월평균소득’으로 변경
연령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만0세	383,000원	733,000원																			
만1세	337,000원	506,000원																			
만2세	278,000원	390,000원																			
만3세	191,000원	191,000원																			
만4세	172,000원	172,000원																			

24) 보육료지원단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나 내부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용	2008년	2009년 2월	2009년 8월
시간 연장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신설>	시간제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지원대상 이 있는 시·군·구는 필요한 금액만큼을 예 탁하지 않고 남겨두거 나 (재)사회서비스관리 센터로부터 이미 예탁 한 지원금에서 환수받 아 지원
장애아 보육료 대상	○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하여 무 상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진단서 제출 회수 2회로 제한	○ 진단서 제출횟수 제 한 없음. ○ 장애진단서 제출시 무상보육료 지원(소 견서 삭제)	○ 기본보육료를 장애 아무상보육료지원단 가에서 분리하고 정 부지원단가 일원화

Ⅲ.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소개²⁵⁾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급의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한 『2009 보육사업안내』와 2009년 하반기 새로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보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발간한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이다. 2009년 도 하반기 주요 보육정책의 변경사항으로는 보육료 등의 수납과 반환에 관한 사항, 보육료지원사업의 총괄, 차등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료,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동 정부 미지원아동 이용 아동보

25) 보육료 지급에 관련된 고시 또는 지침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하의 본문에서 논하여 지는 보육료 지급관련 주요내용은 『2009 보육사업안내』(2009.2)를 기초로 2009년 하반기에 변경된 내용은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2009.8)을 참고하여 서술한다.

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이 부분 변경되거나 새로이 신설되었다.

1. 보육료 등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납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1) 시·도지사의 권한

연도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단서). 다
만,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함)과 정부미지원시설의 만 0세~2세의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범위에서 결정한다.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 만 4세 이상 정
부지원 단가의 50%, 정부 미지원시설은 시도별 만 4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시간연장·야간·24
시간·휴일보육·시간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연장 보육은 시간당 2,400원²⁶⁾ 둘째, 야간 보육은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정부 미지원시
설은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로 하며 이 중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 단가 100%로 한다. 셋째, 24시간 보육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이며 정부 미지
원시설은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50%이다. 이 중 0~2세 아동은
정부지원시설 단가 기준으로 하지만 24시간 보육 지정 시설은 200%

26) 시간연장보육료는 석식 1회,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함.

로 한다. 넷째, 휴일보육은 일 보육료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X 150%이며(보육가능일수에는 공휴일을 제외함) 다섯째,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2,600원을 정액 지급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또한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3) 보육시설 운영자(시설장)의 의무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보육시설운영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 서면으로 안내하고 보육시설에 게시하여 입소를 원하는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②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③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등)
- ④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2. 보육료지원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두 자녀 양육 등 각 가정의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만 5세 영유아의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지원시설 및 대상

지원시설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해당하며(『영유아보육법』 제36조), 만 0~6세의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그 지원대상이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2)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 ① 차등보육료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한다(정률지원).
- ②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72천원씩 정액지급한다.
- ③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이원적으로 지급되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월 383천원을, 정부 미지원시설은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④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연령별·소득계층별로 최대 50%까지 정률지원된다.
- ⑤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아동의 경우를 제외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한다.
- ⑥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일반아동의 경우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400원을 기준보육료로 하며, 여기에 보육시간 및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야간 보육은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로 한다. 둘째, 24시간 보

육은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로 한다. 셋째, 휴일보육은 일 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로 하 되, 보육가능일수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다. 넷째, 시간제 보육은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일반의 경우 시간 당 2,600원, 장애아동은 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 보육료 산정방식

- ①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 ②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는데,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급하며,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급한다.
- ③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와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한 다음 실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출석일수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가의 25%, 출석일수가 6~10일인 경우에는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의 100%를 지급한다.²⁷⁾
- ④ 차등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당월 보육료는 변경 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²⁸⁾
- 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한다.

27)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28)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직권상정일 경우에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4) 지원시기

- ①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만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자의 동반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에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²⁹⁾
- ② 기타 차등보육료 대상(법정저소득층 제외) 아동 및 만 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아동,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³⁰⁾

(5) 보육료 지급의 조정과 제한

1) 조 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민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지원된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육료와 직장보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직장보육수당과 정부 보육료를 중복

29) 이 경우 보육료 미지원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을 입소일로 보며, 기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은 장애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를 입소일로 본다.

30) 보육료 지원(차등보육료, 만 5세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신청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본다.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두자녀 이상 보육료의 지원은 가능하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 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순회교육 대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에는 무상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하다.

2) 제 한

시·군·구는 유치원교육비와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매월 해당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대조한다. 이 경우 만일 농어민양육비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아 보육료가 중복 지급되는 경우, 직장보육수당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보육료 지원

- ①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보육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구(舊)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경우에는 퇴소일을 기준으로, 신(新)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 ③ 월(月)중 아동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 주소지 관할 관청에 보육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육료 지원신청에 따른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된다.³¹⁾

31) 지원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변경 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3. 보육료의 지급체계

(1) 기본보육료

1) 지원대상

기본보육료란 0~2세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육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된다.³²⁾ 또한 영유아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국민처우신고³³⁾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료 지원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도 지원 신청 및 지원 가능하다.

2) 지급금액

<1인당 지원기준 단가>

연 령	0세	1세	2세
금 액	350	169	112

지원되며(영유아 100%→영유아 60%, 영유아 30%→영유아 60% 등), 동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중지 월의 익월부터, 보육시설을 옮긴 경우에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된다.

32) 여기에는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포함되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반은 제외된다. 단, 인건비는 지원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된다.

33) 국민처우신고란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편성별 지원금액>

반구분	교세대 아동비율 (초과반영)	최대지급인원 (명)	지급우선순위	기본보육료(천원)
0세반	1:3 (특례지역은 4명)	3	0세아, 장애아	350
0, 1세반	1:3 (특례지역은 4명)	3	0세아, 장애아	350
			1세아	169
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69
1, 2세반	1:5 (초과보육시 1:7)	5	1세아, 장애아	169
			2세아	112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12
2, 3세반	1:7 (초과보육시 1:9)	7	2세아, 장애아	112
			3세	0
장애아반	1:3	3	장애아	350
장애아 방과후 반	1:3	3	장애아	300

※ 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반 제외

3)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요건

매월 5일 24시(6일 0시) 현재 어린이집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지급금액을 자동 산출하며, 시·군·구에서 3일간 검토 및 정정을 하고 검토 및 정정 후 3일 이내에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된다.³⁴⁾ 검토 및 정정기한 내에

34)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된다.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미지원하며, 기본보육료 지원금은 일할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범위 내에서 영아에 대한 초과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보육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보육료의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둘째,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셋째,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넷째,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4) 지원의 조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어민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직장보육수당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제도 중 택일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순회 교육 대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가 지원 가능합니다.

5) 지원의 제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준수하고,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보조금 전체를 환수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총정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등록 아동을 보육하는 등 총정원을 위반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된 전체반의 기본보육료가 환수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첫째, 교사 결원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하지 않아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계속되는 시설은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교사가 채용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지급된다.³⁵⁾ 둘째,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용한 경우 해당 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하여 지원 가능하다. 셋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5월 24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시설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었음을 소명할 경우 시·군·구가 확인하여 익월에 소급하여 지원 가능하다.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 반의 기본보육료가 환수된다.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지급된 전체 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2) 차등보육료

1) 지원대상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에는 우선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해당되는바,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지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가 포함된다. 하지만, 차등보육료

35) 교사 결원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었음을 소명할 경우 시·군·구가 확인하여 익월에 소급하여 지원 가능하다.

는 법정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보육료 책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 선정기준

기준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누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2009년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에 따라 선정된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천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10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6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3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30만원씩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이 증가한다.

3) 정부지원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영유아(100%)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영유아(6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영유아(3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기본보육료 (시설보조금)	소득하위 70%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3) 두 자녀 이상 보육료

1) 지원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만 4세 이하의 둘째 아 이상의 아동을

제 2 장 영유아보육료 관련 현황 및 법제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첫째 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³⁶⁾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 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첫째 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두 자녀가 동시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하위 50%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 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두자녀(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두자녀(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정부지원단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 일
두자녀(60%)	소득하위 60%이하	40% (추가지원)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36)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 일
두자녀(30%)	소득하위 70%이하	50% (추가지원)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3) 제한요건

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100%(차등보육료+두 자녀 이상 보육료)까지만 지원된다. 그리고 소득하위 50%의 경우에는 두 자녀이상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소득하위 60%층은 40%만, 소득하위 70% 층은 50%만 지원된다.³⁷⁾

(4) 장애아 무상보육료

1) 지원대상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을 불가능하며, 초등학교 과정의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만이 가능하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³⁸⁾

37)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추가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보육료만 지원된다.

38)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세~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중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아³⁹⁾
-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장애아가 아닌, 부득이하게 휴학한 만 12세까지의 장애아

2) 선정기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다른 보육료와는 달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한정되는 관계로 반드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⁴⁰⁾

3)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383,000원을 정액 지급한다. 그러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급한다.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39) 단,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2009년 중간에 장애진단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2009년 중간에 만 6세가 된 경우에도, 추가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10.2월 까지 계속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0년부터는 2004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한하여 신청일 전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일 전 1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0)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장애진단서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이,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총 15개의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종 일
장애아 무상	장애아동	100%	만12세이하	383,000

(5) 방과후 보육료

1) 지원대상

방과후 보육료는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준 소득액 이하의 가구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에게 지급된다.⁴¹⁾

2) 선정기준

방과후 보육료 지급대상의 선정역시 가구원수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I(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⁴²⁾

(단위: 천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19	137	154	168

41) 이때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42)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금액의 변경('08년 4인기준 151만원에서 '09년 137만원)으로 인하여 기존 지원대상자는 2010년 2월까지 자격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2010년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3) 지원단가

-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 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4시간 미만 이용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한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

(6) 기타 보육료

상술한 각종의 보육료 이외에도 시간연장, 시간제,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가 있으며, 이들 모두를 ‘시간연장형 보육료’라 한다.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급은 차등보육료 또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되,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⁴³⁾

43) 이 외에도 시설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시간연장 보육료

① 지급기준

일반적으로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⁴⁴⁾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간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초과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 및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②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소득하위 50%	2,400	144,000	기준액×100%
소득하위 60%	1,440	86,400	기준액×60%
소득하위 70%	720	43,200	기준액×30%

2) 야간보육료

① 지급기준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약간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야간 보육료의 지원을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44) 초과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한다.

② 지원단가

차등보육료 단가표에 따라 산정된다.

3) 24시간 보육료

① 지급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

차등보육료 단가표에 따라 산정된다.

4) 휴일보육료

휴일보육료의 지원기준에는 토요일이 제외되며, 그 기준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⁴⁵⁾의 150%를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유일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

5)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 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은 제외함)이 그 지원대상이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2,600원을, 장애아동에게는 3,500원을 정액 지급한다.

45)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은 제외된다).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제 1 절 규범론적 평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료지급체계와 관련하여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나 실제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든 부분을 법령에서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보육료지급체계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들의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 근거를 법령의 수준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체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I. 입법체계상의 문제

현행 법령은 영유아보육료의 일반적 사항과 세부적 사항의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시 또는 지침은 다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기술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입법의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규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규율사항이 입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수범자의 권리, 더 나아가서 수범자의 기본권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면,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이의 적용밀도의 문제만 남는다.

영유아보육법과 보육료의 지급관계는 전형적인 급부행정영역에 해당한다. 급부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행정영역에서보다 완화된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급부행정영역이 법률유보의 원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권, 과잉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강한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지침으로서 효력을 갖는 「보육사업안내」도 이러한 제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입법체계성의 일탈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상에서 볼 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II. 위임입법의 한계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내 용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 9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9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45조는 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둘째,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

올러 제2항에서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시설 폐쇄명령의 대상 시설이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처분과 정원감축 또는 아동모집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1년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3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4.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3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7.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8.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1개월 이내 운영 정지	6개월 이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시설 폐쇄	-	-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시설 폐쇄	-	-

(2) 문제점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율사항을 보면, 특히 개별기준의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 개별기준의 내용은 전적으로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반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세부적 제재처분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및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운영의 권익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법률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단순히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3항에서 개괄적으로 위임하고 수범자 권리의 제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2. 「2009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은 영유아보육료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침의 기능을 하는 「2009 보육사업안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이 안내서에서는 첫째, 보육시설 운영자(시설장)의 각종의 신고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운영자를 대표적인 이 법의 수범자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의 법적 의무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또는 지침사항으로 규율한 것은 명백한 입법오류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09 보육사업안내』에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료와 관련하여 총 11개의 보육료를 유형별로 규정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형별 지급대상과 급여의 산정기준, 그 제한 및 급여액 까지 현행 영유아보육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제 영역에서 금전급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급여의 종류, 내용, 수급자의 자격요건, 급여의 산정기초를 모두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2009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료 지급의 조정과 제한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보육료지급의 조정과 제한은 행정제재처분 이상으로 수범자의 금전급여의 내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민양육비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올바르게 등록되지 않아 보육료가 중복 지급되는 경우, 직장보육수당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처분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입법체계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령과 『2009 보육사업안내』는 위임입법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해당 영역이 다른 사회보장법제영역보다 지급성과 현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입법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행정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현대 입법론의 핵심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제의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비교법적 분석

보육료 지원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비교법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각국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 등에 따라 공동 육아형과 대리 육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를 것인가, 선별주의 원칙에 따를 것인가, 아동의 권리와 요구, 부모와 사회의 요구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보육대상을 확대할 것인가, 자녀 양육이 누구의 몫인가, 육아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보육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 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자원 공급 양 측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리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⁴⁶⁾ 아래에서는 공동 육아형 국가로 스웨덴과 프랑스를, 대리 육아형 국가로 미국과 영국의 보육정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는 각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의 비교를 위하여 보육정책 일반에 대한 비교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보육료 지원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소결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46) 양옥승 외9인 공저,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1998), 3-4면.

I. 스웨덴의 보육정책

스웨덴은 사회보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아동보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가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⁷⁾

스웨덴에서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아동의 성장을 통하여 자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식추구와 활용의지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순수한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바라보고 있다.⁴⁸⁾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어 있다. 또한 영아 보육시설의 확대보다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는 부모 휴직제도와 같은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발달시켰다. 또 다른 특징은 스웨덴의 아동보육정책은 가족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1. 발전과정⁴⁹⁾

발전기	내 용
제1기 (1945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복지정책의 태동기 - 빈민 고아 대상 아동 보육 제도기(1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빈민 고아를 위한 고아원 설립 · 일부 제한된 수의 빈민 아동들을 보호

47) 황휘선, 앞의 논문, 35면.

48) 이경순,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20면.

49) 이경순, 앞의 논문, 21-22면; 양옥승 외9인 공저, 앞의 책, 16-22면을 참조하여 정리 재구성함.

발전기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8년 미확인 모에 관한 법 - 18세기에는 15세 이하의 아동을 구빈 대상으로 규정하는 구빈법 제정 - 1926년 모성보호회의 - 1935년 제1회 인구회의 - 1937년 보육료 선지급 틀의 도급제도 마련 - 1941년 제2회 인구회의 - 1930년대 민간 보육시설인 주택조합회원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운동과 관련된 시설 설립
제2기 (1945-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의 과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대전의 발발로 여성노동의 필요성 증가 · 이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의 증설 - 전쟁 후 보육서비스가 전쟁 전 수준으로 축소 - 공립보육시설은 주로 빈곤계층의 영유아를 우선대상으로 함 - 취업모의 아동은 사적인 보육서비스를 통하여 양육됨
제3기 (1960-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육체계 확립기 - 현재의 보육체도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 - 취업모의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 증대 - 1968년 구성된 어린이 센터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공공보육의 욕구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기초하여 공공 보육체계를 새로이 구성하여 발간 - 1973년 취학전 교육법 제정
제4기 (197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육체계 확충기 - 스웨덴 국민의 여성취업권에 대한 진보적인 의식이 반영 - 1975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6세 어린이는 모두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 - 197801980년 사이에 어린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10만개 확충하는 프로그램 실시

2. 관계부처

스웨덴의 보육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 되어 있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시민 스스로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 따라서 개개의 가족이 지불하는 보육비용은 많지 않다.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수익자(부모)가 분담한다.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체로 0-3세는 전체 보육비용의 2~20%이고, 4~6세는 무상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차등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액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⁵⁰⁾

3. 보육유형 및 지원내용

스웨덴의 보육유형은 크게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립보육시설에는 기관 보육시설(daycare centers), 시간제 유아집단(part time groups), 개방유아학교(open preschools, mother's club), 공립가정보육시설(organized family daycare), 레저타임 센터와 레저클럽이 있다. 그 외의 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민간 보육 시설은 그것이 비영리 기관이나 부모 협동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제공되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어떤 단체도 기금 지원 없이 순전히 사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⁵¹⁾

4. 교원 양성정책

보육교사는 아동 양호교사, 유치원 교사, 레크레이션 지도 교사, 가장 탁아모로 분류된다. 아동 양호 교사는 아동 양호 교육이나 유치원 교사

50) 양옥승 외9인 공저, 앞의 책, 25면.

51) 이경순, 앞의 논문, 23-24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유치원 교사나 레크레이션 지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2년 6개월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 탁아모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약 90~10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아동 양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들의 연수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는 상당한 재정적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나, 보육 교사 지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고 남자 교사가 거의 없다.⁵²⁾

II. 프랑스의 보육정책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보호받는 나라, 부모가 낳고 사회가 키운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아이가 단 한명도 없다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보육은 기회균등에서 출발하였다.⁵³⁾

프랑스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공립시설이며, 가정보육이 제도화되어 있다.⁵⁴⁾

1. 발전과정⁵⁵⁾

발전기	내 용
제1기(2차대전 이전)	<교육과 보육의 분리기> - 1904 빈곤아동부조 - 1919 수유모 부조 - 1935 어린아동 보호선언
제2기(1945-1959)	<포괄적인 보육정책으로의 발전기> - 1935년의 아동보호령을 확대하여 모자보건법 제정 : 6세까지의 아동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규정

52) 이경순, 앞의 논문, 24면.

53) 황희선, 앞의 논문, 34면.

54) 2008년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자료.

55) 이경순, 앞의 논문, 28면 정리하여 도표화 함.

발전기	내 용
제3기(1960-1975)	<공공보육체계의 확립기> - 영유아의 초기 사회화에 대한 관심 대두 - 여성의 고용증대와 보육시설의 기능 강조
제4기(1975년 이후)	<출산장려주의의 보육행정 추진> -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시작 - 1977년 보육모 관련 법 제정

2. 관계부처

영유아 보육에 관계된 부분은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육정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예산의 11.5%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사회보건구역 관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사업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이나 재정의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감독에 관한 책임도 진다.⁵⁶⁾

3. 보육유형 및 지원내용

프랑스의 보육유형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집단 보육과 소규모 보육으로 나누어지며,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의 형태로 나뉜다.

기관보육의 경우에 0세에서 3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3세 이상은 유치원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 시설의 운영은 종일제(8시간)이다. 0-3세의 경우 부모가 25%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3-5세

56) 황휘선, 앞의 논문, 35면.

의 경우 무상보육을 실시한다.⁵⁷⁾ 또한 2008년 프랑스에서는 양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사업장내 사립 탁아소 창설 지원 및 baby-sitter 자격증 발급, 정규직 근로자 지위 부여, 관련 회사 창설 지원, 기업의 직원용 보육시설 투자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혜택부여, 유아환영정책⁵⁸⁾(PAJE) 쿠폰 발행으로 정부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⁵⁹⁾을 하고 있다.

4. 교원양성정책

보육시설의 원장은 의사이거나 국가학위를 소지한 육아 전문가로서 적어도 그 직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육아 전문가 양성기관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시험을 거쳐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양성 과정은 3년이다. 양성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고시를 통과함으로써 원장의 자격을 취득한다.⁶⁰⁾

가정보육모의 경우 보육자격의 인정은 인증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에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육모의 질을 관리하고 음성적인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⁶¹⁾

57) 김금숙,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14면.

58) 유아환영정책(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은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 지원금을 제공: 임신 지원금, 유아출산지원금 및 양육비지원, 직업 활동 보전지원, 산모 산후 휴가 후 보조금 지원과 같은 소득별·계층별·선택적 지원제도 및 양육시스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말한다.

59) 자세한 것은 여성부 홈페이지 세계여성정책 http://www.moge.go.kr/korea/view/policy/policy02_03.jsp (2009년 9월 20일 검색) 참조.

60) 이경순, 앞의 논문, 30면.

61) 장혜경,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64면.

Ⅲ. 미국의 보육정책

1. 발전과정

미국의 보육 이념과 제도 정착의 배경은 유럽의 전통과 영향에서 출발한다.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청교도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으로 하여금 유아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로부터 프뢰벨 사상과 유치원의 도입, 자선유치원의 설립 등으로 부모가 아동양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⁶²⁾

이후 듀이(Dewey)의 경험주의적 교육사상이 미국 교육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유치원의 확장과 영국으로부터 유아원의 도입이 이루어진다. 1912년 노동성 내에 아동국의 신설, 모자법 제정, 교육국 내에 유치원과 설치, 1924년 미시간 주에 최초의 공립 유아원이 설립되었다. 연방정부가 WPA(Works Projects Administration)를 통하여 공적 재정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 결과 당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1975년 이후에는 보울비(Bowlby)의 연구로 어린이는 가정에서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설립이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공공정책은 계속 확대되었다.⁶³⁾

2. 관계 부처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당국,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재원에 따라 다양한 행정체제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재원은 미국 보건성(DHH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 관리하고, 교육부(DOE: Department of Education)는

62) 이경순, 앞의 논문, 18면.

63) 이경순, 앞의 논문, 18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3-5세 유아들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의 재정을 담당한다.⁶⁴⁾

3. 보육유형 및 지원내용

미국의 보육 유형은 유치원, 유아학교, 보육기관 혹은 탁아기관, 가정 보육 혹은 가정탁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치원은 주 교육부의 책임 하에 공립과 사립 초등학교에 병설하여 의무교육 시작 전 연령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반 일제 혹은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학교는 주 교육부의 책임 하에 또는 연방 수준의 재원을 직접 보조받아 반일제 혹은 학교시간(9:00-15:00)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3-4세 유아 및 유치원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유치원과 기관이나 학교에 있는 6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교육 프로그램, 공립과 사립 반일제 기관에 있는 보통 2-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학교로 나눌 수 있다. 보육기관 혹은 탁아기관은 보건 혹은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사립으로 운영되고 주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로 연장제(7:00-18:00)를 기본으로 연중 운영된다. 1세 미만 및 1-2세 영아와 3-5세의 유아학교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곳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 보육 혹은 가정탁아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 아래 보육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친척이 돌봐주는 경우나, 유아의 집에서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경우(in-home care) 그리고 한명의 성인이 자신의 집에서 여러 명의 유아를 돌보는 경우(family day care)로 나눌 수 있다.⁶⁵⁾

64) 이경순, 앞의 논문, 19면.

65) 나정·장영숙,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의 동향(2002), 17면.

4. 교원양성정책

교직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헤드스타트는 성취기준에 상당히 의존해왔다. 1971년부터 자체 전문 프로파일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를 만들었다. CDA는 2년 반 동안의 전문학교 수준의 전문 수료증 혹은 준 학사학위와 동등하다. 헤드 스타트의 목표는 모든 교실마다 CDA를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채용된 교직원의 50%가 2003년까지 2년제나 4년제 후기 중등교육 즉 대학에 해당하는 학위를 가지도록 법률로 제정하였다. 모든 예비 유치원 학급의 교사들은 주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자격증은 4년제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연간 특정 시간의 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⁶⁶⁾

IV. 영국의 보육정책

1. 발전과정⁶⁷⁾

발전기	내 용
제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전통적 육아관이 수세기 동안 유지 - 양육은 각 가정의 책임이며, 영유아의 건강과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은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제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C말의 산업혁명과 20C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취업모가 증가 - 타인양육의 필요성 인식되었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 - 정부는 1945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에서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시킴 - 유아교육기관의 확장을 제한함

66) 이경순, 앞의 논문, 20면.

67) 이경순, 앞의 논문, 24-25면을 정리하여 재구성함.

발전기	내 용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경기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여성인력의 요구로 영유아 보육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됨 -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
제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국가유아보호전략이 공표됨 · 빈곤지역에 대한 특별 재원이 Sure Start를 통해 배당됨 - 2000년에는 조기 학습 목표달성을 돕기 위해 기초단계(3~5세)를 위한 교육과정지침이 출간됨 - 교육표준청(OFSTED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이 모든 유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국가기준을 마련함

2. 관계부처

영국의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의 책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해왔다. 본래 교육과 보호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책 방안은 이 두 체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정책은 주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가 3~5세를 담당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0~5세를 담당했다. 주요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아동부(Children's Unit)가 신설되었다. 관련법규로 1991년부터 발효된 아동법(Children's Act)은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 이 법 중 특히 유아를 위한 양육과 보육에 관한 조항은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에 관해 다루고 있다.⁶⁸⁾

68) 이경순, 앞의 논문, 25-26면.

3. 보육유형 및 지원내용⁶⁹⁾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립보육의 개념과 그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들은 개인적인 사회적 망과 사적 시장에 의존해왔다. 보육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유형 및 특징
0~3세 영아를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이 연령의 영아들은 특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재정의 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유아보호 조세감면제도의 도입과 함께 변하고 있다. - 사립보육원, 지역보육원, 보육사, 부모, 친척, 부모와 아기집단이 있다.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학교(Nursery School)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학기중에 보통 3~4세 유아를 위해 2~3시간 취학전 교육을 제공한다(1:10) - 보육학급(Nursery Class) :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초등학교와 유아학교의 한 부분 - 유아반(Early years Unit) :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 - 초등학교의 예비학급은 4~5세 유아 대상,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초등학교 또는 유아학교의 1학년이라 할 수 있다(1:15) -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외에 놀이집단, 사립 보육학교/사전준비학교, 사립학교, 사립보육원 등이 있다.
3~5세 유아 보호	<p>대부분의 보호 형태는 사립에서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보육원: 0~5세 유아를 대상, 시간제·종일제 운영 (0~2세는 1:3, 2~3세는 1:4, 3~5세는 1:8)

69) 나정·장영숙,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의 동향(2002), 17면; 양옥승 외9인 공저, 앞의 책, 179면 이하를 참조하여 정리함.

구 분	유형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에 처한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육원 (연령에 따라 1:1~1:6) - 보육사 : 종일제 또는 추가보호를 자신의 집에서 제공 (1:3) - 보모 :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유아의 집에서 유아를 돌봄 - 그 외에도 부모와 토들러 집단, 학교일과 전후클럽, 휴일클럽 등이 있다.
교육과 보호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유아원/가족센터 : 0~5세아 대상 - 토기 수월성 센터: 유아와 가족을 위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되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

4. 교원 양성 정책

유아교사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교사는 3년제 학위와 1년의 대학원 교육자격증, 혹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는 유아 관련 인력의 약 20%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은 영유아보육위원회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다. 어떤 지역청에서는 보육교사에게 5~15시간의 훈련을 요구하지 않아 대부분의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절반은 아무런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⁷⁰⁾

V. 소 결

주요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가족과 육아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각국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지

70) 이경순, 앞의 논문, 27면.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다. 이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반위에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키고, 아동 빈곤과 교육적 불이익의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이러한 각국의 정책기조의 변화 및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담당부서 및 보육비용의 부담주체, 그리고 보육료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언한다.

1. 보육정책 담당부처⁷²⁾

국 가	담당부처		연 령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교육부		0~6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보건복지부	0~6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2, 3~5, 6
미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5
	교육부		0~4
일본, 한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3~5
			0~5

2. 비용부담주체⁷³⁾

국 가	연 령	비용부담주체
프랑스 이태리	2/3~6	정부/지방정부-무상
영국	3~5	정부-무상

71) 교육과학기술부, OECD영유아 교육·보육정책 II(2008), 2면 이하.

72) 나정·장영숙, 앞의 책, 17면.

73) 나정·장영숙, 앞의 책, 22-23면.

국 가	연 령	비용부담주체
스웨덴	4~6	정부-무상
미국	5 0~4	정부-무상 연방/주정부, 지방정부, 부모(최대 76%)
독일	3~6	주정부, 지방정부, 부모(소득에 따라 다르나 최대 20%)
한국	3~5 0~5	부모(최대 100%), 국가 부모(최대 100%), 지방정부, 국가

3. 보육료 지원 관련 사항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한다.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고(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가족수당(오스트리아, 미국), 세금감면(벨기에, 영국), 고용주 기여(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비용의 25-30%를 부담한다.⁷⁴⁾

유럽의 경우에는 3-6세의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의 보편주의적 접근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시작 전 최소 2년간 공공 재정지원을 받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3세부터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며, 소수의 국가에서는 더 낮은 연령에서 시작된다. 유럽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학교 부설인 형태가 많다. 유럽 외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5세가 되어야 비로소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 접근을 제공한다. 호주, 한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많은 아동이 4세에 무상 정

74)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2008), 70면.

부 프로그램에 등록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취약하다.⁷⁵⁾

4. 보육서비스

OECD 회원국에서 공적 보조금을 받는 영아 대상 서비스 중에서 핵심적인 서비스에는 가정보육, 기관중심의 영아보육서비스, 통합기관(1-6세)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며, 많은 국가에서 그 비용을 상당부분 보조해 준다. 전문적인 핵심 서비스는 종종 영아와 어린 아동이 함께 놀면서 보육모가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머니를 위한 임시이용기관, 정보센터, 모자 클리닉, 가족센터, 부모 주도의 놀이집단에까지 이르며, 그 목적은 다양한 가족들의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적인 기관중심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그러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⁷⁶⁾

5. 시사점

(1) 영유아보육의 공공재성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서비스의 구매는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반복할 수 없는 과정으로 진행되므로 열악한 영유아시설에서 아동을 옮긴다고 하여도 지나간 기회의 상실을 보상할 수는 없고, 열악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아동발달에 해를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75)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2008), 60면.

76)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2008), 69-70면.

상황에서 영유아서비스는 심각한 공급부족에 시달리기 쉬우며,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들은 영유아보육 내지 교육에 정부의 개입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개입은 또한 질 높은 영유아 서비스로 인하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로 인하여 정당화된다. 이는 OECD 국가의 현재 상황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유아 서비스 재원의 상당부분은 공공재원이며,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사회 및 학습에 대한 긍정적(혹은 부정적) 생각을 흡수하며, 또래 및 어른들과의 협동, 자율성, 의미 만들기, 창의성, 문제해결, 끈기와 같은 삶의 기본 기술을 습득한다. 따라서 영유아기는 필연적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는 아동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투자이다.⁷⁷⁾

따라서 영유아 보육이 가지는 공공재로의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보육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육료의 부담 및 보육서비스의 유형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가에 있어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 비율은 3세를 기준으로 3세미만의 경우에는 30%정도를 부담하고, 3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상보육의 대상이 된다. 비용부담은 또한 가족의 수입과 연동하여 감소하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완전히 면제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나 다만 (국가인증)가정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의 부분에서 특히 시사점을 가지며, 우리의 경우보육료의 지원이 소득을 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국과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품질보장 및 운영시간의 충족, 접근성의 확보 등에 시사점이 있

7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2008), 17-22면의 내용을 정리함.

으며 부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도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이 된다. 비교법적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으로 연결되어 평가된다. 관련 사항은 제4장의 대안 및 권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 3 절 전문가회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하여 2009년 6월 4일 영유아보육관련 전문가와 법제 전문가, 행정학 교수, 입법평가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진행은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가 보육료 지급 체계 전반 및 문제점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후 예정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응답대상자를 선정하며, 질문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행	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상 비용 관련 조항 - 보육료 기준 - 보육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지자체의 보육비용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양육수당지원 · 육아비용 세제지원 - 향후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비용 및 지원 단가 관련 · 지원단가 적용시간의 단일화(보육과 유아교육간의 차이 개선) ·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 보육시설 설치주체별 적용기준 차이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비용과의 괴리 ·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 기본 보조금의 성격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 지급체계와 관련된 기술적 수단에 대한 평가 필요성 - 보육료 기준 단가의 설정방법, 절차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 보육료 단가 조정의 방식은? - 보육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의 장단점 평가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 보육기관의 보육 질 확보를 위한 방안
실태조사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달성도 확인 - 시설장 및 학부모의 의견 청취 필요성 - 보육료 지원, 대상, 차등지급의 형평성 관련 의견 청취 필요성 - 보육료 지급방식 및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성 - 관련 법체계의 충돌 여부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확인

위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여 수정된 설문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제 4 절 실태조사 분석

제4절에서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조사 개요에서는 본 조사의 목적 및 의의와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설문 항목의 구성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둘째, 시설장 조사 결과에서는 8개의 주제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학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7개의 주제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한다.

넷째, 시설장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공통 설문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다섯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안검토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I. 조사 개요

조사 개요에서는 본 조사의 목적 및 의의,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설문 항목의 구성 표본 추출 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조사의 의의 및 목적

본 조사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종사자(시설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료 및 보육지원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1) 설문의 구성과 형식

설문지를 이용한 본 조사의 설문 구성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자료>에 실려 있다.

1)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시설장에 대한 설문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개 주제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4개의 항목을 제외하면 설문의 수는 56개이다.

<표> 조사의 구성 항목(시설장 용)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선문	보육 시설 위치	SQ1		폐쇄형	
	보육시설 위치 지역 규모	SQ2		폐쇄형	
	보육시설 운영 주체	SQ3		폐쇄형	
	보육 아동 정원(영아반, 유아반, 총 정원)	SQ4 1), 2), 3)		개방형	
	교사 수(영아반, 유아반, 총 정원)	SQ5 1), 2), 3)		개방형	
	운영 시간(시작과 종료, 총 머무는 시간)	SQ6 1), 2), 3)		개방형	
	보육 시간	SQ7		폐쇄형	다중응답
Part 1 보육료 관련 인지	보육료 관련 인지 정도	문1	문6	폐쇄형	
	정부의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문2	문5, 문6	폐쇄형	
	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지식 정도	문3	문8	폐쇄형	
	보육료의 시설별 차등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문4		폐쇄형	
	정부 보육료 지급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5	문2	폐쇄형	<학 4>
Part 2 차등 보육료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문6	문1, 2, 문17	폐쇄형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관련 만족도 및 적정성 평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이유	문6-1		폐+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적정성	문7		폐쇄형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부적정시 조절 방안	문7-1		폐+개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	문8	문3, 문9	폐쇄형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이유	문8-1		개방형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족 이유	문8-2		개방형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적정 정도	문9	문8	폐쇄형	<학 9>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정하지 않는 이유	문9-1		개방형	
	올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문10		폐쇄형	<학 10>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11	문12	폐쇄형	
	보육료의 차등 지원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 효과	문12	문11	폐쇄형	<학 11>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Part 3 보육료 관련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 인지 여부	문13 1), 2), 3)		폐쇄형	<학 18>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 적정성	문14 1), 2), 3)		폐쇄형	<학 19>
	추가 경비중 한도액 증가 필요 항목	문15		폐쇄형	다중응답
	보육료 한도의 적정성	문16		폐쇄형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 정도	문17	문6	폐쇄형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 이유	문17-1		개방형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불만 족 이유	문17-2		개방형	
Part 4 시설별 지원 만족도 평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 족 정도	문18	문19	폐쇄형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 족 이유	문18-1		개방형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불 만족 이유	문18-2		개방형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만족 정도	문19	문18	폐쇄형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만족 이유	문19-1		개방형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불만족 이유	문19-2		개방형	
	영아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 본 보조금 수준 만족 정도	문20		폐쇄형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영아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보조금 수준 만족 이유	문20-1		개방형	
	영아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보조금 수준 불만족 이유	문20-2		개방형	
Part 5 아이사랑 카드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문21		폐쇄형	<학 20>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22		폐쇄형	<학 21>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	문22-1		개방형	<학 21-1>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문22-2		개방형	<학 21-2>
Part 6 개선책 모색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문23		폐+개	<학 22>
	보육료 지원과 관련 바라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	문24		개방형	<학 23>
인구 통계학적 사항	시설장 성별	DQ1		폐쇄형	
	나이(만)	DQ2		폐쇄형	
	현장 교육경력	DQ3		폐쇄형	
	보육 시설 운영 경력	DQ4		폐쇄형	

* 조사의 구성 항목(시설장 용)의 <질문형태>의 ‘폐+개’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혼합형태를 말하며, <비고>의 ‘학’은 시설장용 설문지와 학부용 설문지같은 질문을 말한다.

2)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시설장에 대한 설문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개 주제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4개의 항목을 제외하면 설문의 수는 56개이다.

<표> 조사의 구성 항목(학부모 용)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선문	현 거주지	SQ1		폐쇄형	
	거주 지역 규모	SQ2		폐쇄형	
	자녀 수	SQ3		개방형	
	만 5세 미만 자녀수	SQ3-1		폐쇄형	
	만 5세 미만 자녀 나이(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SQ4 1), 2), 3)		개방형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	SQ5 1), 2), 3)		폐쇄형	
	취학 중인 어린이집 종류	SQ6		폐쇄형	
	취학 중인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등원 시간, 하원 시간, 총 머무는 시간)	SQ7 1), 2), 3)		개방형	
	자녀의 국가 지원대상 여부	SQ8		폐쇄형	다중응답
	Part 1 보육시설 이용현황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문1		폐+개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문2	문14	폐+개	
선호하는 이유		문2-1		폐+개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문2-2		폐+개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Part 2 영유아 보육법 관련	국가의 보육료 지원 인지 여부	문3		폐쇄형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	문4		폐쇄형	<시 5>
	보육료 지원의 근거가 보육법임을 아는지 여부	문5		폐쇄형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 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인지 여부	문6 1), 2), 3)		폐쇄형	
	보육료를 지급 받기 위해 관공서에 서류 제출 필요 인지 여부	문7		폐쇄형	
	보육료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문8		폐+개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 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문9		폐쇄형	<시 9>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문9-1		폐쇄형	
	현재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 만족 정도	문9-2	문12	폐쇄형	
	올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문10	문11	폐쇄형	<시 10>
	올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만족 정도	문11	문10	폐쇄형	<시 12>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12	문9-2	폐쇄형	
Part 3 보육료 관련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 평균 보육료	문13		개방형	
	보육료의 가계 부담 정도	문14	문2	폐쇄형	
	월평균 사교육비(보육료 제외)	문15		개방형	
	보육료의 추가 경비의 상한액 설정 에 관한 의견	문16		폐쇄형	
	보육료의 추가 경비의 상한액 설정 반대 이유	문16-1		개방형	

대 항목	세부 항목	항목 번호	cross -tab	질문 형태	비 고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지 불 금액	문17 1), 2), 3)		개방형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 한액 인지 여부	문18 1), 2), 3)	문19	폐쇄형	<시 13>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 납한도액 적정성	문19 1), 2), 3)	문18	폐쇄형	<시 14>
Part 4 아이사랑 카드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문20		폐쇄형	<시 21>
	아이 사랑카드 도입되는 것이 보육 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21		폐쇄형	<시 22>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된다면 보육 에 도움이 되는 이유	문21-1		개방형	<시 22-1>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된다면 보육 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문21-2		개방형	<시 22-2>
Part 5 개선책 모색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 스러운 점	문22		폐+개	<시 23>
	보육료 지원과 관련 바라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	문23		개방형	<시 24>
인구 통계학적 사항	학부모 성별	DQ1		폐쇄형	
	나이(만)	DQ2		폐쇄형	
	가족 수	DQ3		개방형	
	아이의 주 보육 담당자	DQ4		폐+개	
	부모 중 직업을 가진 사람	DQ5		폐쇄형	
	월 평균 소득	DQ6		폐쇄형	

* 조사의 구성 항목(학부모 용)의 <질문형태>의 ‘폐+개’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혼합형태를 말하며, <비고>의 ‘시’은 학부모용 설문지와 시설장용 설문지 같은 질문을 말한다.

(2) 표본의 추출과 조사 방법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설문에 대한 조사는 이를 의뢰 받은 한국 리서치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표본의 추출은 방법은 할당 추출(Quota Sampling)이 이용되었다.

1) 시설장

시설장들에 대한 인적 사항 조사는 성별, 나이, 현장 교육경력, 보육 시설 운영경력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시설장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인구통계학적 사항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9	6.0
	여자	141	94.0
나이(만)	20-29세	1	0.7
	30-39세	45	30.0
	40-49세	76	50.7
	50-59세	24	16.0
	60-69세	3	2.0
	70세 이상	1	0.7
현장 교육경력	5년 미만	14	9.3
	5-10년 미만	46	30.7
	10-20년 미만	75	50.0
	20-30년 미만	15	10.0

항 목		빈도(명)	퍼센트(%)
보육 시설 운영 경력	5년 미만	60	40.0
	5-10년 미만	55	36.7
	10-20년 미만	31	20.7
	20-30년 미만	4	2.7
합 계		150	100.0

2) 학부모

학부모들에 대한 인적 사항 조사는 나이, 가족 수, 아이의 주 보육 담당자, 부모 중 취업자, 월 평균 소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인구통계학적 사항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137	27.4
	여자	363	72.6
나이(만)	20-29세	25	5.0
	30-39세	434	86.8
	40-49세	37	7.4
	50-59세	4	0.8
가족 수	2명	2	0.4
	3명	90	18.0
	4명	303	60.6
	5명	85	17.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6명	15	3.0
	7명	4	0.8
	8명	1	0.2
아이의 주 보육 담당자	아이의 어머니	412	82.4
	아이의 아버지	4	0.8
	어머니,아버지가 함께	65	13.0
	아이의 조부모	17	3.4
	가족 모두	1	0.2
	어린이집	1	0.2
부모 중 직업을 가진 사람	아버지만	310	62.0
	어머니만	8	1.6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35.8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0.6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	1.8
	100-200만원 미만	65	13.0
	200-300만원 미만	155	31.0
	300-400만원 미만	130	26.0
	400-500만원 미만	74	14.8
	500-600만원 미만	37	7.4
	600-700만원 미만	10	2.0
	700만원 이상	17	3.4
	모름/무응답	3	0.6
합 계		500	100.0

(3) 설문 조사 기간

CATI(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법에 의한 설문 조사는 2009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4) 표집 오차(sampling error)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부, 영유아보육기관 시설장을 대상으로 150부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pm 4.38\%$, 시설장 대상 설문 조사는 $\pm 8.00\%$ 이다.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한 coding을 거쳐 computer에 입력한 후 SPS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시설장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를 위한 기초질문

시설장의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 사항은 보육 시설 위치, 보육시설 위치 지역 규모, 보육시설 운영 주체, 보육 아동 정원(영아반, 유아반)(개방형), 교사 수(영아반, 유아반)(개방형), 운영 시간(시작과 종료)(개방형), 보육 시간이다.

(1) 보육 시설 위치 및 규모

보육시설이 위치한 곳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36.7%(55곳)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6%(24곳)를 차지한 충청과 경상, 서울(13.3%, 20곳), 전라(10.7%, 16곳)의 순이며, 7.3%(11곳)인 강원이 가장 적다.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50%(75곳)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응한 시설장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위치하는 곳을 지역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소도시가 50.7%(76곳)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9.3%(59곳)를 차지한 대도시이며, 농어촌(10.0%, 15곳)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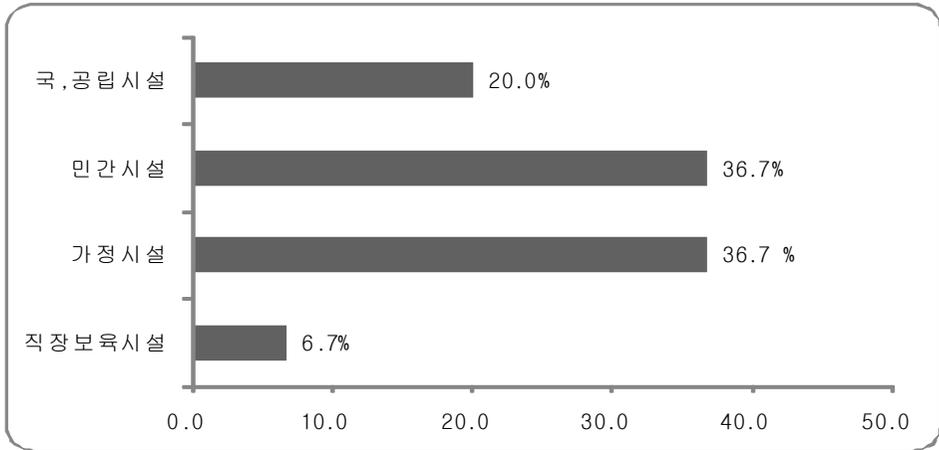
<표> 보육 시설 위치 및 지역규모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위 치	서울	20	13.3
	경기(인천포함)	55	36.7
	강원	11	7.3
	충청	24	16.0
	경상	24	16.0
	전라	16	10.7
지역규모	대도시(특별시/광역시)	59	39.3
	중소도시	76	50.7
	읍/면(농어촌)	15	10.0
합 계		150	100.0

(2) 보육시설 운영 주체

보육시설의 주체는 각각 36.7%(55명)를 차지한 민간과 가정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20.0%(30명)의 국·공립, 직장보육시설(6.7%, 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육시설 운영 주체



(3) 보육 아동 정원(영아반, 유아반)(개방형)

1) 영아반

영아반의 정원은 46.0%(69명)를 차지한 11명~20명이 가장 많았으며, 26.0%(39명)인 1명~10명, 17.3%(26명)인 21명~30명, 6.0%(9명)의 31명~40명, 4.7%(7명)의 41명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반의 평균은 18.26명이다.

<표> 보육 아동 정원(영아반)

항 목	빈도(명)	퍼센트(%)
1명-10명	39	26.0
11명-20명	69	46.0
21명-30명	26	17.3
31명-40명	9	6.0
41명 이상	7	4.7
합계	150	100.0

2) 유아반

유아반의 정원은 18.7%(28명)를 차지한 11명~20명이 가장 많았으며, 14.0%(21명)인 1명~10명, 12.7%(19명)인 21명~30명, 9.3%(14명)의 51명~60명, 5.3%(8명)의 각각 81명 이상과 31명~40명, 4.7%(7명)인 61명~70명, 3.3%(5명)인 71명~80명, 2.0%(3명)인 41명~5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반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 24.7%인 37명이다. 유아반의 평균은 37.30명이다.

<표> 보육 아동 정원(유아반)

항 목	빈도(명)	퍼센트(%)
1명-10명	21	14.0
11명-20명	28	18.7
21명-30명	19	12.7
31명-40명	8	5.3
41명-50명	3	2.0
51명-60명	14	9.3
61명-70명	7	4.7
71명-80명	5	3.3
81명이상	8	5.3
유아반 없음	37	24.7
합계	150	100.0

3) 총 정원

총 정원은 11명~20명이 32.0%인 4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1명~30명(11.3%, 17곳), 31명~40명(10.7%, 16곳), 41명~50명(9.3%, 14곳), 101명 이상이(8.7%, 1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은 46.36명이다.

<표> 보육 아동 정원(총 정원)

항 목	빈도(명)	퍼센트(%)
1명-10명	9	6.0
11명-20명	48	32.0
21명-30명	17	11.3
31명-40명	16	10.7
41명-50명	14	9.3
51명-60명	5	3.3
61명-70명	9	6.0
71명-80명	10	6.7
81명-90명	4	2.7
91명-100명	5	3.3
101명이상	13	8.7
합 계	150	100.0

(4) 교사 수(개방형)

총 교사수는 1명~5명인 경우가 64.0%(96곳)로 가장 많으며, 6명~10명이 28.0%인 42곳, 11명~15명이 6.7%인 10곳, 그리고 16명 이상이 1.3%인 2곳으로 평균 5.49명이다.

<표> 총 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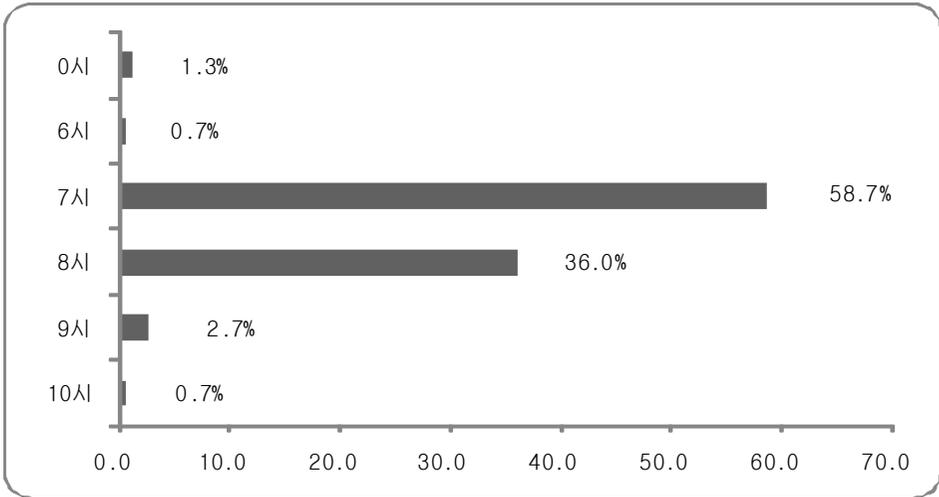
항 목	빈도(명)	퍼센트(%)
1명-5명	96	64.0
6명-10명	42	28.0
11명-15명	10	6.7
16명이상	2	1.3
합 계	150	100.0

(5) 운영 시간(시작과 종료)(개방형)

1) 시작시간

보육시설의 시작 시간은 58.7%(88명)의 7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6.0%(54명)의 8시, 2.7%(4명)의 9시, 1.3%(2명)의 0시, 그리고, 7시와 10시의 각각 0.7%(1명)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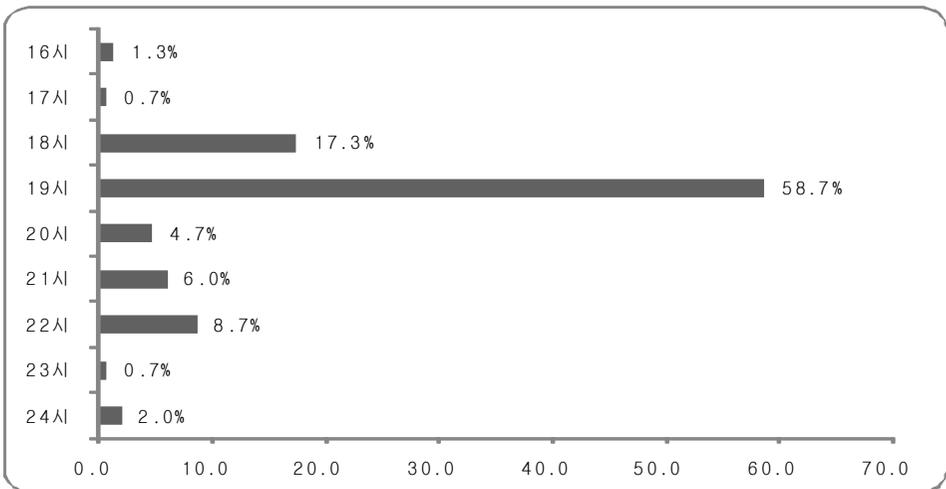
<그림> 시작 시간



2) 종료 시간

종료 시간은 58.7%(88명)의 19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7.3% (26명)의 18시, 8.7%(13명)의 22시, 6.0%(9명)인 21시, 4.7%(7명)의 20 시, 2.0%(3명)의 24시, 1.3%(2명)의 16시 순으로 응답하였고, 그리고 0.7%(1명)인 17시와 23시로 각각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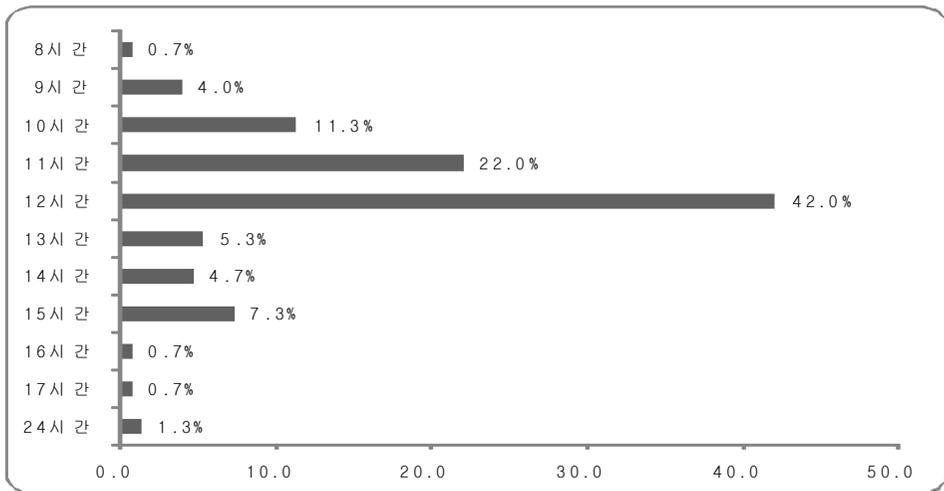
<그림> 종료 시간



3) 총 등원시간

보육시설의 총 등원시간은 42.0%(63명)의 12시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2.0%(33명)의 11시간, 11.3%(17명)의 10시간, 7.3%(11명)의 15시간, 5.3%(8명)의 13시간, 4.7%(7명)의 14시간, 4.0%(6명)의 9시간, 1.3%(2명)의 24시간이라고 순으로 응답하였고, 8시간과 16시간 그리고 17시간은 각각 0.7%(1명)으로 응답하였다. 총 등원시간 평균은 11.99시간이다.

<그림> 총 등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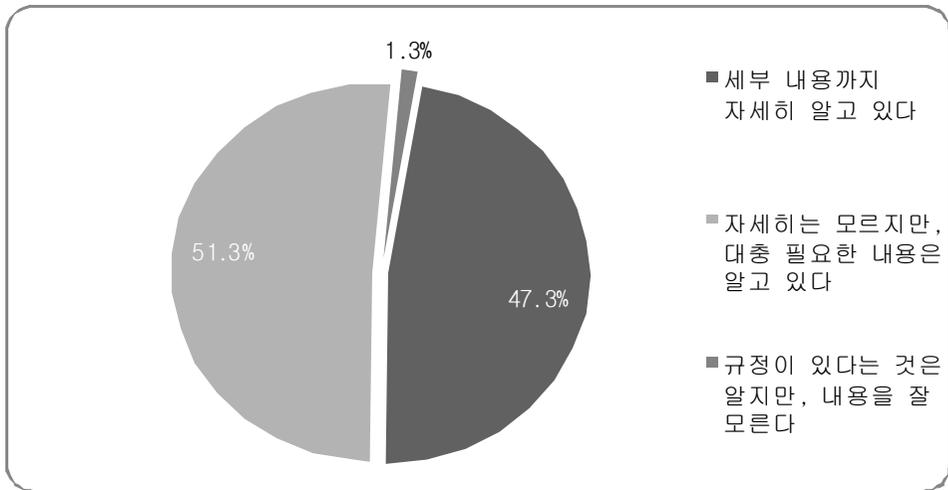


2. 보육료 관련 인지

(1) 보육료 관련 규정 인지 정도

보육료 관련 규정의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필요한 내용은 알고 있다□□가 51.3%(7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7.3%(71명)가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1.3%(2명)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시설장들은 대체로 보육료 관련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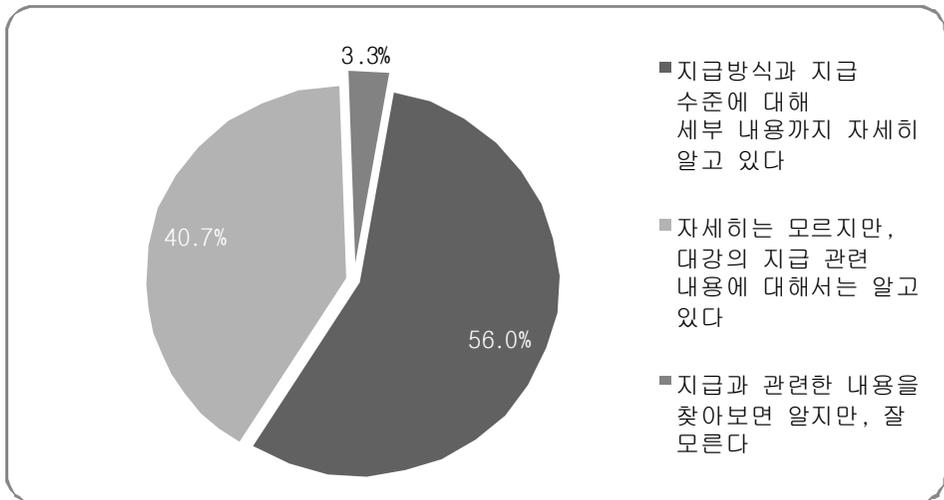
<그림> 보육료 관련 규정 인지 정도



(2) 정부의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시설장들의 정부의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는 □□지급방식과 지급 수준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의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6.0%(84명)와 40.7%(61명)를 차지하며,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 알지만, 잘 모른다□□는 3.3%(5명)에 불과한 응답을 고려하면 지식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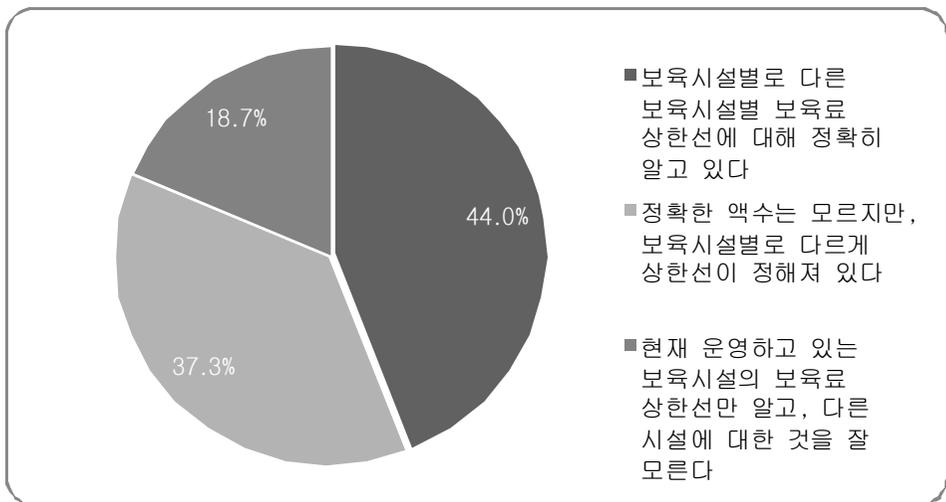
<그림> 정부의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3) 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지식 정도

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하여 44.0%(66명)가 □□보육시설별로 다른 보육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7.3%(56명)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보육시설별로 다르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만 알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는 응답은 18.7%(2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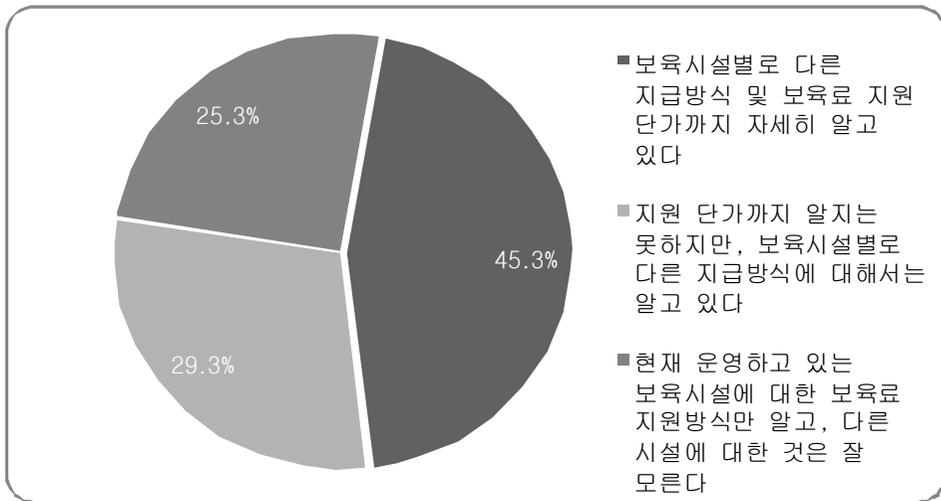
<그림> 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지식 정도



(4) 보육료의 시설별 차등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보육료의 시설별 차등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물어본 질문에 45.3% (68명)가 □□보육시설별로 다른 지급방식 및 보육료 지원 단가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3%(44명)가 □□지원 단가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보육시설별로 다른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5.3%(38명)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식만 알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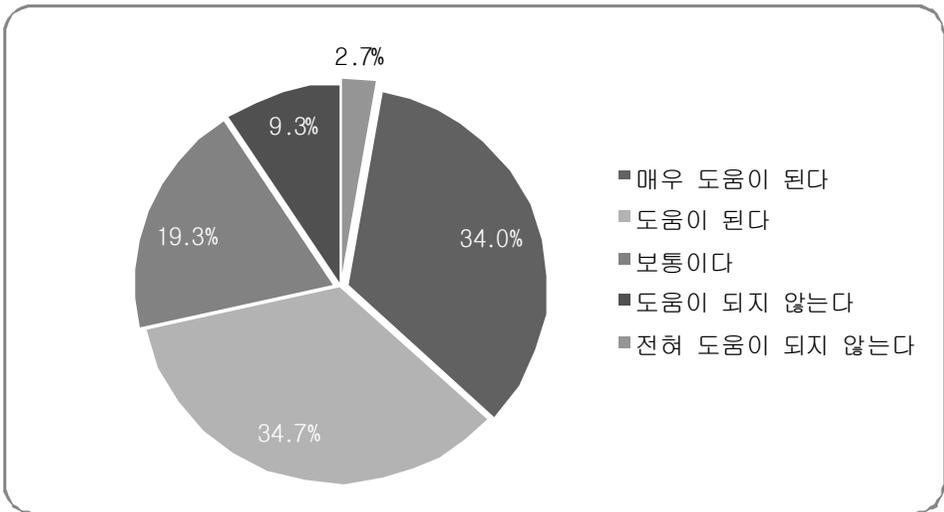
<그림> 보육료의 시설별 차등 지급에 대한 지식 정도



(5) 정부 보육료 지급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68.7%(103명)가 정부 보육료 지급이 보육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34%, 도움 34.7%)고 응답하였으며, 13%(18명)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안됨 2.7%, 안됨 9.3%)고 응답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급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19.3%(29명)이었다.

<그림> 정부 보육료 지급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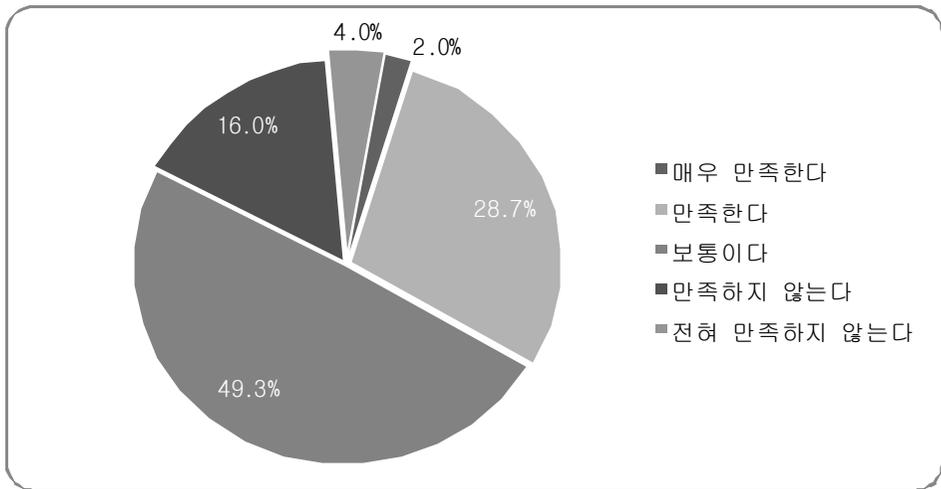


3. 차등 보육료 관련 만족도 및 적정성 평가

(1)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30.7%(46명, 매우 만족 2.0%, 만족 28.7%)로 □□불만□□의 정도 20%(30명, 전혀 만족하지 않음 4.0%, 만족하지 않음 16.0%)보다 많지만 □□보통□□이라는 응답도 49.3%(74명)나 되어 만족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만족도는 국공립 보육시설→가정 보육시설→민간 보육시설→직장 보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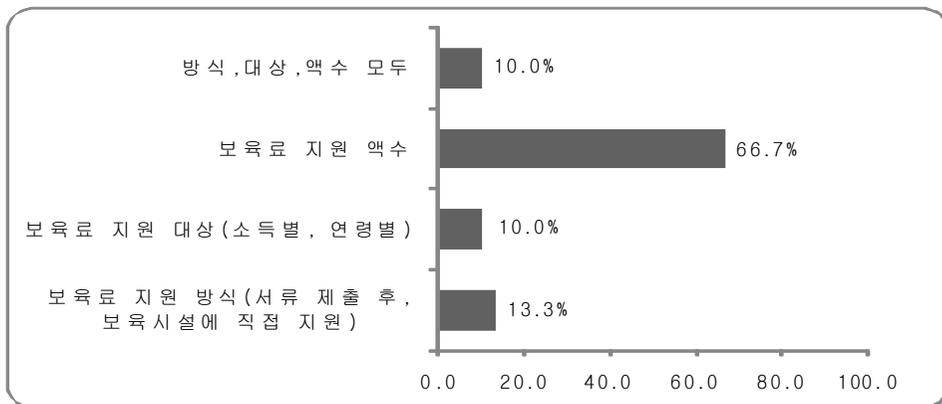
<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Total (%)
전 체	(150)	2.0	28.7	49.3	16.0	4.0	100.0
시설의 운영주체							
국공립 보육시설	(30)	6.7	50.0	33.3	6.7	3.3	100.0
민간 보육시설	(55)	1.8	12.7	60.0	20.0	5.5	100.0
가정 보육시설	(55)	0.0	36.4	43.6	16.4	3.6	100.0
직장 보육시설	(10)	0.0	10.0	70.0	20.0	0.0	100.0

(2)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이유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시설장 30명은 그 이유로 □□지원 액수□□(66.7%, 20명), □□지원 방식□□(13.3%, 4명),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대상, 액수 모두□□(각각 10.0%, 3명)의 순으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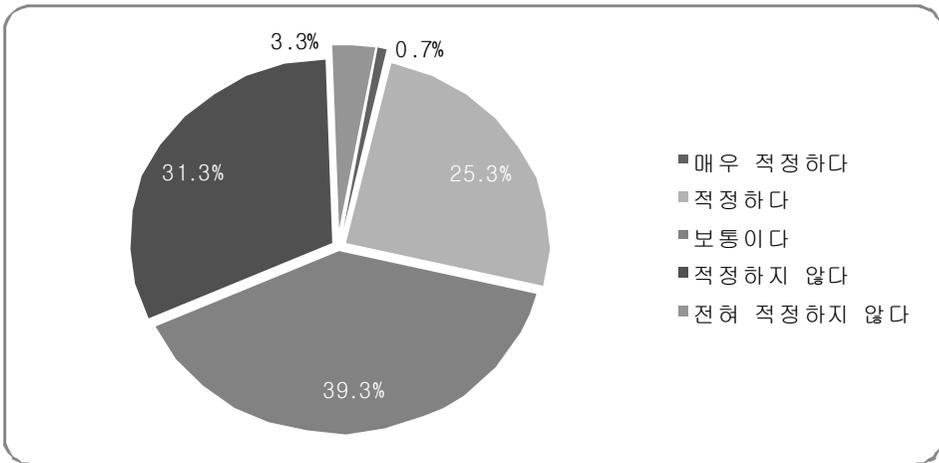
<그림> 정부의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족 이유



(3)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적정성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34.6%(52명)가 □□적정하지 않다□□(전혀 적정하지 않다 3.3% 5명, 적정하지 않다 31.3% 47명)고 응답하여 □□적정하다□□는 응답 (매우 적정하다 0.7% 1명, 적정하다 25.3% 38명) 26%(39명) 보다 높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3%(5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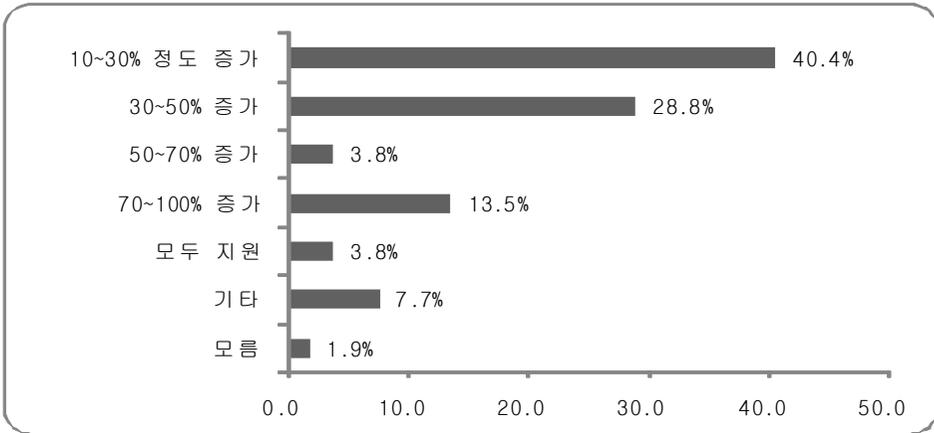
<그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적정성



(4)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 부적정시 조절 방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시설장 52명은 그 조절방안으로 □□10-30% 정도 증가□□(40.4%, 21명), □□30-50% 증가□□(28.8%, 15명), □□70%-100% 증가□□(13.5%, 7명), □□50%-70% 증가□□와 □□모두 지원□□(각각 3.8%, 2명)의 순으로 들고 있으며, 그 밖에 7.7%(4명)은 □□기타□□ 그리고 1.9%(1명)은 □□모름□□으로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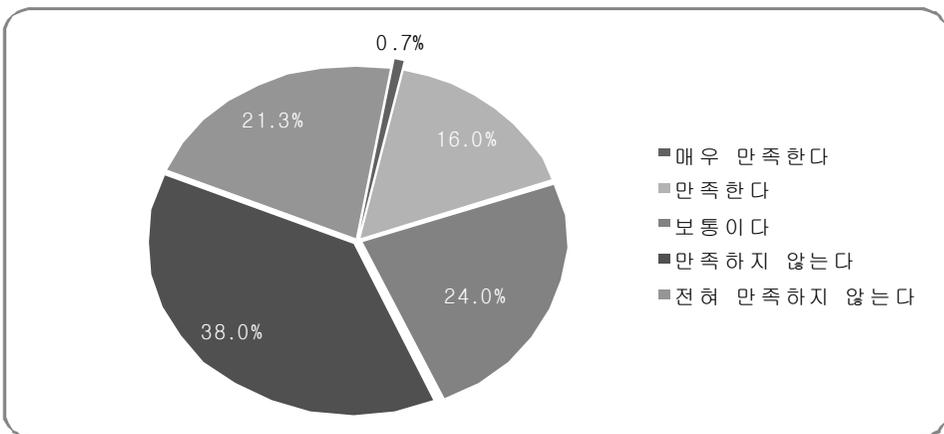
<그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의 부적정시 조절 방안



(5)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25명 16.7%(매우 만족 0.7% 1명, 만족 16.0% 24명)로 □□불만족□□ 정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1.3% 32명, 만족하지 않는다 38.0% 57명) 59.3%(87명)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4.0%(36명)이다.

<그림>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만족도는 경상(29.2%), 강원(27.3%), 서울(25.0%), 경기(12.7%), 전라(12.5%), 충청(4.2%)로 응답하였다. 시설의 운영 주체별 만족도는 직장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각각 40.0%), 가정 보육시설(10.9%), 민간 보육시설(5.5%)로 조사되었다.

<표>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Total (%)
전 체	(150)	0.7	16.0	24.0	38.0	21.3	100.0
▣ 운영지역 ▣							
서울	(20)	0.0	25.0	50.0	20.0	5.0	100.0
경기	(55)	0.0	12.7	18.2	43.6	25.5	100.0
강원	(11)	0.0	27.3	45.5	9.1	18.2	100.0
충청	(24)	0.0	4.2	20.8	54.2	20.8	100.0
경상	(24)	4.2	25.0	16.7	41.7	12.5	100.0
전라	(16)	0.0	12.5	12.5	31.3	43.8	100.0
시설의 운영주체							
국공립 보육시설	(30)	0.0	40.0	30.0	26.7	3.3	100.0
민간 보육시설	(55)	0.0	5.5	23.6	45.5	25.5	100.0
가정 보육시설	(55)	0.0	10.9	25.5	40.0	23.6	100.0
직장 보육시설	(10)	10.0	30.0	0.0	20.0	40.0	100.0

BASE: 전체(N=150)

(6)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 이유(개방형)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한 이유에 대해 유효 응답자 64명 중에서 □□기본 보조금 지원□□이 28.1%인 1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17.2%, 11명), □□지원 자체□□와 □□그런대로 만족스럽다/적당하다□□(각각 12.5%, 8명), □□시설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에 만족□□(9.4%, 6명), □□시설운영에 도움□□(6.3%, 4명), 그리고 각각 1.6% 1명이 응답한 □□입금날짜가 정확함□□, □□예전보다 많이 향상됨□□, □□정해진 제도에 맞추어 운영□□, □□시설별 지원금액이 비슷□□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7)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족 이유(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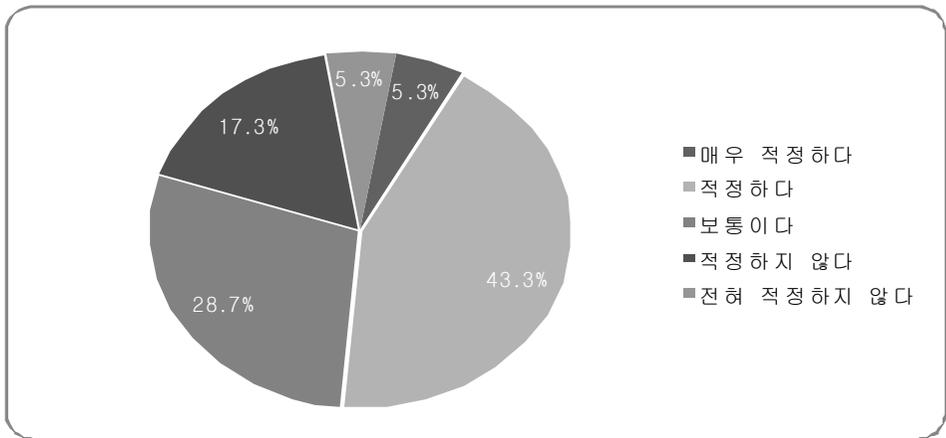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상이한 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에 응답한 유효 응답자 119명중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이 35.3%인 4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별 지원체계가 다름□□(22.7%, 22명), □□지원이 적다□□(6.7%, 8명), □□규정/제한이 까다로움□□과 □□인건비 지원 부족□□(각각 5.0%, 6명), □□영/유아 교사 인건비를 동일 지원하지 않는 것□□과 □□운영비 지원 부족□□(각각 3.4%, 4명), □□국공립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2.5%, 3명), 각각 1.7%인 2명이 응답한 □□가정과 민간 시설의 지원이 다름□□, □□원아모집 어려움(국공립에 비해)□□, □□국공립에 비해 민간가정의 운영이 불투명□□, □□정원이 차지 않으면 운영 어려움□□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8)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걱정 정도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걱정 정도에 대하여는 □□적정하다□□(매우 걱정 5.3% 8명, 적정 43.3% 65명)는 응답이

48.6%(73명)으로 □□적정하지 않다□□(전혀 적정하지 않다 5.35 8명, 적정하지 않다 17.3% 26명)는 응답 22.6%(34명)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43명)이다.

<그림>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걱정 정도



(9)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개방형)

개방형 질문으로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시설장 3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이 29.4%(1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7.6%(6명)의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아야 함□□, 14.7%(5명)의 □□소득기준에서 투명해져야 함□□, □□맞벌이 가정 위주로 지원해야 함□□과 □□소득 구분 말고 지원□□이 각각 5.9%(2명), □□두 자녀 이상 전액 보조□□와 □□일반아동도 어느 정도 지원 필요□□에 대하여 각각 2.9%(1명)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든 아이들이 지원 받아야 함, 서류심사가 아닌 실사를 나가 확

인 후 지원대상을 정해야 함, 그리고 소득 기준에서 투명해져야 함의 세 가지들, 민간 보육시설은 두 자녀 이상 전액 보조를, 가정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은 모든 아이들이 지원 받아야 함과 소득 기준에서 투명해져야 함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정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Total (%)
전 체	(34)	17.6	29.4	5.9	8.8	14.7	2.9	2.9	5.9	11.8	100.0
■ 시설의 운영주체 ■											
국공립 보육시설	(4)	25.0	0.0	0.0	25.0	25.0	2.9	2.9	5.9	11.8	100.0
민간 보육시설	(13)	23.1	15.4	15.4	7.7	15.4	25.0	0.0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12)	0.0	66.7	0.0	8.3	0.0	0.0	0.0	0.0	23.1	100.0
직장 보육시설	(5)	40.0	0.0	0.0	0.0	40.0	0.0	8.3	8.3	8.3	100.0

주: A*: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아야 함,
 B*: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C*: 맞벌이 가정 위주로 지원해야 함,
 D*: 서류심사가 아닌 실사를 나가 확인 후 지원대상 정해야 함,
 E*: 소득기준에서 투명해져야 함, F*: 두 자녀 이상 전액 보조,
 G*: 일반아동도 어느 정도 지원필요, H*: 소득구분말고 지원,
 I*: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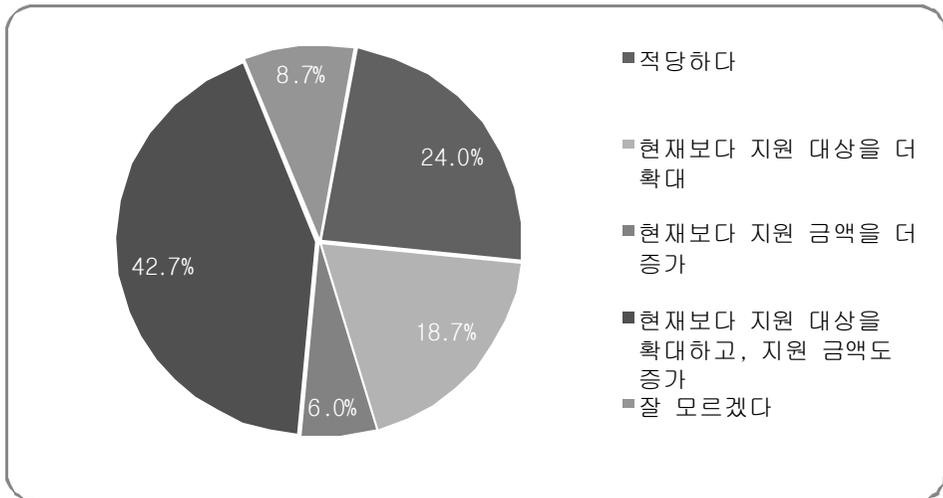
(10)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인지 여부

2009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본 결과 □□안다□□는 응답이 76.0%(114명)로 □□모른다□□는 응답 24.0%(36명)에 비하여 매우 많은 편이다.

(11)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적당하다□□는 응답이 24.0%(36명)인 반면에, □□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증가□□를 원하는 응답이 42.7%(64명), □□대상의 확대□□는 18.7%(28명), □□금액의 증가□□는 6.0%(9명)가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증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르겠다□□는 응답은 8.7%(1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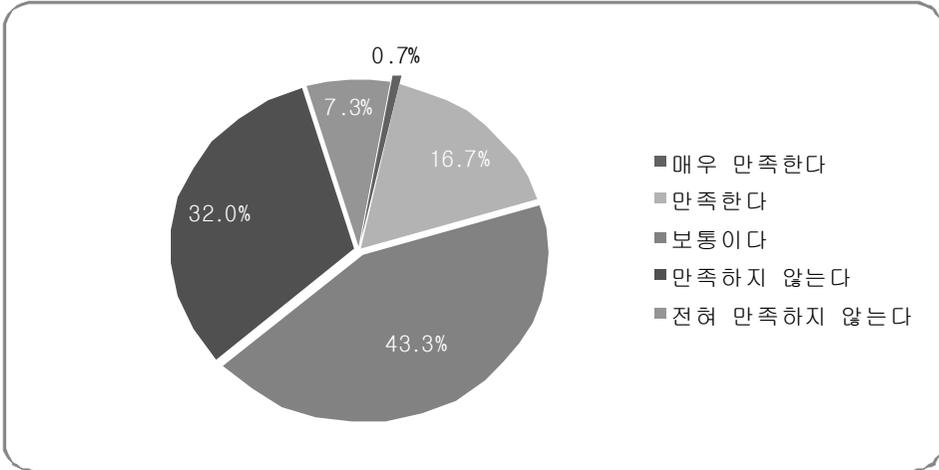
<그림>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12) 보육료의 차등 지원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 효과

보육료의 차등 지원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91.3%(137명)가 □□있다□□(매우 있다 26.0% 39명, 어느 정도 있다 65.3% 98명)고 응답하여 8.7%(13명)가 응답한 □□없다□□(전혀 없다 0.7% 1명, 없다 8.0% 12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보육료의 차등 지원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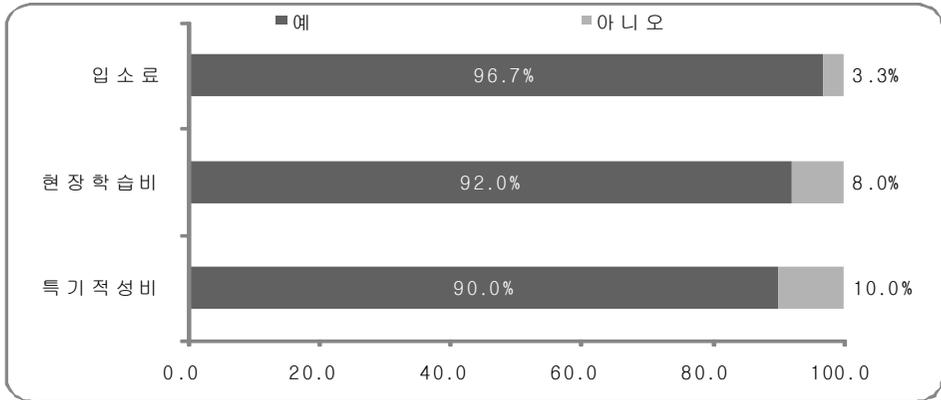


4. 추가경비 및 보육시간에 따른 지원체제 평가

(1)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 인지 여부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입소료(96.7%, 145명), 현장학습비(92.0%, 138명), 특기적성비(90.0%, 135명)의 순으로 많으며,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반대로 특기적성비(10.0%, 15명) 현장학습비(8.0%, 12명), 입소료(3.3%, 5명)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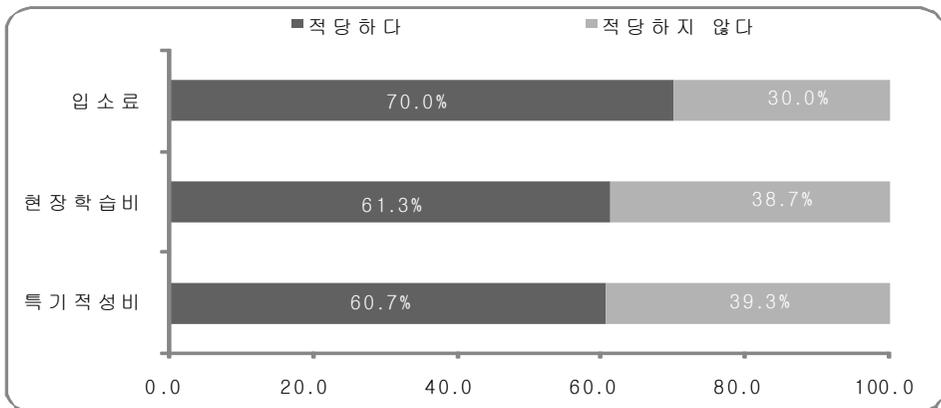
<그림>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 인지 여부



(2)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 적정성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입소료(70.0%, 105명), 현장학습비(61.3%, 92명), 특기적성비(60.7%, 91명)의 순으로 많으며,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반대로 특기적성비(39.3%, 59명) 현장학습비(38.7%, 58명), 입소료(30.0%, 45명)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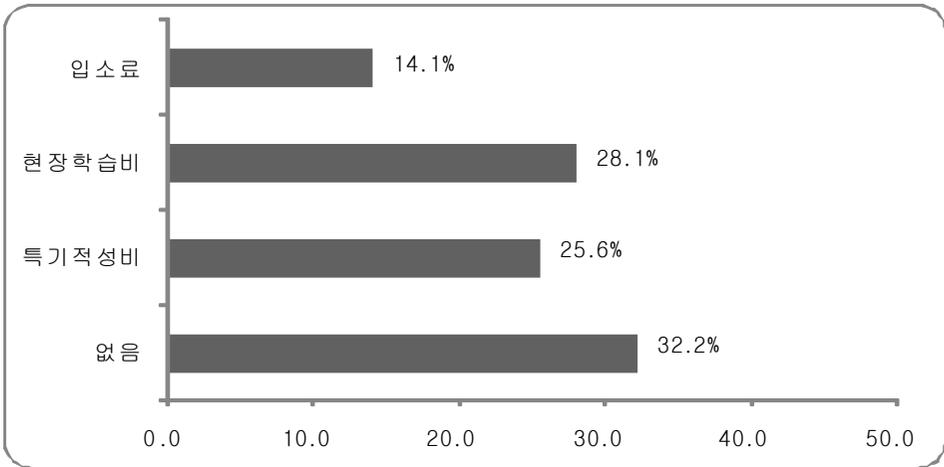
<그림>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 적정성



(3) 추가 경비중 한도액 증가 필요 항목(다중응답)

다중응답이 가능한 추가 경비 중 한도액 증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장학습비□□가 28.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5.6%(51명)의 □□특기적성비□□, 14.1%(28명)의 □□입소료□□ 순으로 많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32.2%(64명)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림> 추가 경비중 한도액 증가 필요 항목(다중응답)



(다중응답 : n=199)

(4) 보육료 한도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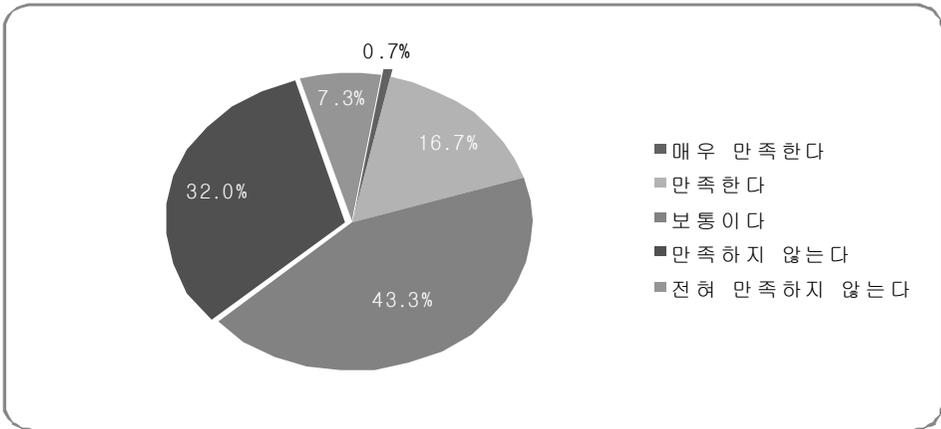
보육료 한도에 관하여는 31.3%(47명)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68.7%(103명)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당하다□□는 응답의 2배를 넘고 있다.

(5)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 정도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26명 17.4%(매우 만족 0.7% 1명, 만족 16.7% 25명)로 □□불만족□□ 정도(전혀

만족 않는다 7.3% 11명, 만족하지 않는다 32.0% 48명) 39.3%(59명)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3.3%(65명)이다.

<그림>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 정도



(6)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1) 만족의견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응답한 26명의 만족 이유는 □□금액의 적정성□□이 7명(26.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그냥 만족□□(6명 23.1%), □□운영에 보탬이 됨□□(5명 19.2%), □□정부의 노력□□(2명, 7.7%), □□시간대별 차등지원□□(1명 3.8%)순으로 많았다.

2) 불만족의견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59명의 불만족 이유는 □□지원금 부족□□이 18명(3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낮은 시간당 단가□□(11명 18.6%), □□규정시간 이후 인건비 지원부족□□(8명 13.6%),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와 □□규정시간 이후까지 관리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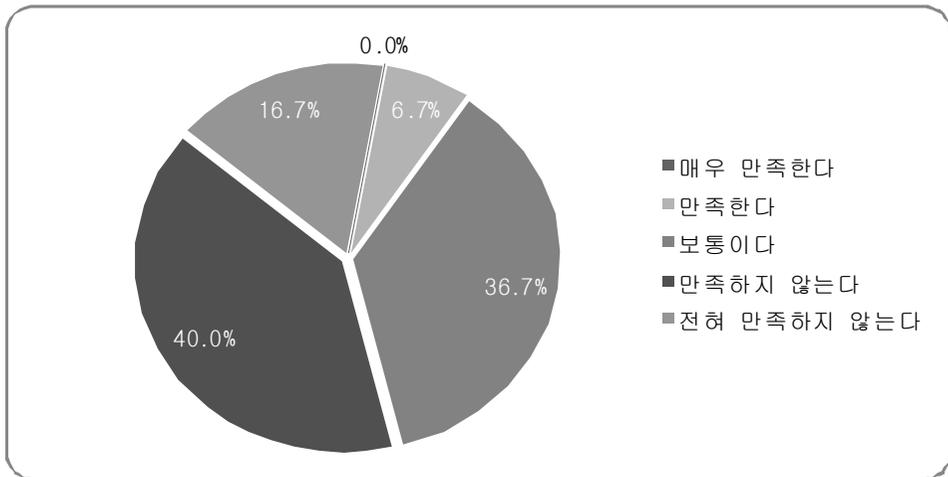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음□□가 각각 (4명, 6.8%), 등의 순으로 많았다.

5. 시설별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1)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족 정도

운영주체가 국,공립인 시설장(시설장 설문 SQ3 참조) 30명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의 만족 정도 대하여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6.7%(2명)에 불과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음 포함)는 56.7%(17명)에 달하여 응답자들은 인건비 보조 수준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족 정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시설장의 현장 교육 경력별 만족 정도는 5년 미만은 12.5%, 5년~10년 미만은 0.0%, 10년~20년 미만은 10.0%, 그리고 20년~30년 미만은 100.0%로 나타났다.

<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족 정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Total (%)
전 체	(30)	0	6.7	36.7	40	16.7	100.0
■ 현장 교육경력 ■							
5년 미만	(8)	0	0	25	37.5	37.5	100.0
5-10년	(11)	0	0	45.5	45.5	9.1	100.0
10년 이상	(11)	0	18.2	36.4	36.4	9.1	100.0

BASE: 전체(N=30)

(2)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만족 이유(개방형)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2명이 각각 제시한 이유는 □□민간에 비해 국공립 지원이 많음□□과 □□기타□□이다.

(3)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 불만족 이유(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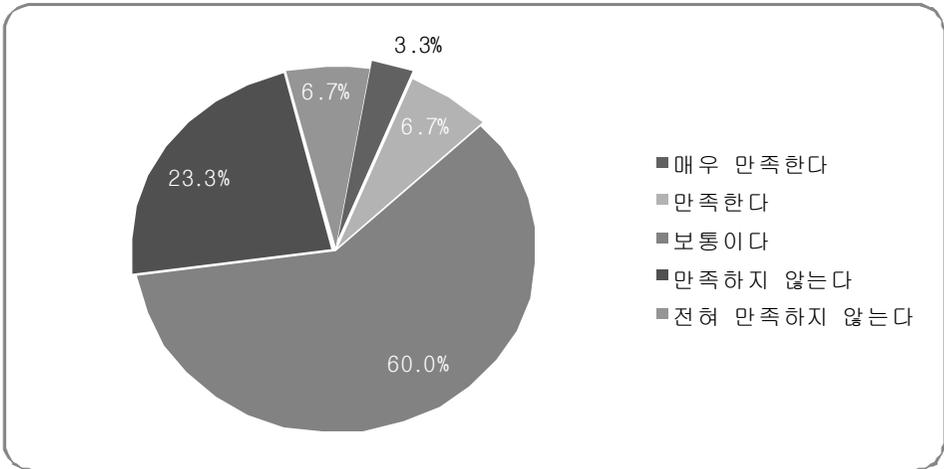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7명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에 대하여 불만족한 이유로는 □□교사인건비 지원 부족□□이 52.9%(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에 대한 지원부족(영아-80%,유아-30%)□□(35.3%, 6명)과 □□농어촌 지역은 지원이 부족함□□(11.8%, 2명)의 순으로 많았다.

(4)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만족 정도

운영주체가 국,공립인 시설장(시설장 설문 SQ3 참조) 30명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의 만족 정도 대하여 물어본 결과,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3명 10.0%(매우 만족 3.3% 1명, 만족 6.7% 2명)로 □□불만족□□ 정도(전혀 만족 않는다

6.7% 2명, 만족하지 않는다 23.3% 7명) 30.0%(59명)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0.0%(18명)이다.

<그림>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만족 정도



(5)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3명 중 2명은 □□프로그램별 지원은 잘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9명 중 3명(33.3%)은 그 이유로 □□시간연장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부족□□을 들고 있으며, 2명(22.2%)은 □□지원금 감소□□를 그리고 1명(11.1%)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별 지원이 필요함□□을 들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시설장의 현장 교육 경력별 만족 정도는 5년 미만은 12.5%, 5년~10년 미만은 0.0%, 10년~20년 미만은 10.0%, 그리고 20년~30년 미만은 100.0%로, 시설장의 교육 경력이 높을수록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아반 정원별 만족 정도는 1명~10명이 33.3%, 그리고 21명~30명

이 8.3%이며 나머지는 0.0%로, 정원이 적을 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프로그램별 지원 수준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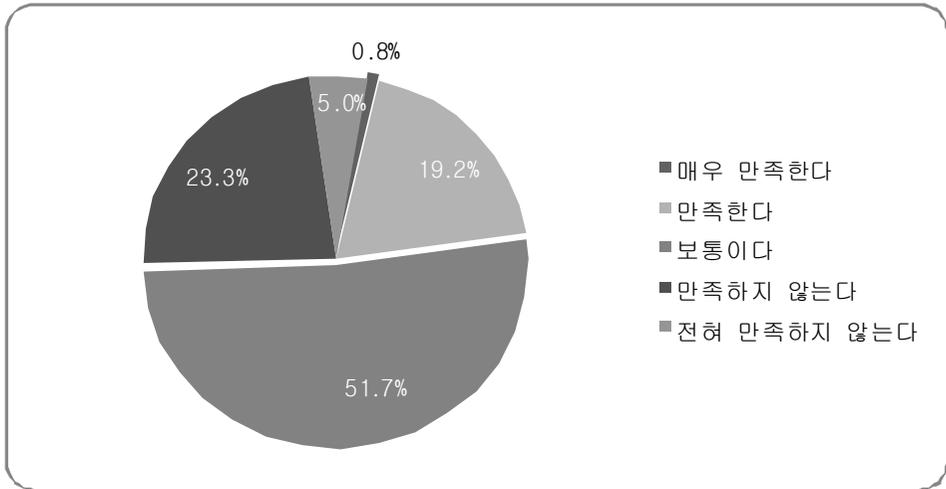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Total (%)
전 체	(30)	3.3	6.7	60.0	23.3	6.7	100.0
■ 현장 교육 경력 ■							
5년 미만	(8)	0.0	12.5	50.0	25.0	12.5	100.0
5-10년미만	(11)	0.0	0.0	72.7	27.3	0.0	100.0
10-20년 미만	(10)	0.0	10.0	60.0	20.0	10.0	100.0
20-30년 미만	(1)	100.0	0.0	0.0	0.0	0.0	100.0
■ 영아반 정원 ■							
1-10명	(3)	0.0	33.3	66.7	0.0	0.0	100.0
11명-20명	(10)	0.0	10.0	70.0	20.0	0.0	100.0
21명-30명	(12)	8.3	0.0	58.3	33.3	0.0	100.0
31명-40명	(2)	0.0	0.0	50.0	50.0	0.0	100.0
41명 이상	(3)	0.0	0.0	33.3	0.0	66.7	100.0

BASE: 전체(N=30)

(6)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수준 만족 정도

운영주체가 국,공립이 아닌 시설장(시설장 설문 SQ3 참조) 120명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수준의 만족 정도 대하여 물어본 결과,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수준에 대한 □□만족□□ 정도는 24명 20.0%(매우 만족 0.8% 1명, 만족 19.2% 23명)로 □□불만족□□ 정도(전혀 만족 않는다 5.0% 6명, 만족하지 않는다 23.3% 28명) 28.3%(34명)에 비하여 낮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1.7%(62명)이다.

<그림>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수준 만족 정도



(7)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보조금 수준에 대한 의견

1) 만족의견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 24명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보조금 수준 만족하는 이유로는 □□운영에 도움이 됨□□이 25.0%(6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영아지원금에 대해서는 만족함□□(20.8%, 5명), □□기본보조금이 적당□□(16.7%, 4명),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만족□□(8.3%, 2명),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됨□□(4.2%, 1명)의 순으로 많다.

2) 불만족의견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34명에게 아동에게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본보조금 수준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움□□이 41.2%(1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보조금 지원 확

대□□와 □□영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각각 14.7%, 5명), □□교사대 아동비율이 적으면 지급이 안 되는 점□□과 □□유아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및 □□연령별 정원에서 추가로 받으면 추가비용을 적용해 주었으면□□(각각 5.9%, 2명), □□영유아 차등 지급□□(2.9%, 1명)의 순으로 많다.

6. 아이 사랑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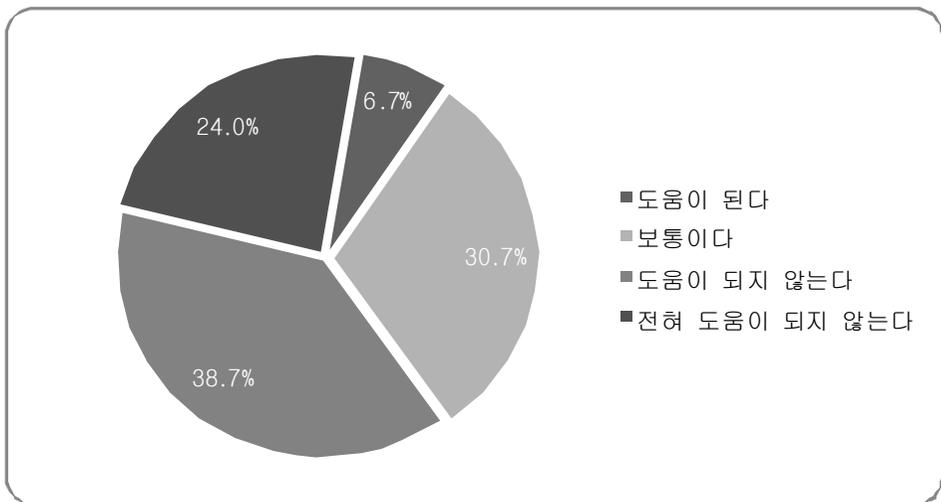
(1)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아이 사랑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98.7%(148명)로, □□모른다□□는 응답 1.3%(2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2)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10명)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안된다 포함)는 응답 62.7%(94명)에 비하여 매우 적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0.7%(46명)이다.

<그림>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3)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개방형)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10명에게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에서 □□학부모에게 도움(지원액에 대한 인지, 편리함)□□이 30.0%(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와 시설운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 20.0%(2명), 그리고 □□한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덜 같 듯□□과 □□연말정산에 도움□□이 각각 10.0%(1명)을 들고 있다.

(4)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개방형)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94명은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41.5%(3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달 해당 날짜에 결제해야 함□□ 26.6%(25명), 그리고 □□학부모의 생색내기(운영상의 갈등)□□ (5.3%, 5명), □□농촌지역은 인지도가 낮고 실제 적용도 어려움□□과 □□기준과 차이가 없음□□(각각 4.3%, 4명), □□일거리가 더 많아짐□□과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각각 3.2%, 3명), □□카드사에만 좋은 제도□□, □□카드 수수료 부담□□, 그리고 □□신용 문제가 있음□□(각각 2.1%, 2명), □□추가경비는 따로 납부해야 해서 더 귀찮아 하심□□ 1.1%(1명)을 들고 있다.

7. 관련 개선안의 모색을 위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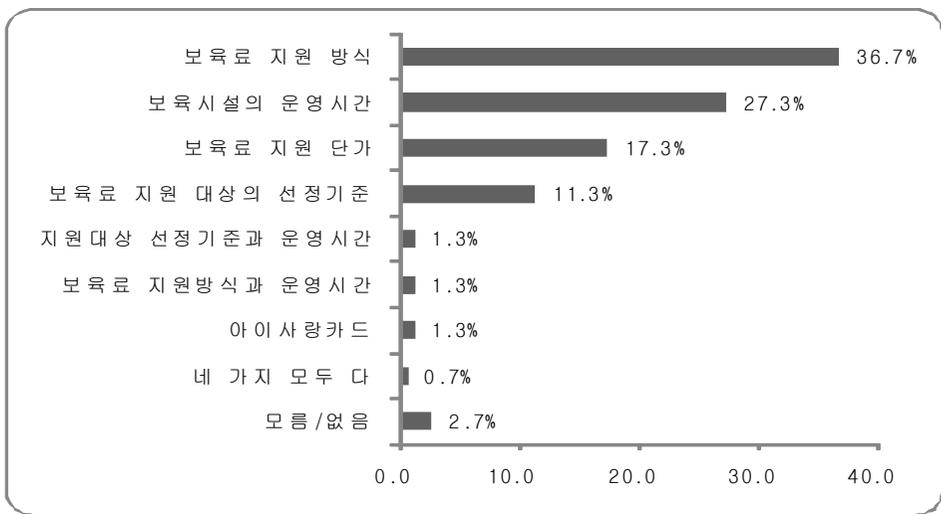
(1)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보육료 지원 방식□□(36.7%, 55명)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27.3%, 41명), □□보육료 지원 단가□□(17.3%, 26명), □□보육료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11.3%, 17명)의 순으로 들고 있다. 그 밖에 응답

항목으로 제시된 항목 중 2개 이상을 들고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항목인 □□아이사랑카드□□(1.3%, 2명)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보육료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운영시간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2)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바라는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의견 (개방형)

보육료 지원과 관련 바라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아이사랑카드 문제점 보완(차라리 기존방식 유지)□□가 16.7%(2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8.0%, 12명), □□모든 아이들에 대해 의무화해서 지원□□(6.7%, 10명), □□실질적인 지원 대상 선정(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음)□□과 □□국공립/민간/가정 구별 없이 지원□□(각각 5.3%, 8명), □□교사 호봉제 및 인센티브 지원□□, □□초과시간 근무에 대한 지원 대책□□, □□유아반 지원 확대□□, 그리고

□□교사의 근로기준법과 운영시간이 다른 것에 대한 대책 마련□□(각각 3.3%, 5명), □□맞벌이가정지원 확대(현재 소득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움)□□(2.7%, 4명), □□서류제출의 간소화(잡무가 많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추가경비 상한선을 폐지□□, 그리고 □□지원금액 확대□□(각각 2.0%, 3명), □□현실적인 지원정책(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간식비 지원□□,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뀜□□(1.3%, 2명), □□유치원과 같은 지원제도(종일반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교사의 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운전기사 등)□□(각각 1.3%, 2명),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운영시간 자율화□□, □□교사 처우 개선□□(각각 0.7%,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를 위한 기초질문

학부모에 대한 질문 사항은 현 거주지, 거주 지역 규모, 자녀 수, 만 5세 미만 자녀 나이,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 취학 중인 어린이집 종류, 취학 중인 어린이 집에 머무는 시간, 자녀의 국가 지원 대상 여부이다.

(1) 현 거주지 및 거주지역의 규모

응답자의 거주지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32.0%(16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26.0%, 130명), 경상(22.0%, 110명), 충청(9.0%, 45명), 전라(8.0%, 40명), 그리고 강원(3.0%, 15명)의 순이다.

거주 지역 규모는 대도시(65.2%, 326명), 중소도시(30.4%, 152명), 그리고 읍/면(4.4%, 22명)의 순이다.

<표> 현 거주지 및 거주지역의 규모

	항 목	빈도(명)	퍼센트(%)
현 거주지	서울	130	26.0
	경기(인천 포함)	160	32.0
	강원	15	3.0
	충청	45	9.0
	경상	110	22.0
	전라	40	8.0
합 계		500	100.0
지역의 규모	대도시(특별시/광역시)	326	65.2
	중소도시	152	30.4
	읍/면(농어촌)	22	4.4
합 계		500	100.0

(2) 자녀 수(개방형)

자녀수는 2명이 62.6%(313명)로 가장 많고 2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1명이 20.4%(102명), 3명이 16.2%(81명), 그리고 4명이 0.8%(4명)로 평균은 1.97명이다.

자녀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수는 1명이 52.4%(26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명이 43.4%(217명), 그리고 3명이 4.2%(21명)이다.

<표> 자녀 수(개방형)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자녀수	1명	102	20.4
	2명	313	62.6
	3명	81	16.2
	4명	4	0.8
합 계		500	100.0
2003년 기준*	1명	262	52.4
	2명	217	43.4
	3명	21	4.2
합 계		500	100.0

* 자녀 중에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수를 물음. 2009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경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방형 질문을 함.

(3) 만 5세 미만 자녀 나이

200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 중, 첫째 자녀 500명의 출생년도는 2004년이 37.0%인 18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05년(25.8%, 129명), 2003년(18.8%, 94명), 2006년(11.8%, 59명), 2007년(3.6%, 18명), 2008년(3.0%, 15명)의 순으로 많다.

둘째 자녀 238명의 출생년도는 2006년과 2007년이 각각 24.4%인 5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08년(23.9%, 57명), 2005년(14.3%, 34명), 2009년(8.4%, 20명), 2004년(3.8%, 9명), 2003년(0.8%, 2명)의 순으로 많다.

셋째 자녀 21명의 출생년도는 2008년이 52.4%인 1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07년과 2009년(각각 19.0%, 4명), 2005년과 2006년(각각 4.8%, 1명)의 순으로 많다.

<표> 자녀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개방형)

(단위: 명, %)

항 목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종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003년	94	18.8	2	0.8	-	-	96	12.6
2004년	185	37.0	9	3.8	-	-	194	25.6
2005년	129	25.8	34	14.3	1	4.8	164	21.6
2006년	59	11.8	58	24.4	1	4.8	118	15.5
2007년	18	3.6	58	24.4	4	19.0	80	10.5
2008년	15	3.0	57	23.9	11	52.4	83	10.9
2009년	-	-	20	8.4	4	19.0	24	3.2
합 계	500	100.0	238	100.0	21	100.0	759	100.0

(4)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를 보면, 첫 번째 자녀는 92.9%, 두 번째 자녀는 63.4%, 세 번째 자녀는 42.9%로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은 81.8%이다.

<표>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취학 여부(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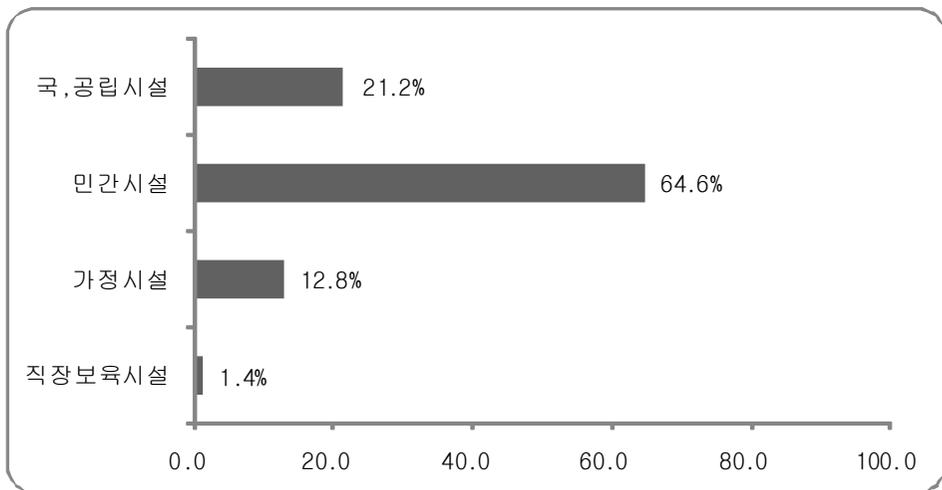
(단위: 명, %)

항 목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종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예	461	92.2	151	63.4	9	42.9	621	81.8
아니오	39	7.8	87	36.3	12	57.1	138	18.2
합 계	500	100.0	238	100.0	21	100.0	759	100.0

(5) 취학 중인 어린이집 종류

취학 중인 어린이집 종류는 민간이 64.6%(323명)로 가장 많고, 국공립(21.2%, 106명), 가정(12.8%, 64명),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1.4%, 7명)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취학 중인 어린이집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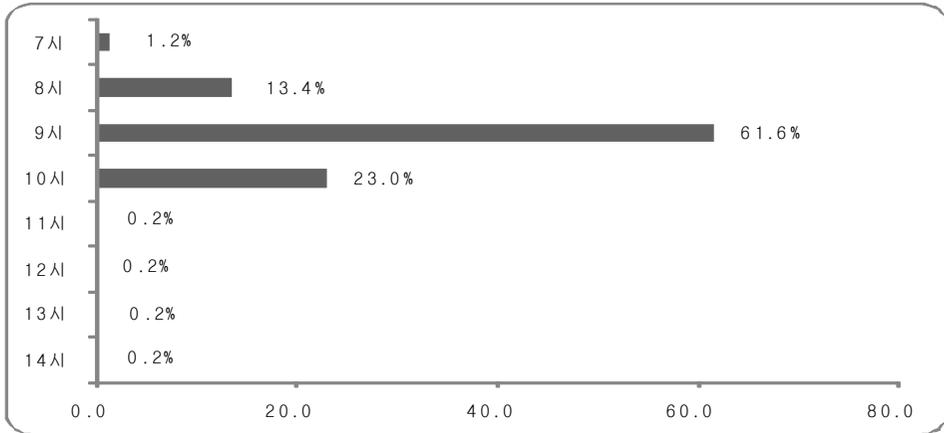
n=500

(6) 취학 중인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1) 등원시간

등원시간은 9시가 61.6%(30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시(23.0%, 115명), 8시(13.4%, 67명), 7시(1.2%, 6명)의 순서로 많으며, 11시, 12시, 13시, 14시도 각각 1명(0.2%)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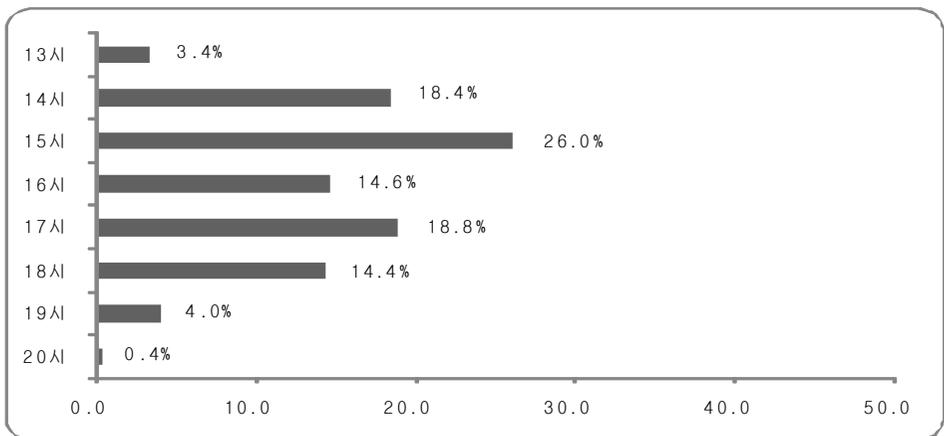
<그림> 취학 중인 어린이집 등원시간



2) 하원시간

하원시간은 15시가 26.0%(13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7시(18.8%, 94명), 14시(18.4%, 92명), 16시(14.6%, 73명), 18시(14.4%, 72명), 19시(4.0%, 20명), 13시(3.4%, 17명), 그리고 20시(0.4%, 2명)의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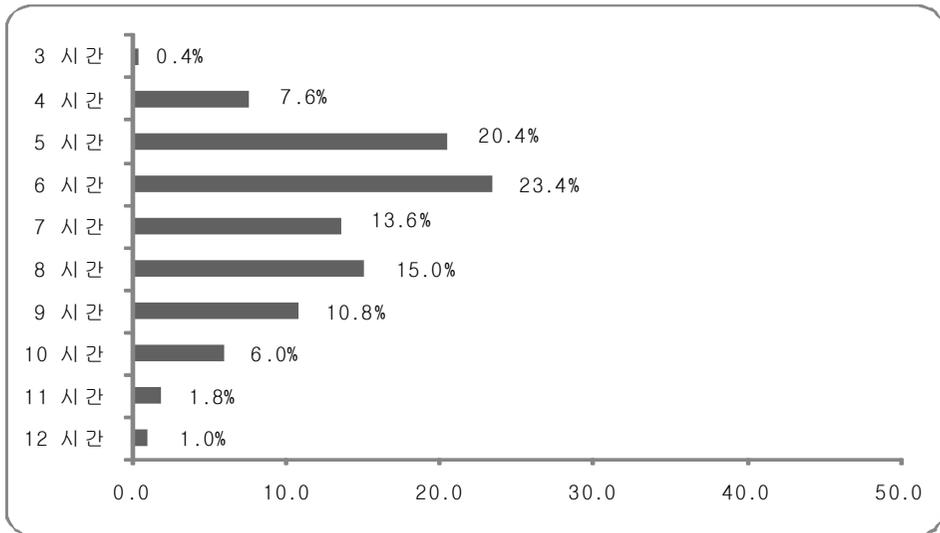
<그림> 취학 중인 어린이집 하원시간



3) 시설에 머무는 시간

시설에 머무는 시간은 6시간이 23.4%(10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시간(20.4%, 102명), 8시간(15.0%, 75명), 7시간(13.6%, 68명), 9시간(10.8%, 54명), 4시간(7.6%, 38명), 10시간(6.0%, 30명), 11시간(1.8%, 9명), 12시간(1.0%, 5명), 그리고 3시간(0.4%, 2명)의 순으로 많으며 평균은 6.782시간이다.

<그림> 취학 중인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7) 자녀의 국가 지원 대상 여부(다중응답)

자녀의 국가 지원대상은 4.0%인 20명으로 이중 16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이며, 4명은 □□한 부모 가정 아동□□이다.

<표> 자녀의 국가 지원 대상 여부(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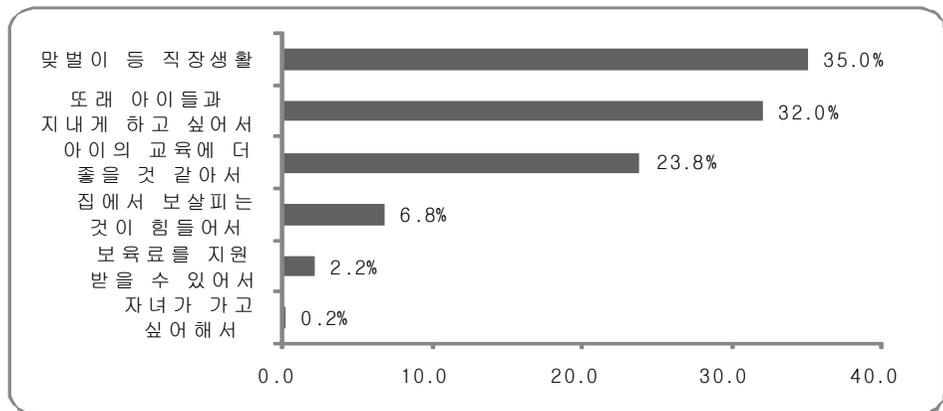
항 목	빈도(명)	퍼센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16	3.2
한 부모 가정 아동	4	0.8
해당사항 없음	480	96.0
합 계	500	100.0

2. 보육시설 이용현황

(1)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로는 □□맞벌이 등 직장생활□□이 35.0%(17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32.0%, 160명), □□아이의 교육에 더 좋을 것 같아서□□(23.8%, 119명), □□집에서 보살피는 것이 힘들어서□□(6.8%, 34명),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2.2%, 11명), 그리고 □□자녀가 가고 싶어 해서□□(0.2%, 1명)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그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 보육 담당자별로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어머니, 가족 모두는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 해서, 부모, 조부모, 어린이집은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는 위의 이유 두 가지 모두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모두 무직이거나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는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 해서, 부모 모두 직업을 가졌거나 어머니만 가진 경우는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은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 해서, 300만원 이상은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600만원~700만원 미만은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에 따라서는 1명과 3명은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 해서, 2명은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는 3시간~7시간 까지는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 해서, 8시간~12시간은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길수록 직접 보살핌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등 사회구성원들의 경제활동 형태의 변화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후 법제도의 개선시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표>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응답자 수 (명)	어린이 집에 보내야 보육료 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 등 직장 생활로 인해 직접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보살 피는 것이 힘들 어서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더 좋은 것 같아서	또래 아이 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	자녀가 가고 싶어 해서	Total (%)
전 체	(500)	2.2	35.0	6.8	23.8	32.0	0.2	100.0
■ 주 보육 담당자 ■								
아이의 어머니	(412)	2.4	29.1	6.6	26.0	35.9	0.0	100.0
아이의 아버지	(4)	0.0	50.0	0.0	0.0	50.0	0.0	100.0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65)	1.5	61.5	10.8	13.8	10.8	1.5	100.0
아이의 조부모	(17)	0.0	70.6	0.0	17.6	11.8	0.0	100.0
가족 모두	(1)	0.0	0.0	0.0	0.0	100.0	0.0	100.0
어린이집	(1)	0.0	100.0	0.0	0.0	0.0	0.0	100.0
■ 부모의 직업 유무 ■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0.0	0.0	0.0	0.0	100.0	0.0	100.0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1.1	79.9	1.7	6.7	10.6	0.0	100.0
어머니만	(8)	0.0	87.5	0.0	0.0	12.5	0.0	100.0
아버지만	(310)	2.9	8.1	10.0	34.5	44.2	0.3	100.0
■ 소 득 ■								
100-200만원 미만	(65)	6.2	16.9	10.8	24.6	41.5	0.0	100.0
100만원 미만	(9)	0.0	33.3	0.0	11.1	55.6	0.0	100.0
200-300만원 미만	(155)	1.3	25.2	7.7	31.6	34.2	0.0	100.0

제 4 절 실태조사 분석

	응답자 수 (명)	어린이 집에 보내야 보육료 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 등 직장 생활로 인해 직접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보살 피는 것이 힘들 어서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더 좋은 것 같아서	또래 아이 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	자녀가 가고 싶어 해서	Total (%)
300-400만원 미만	(130)	2.3	37.7	5.4	22.3	31.5	0.8	100.0
400-500만원 미만	(74)	2.7	50.0	5.4	14.9	27.0	0.0	100.0
500-600만원 미만	(37)	0.0	62.2	8.1	18.9	10.8	0.0	100.0
600-700만원 미만	(10)	0.0	40.0	0.0	20.0	40.0	0.0	100.0
700만원 이상	(17)	0.0	41.2	5.9	23.5	29.4	0.0	100.0
모름 /무응답	(3)	0.0	66.7	0.0	0.0	33.3	0.0	100.0
<p>▣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 ▣</p>								
1명	(262)	0.8	36.6	2.7	23.7	35.9	0.4	100.0
2명	(217)	4.1	34.1	11.1	24.0	26.7	0.0	100.0
3명	(21)	0.0	23.8	14.3	23.8	38.1	0.0	100.0
<p>▣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p>								
3시간	(2)	0.0	0.0	50.0	0.0	50.0	0.0	100.0
4시간	(38)	5.3	7.9	10.5	28.9	47.4	0.0	100.0
5시간	(102)	1.0	9.8	12.7	31.4	45.1	0.0	100.0
6시간	(117)	3.4	22.2	6.8	26.5	40.2	0.9	100.0
7시간	(68)	5.9	30.9	2.9	25.0	35.3	0.0	100.0
8시간	(75)	0.0	54.7	4.0	20.0	21.3	0.0	100.0
9시간	(54)	0.0	64.8	3.7	18.5	13.0	0.0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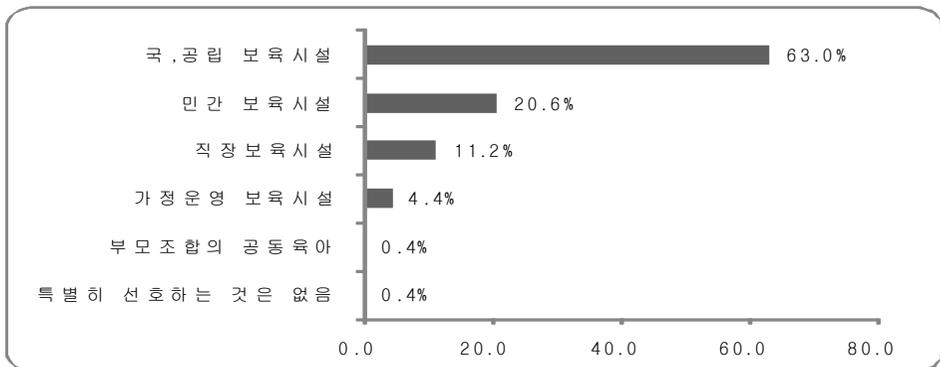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어린이 집에 보내야 보육료 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 등 직장 생활로 인해 직접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보살 피는 것이 힘들 어서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더 좋은 것 같아서	또래 아이 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	자녀가 가고 싶어 해서	Total (%)
10시간	(30)	0.0	90.0	3.3	3.3	3.3	0.0	100.0
11시간	(9)	0.0	88.9	0.0	11.1	0.0	0.0	100.0
12시간	(50)	0.0	80.0	0.0	20.0	0.0	0.0	100.0

BASE: 전체(N=500)

(2)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는 63.0%(315명)이 응답한 □□국,공립 보육 시설□□이며, 그 다음으로는 20.6%(103명)의 □□민간 보육시설□□, 11.2%(56명)의 □□직장보육시설□□, 4.4%(22명)의 □□가정운영 보육시설□□, 0.4%(2명)의 □□부모조합의 공동육아□□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다□□는 응답도 0.4%(2명)가 있다.

<그림>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 보육 담당자가 누구인가, 부모의 직업 유무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이 직장 보육시설인 경우는 직장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11시간 이상 12시간 까지는 직장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응답자 수 (명)	국, 공립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가정 운영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부모 조합의 공동 육아	특별히 선호 하는 것은 없음	Total (%)
전 체	(500)	63.0	20.6	4.4	11.2	0.4	0.4	100.0
■ 주 보육 담당자 ■								
아이의 어머니	(412)	62.6	21.4	4.4	11.2	0.0	0.5	100.0
아이의 아버지	(4)	100.0	0.0	0.0	0.0	0.0	0.0	100.0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65)	61.5	21.5	6.2	9.2	1.5	0.0	100.0
아이의 조부모	(17)	70.6	5.9	0.0	23.5	0.0	0.0	100.0
가족 모두	(1)	100.0	0.0	0.0	0.0	0.0	0.0	100.0
어린이집	(1)	0.0	0.0	0.0	0.0	100.0	0.0	100.0
■ 부모의 직업 유무 ■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66.7	33.3	0.0	0.0	0.0	0.0	100.0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57.0	16.2	3.9	21.8	0.6	0.6	100.0
어머니만	(8)	87.5	12.5	0.0	0.0	0.0	0.0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응답자 수 (명)	국, 공립 보육 시설	민간 보육 시설	가정 운영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부모 조합의 공동 육아	특별히 선호 하는 것은 없음	Total (%)
아버지만	(310)	65.8	23.2	4.8	5.5	0.3	0.3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28.6	28.6	0.0	42.9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64)	43.8	17.2	20.3	17.2	0.0	1.6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61.0	26.6	2.8	9.0	0.3	0.3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83.0	3.8	0.0	12.3	0.9	0.0	100.0
▣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								
3시간	(2)	100.0	0.0	0.0	0.0	0.0	0.0	100.0
4시간	(38)	63.2	23.7	7.9	5.3	0.0	0.0	100.0
5시간	(102)	61.8	25.5	5.9	6.9	0.0	0.0	100.0
6시간	(117)	70.1	17.9	3.4	8.5	0.0	0.0	100.0
7시간	(68)	67.6	22.1	4.4	2.9	1.5	1.5	100.0
8시간	(75)	62.7	20.0	1.3	14.7	1.3	0.0	100.0
9시간	(54)	51.9	24.1	5.6	16.7	0.0	1.9	100.0
10시간	(30)	60.0	13.3	3.3	23.3	0.0	0.0	100.0
11시간	(9)	33.3	0.0	11.1	55.6	0.0	0.0	100.0
12시간	(50)	40.0	0.0	0.0	6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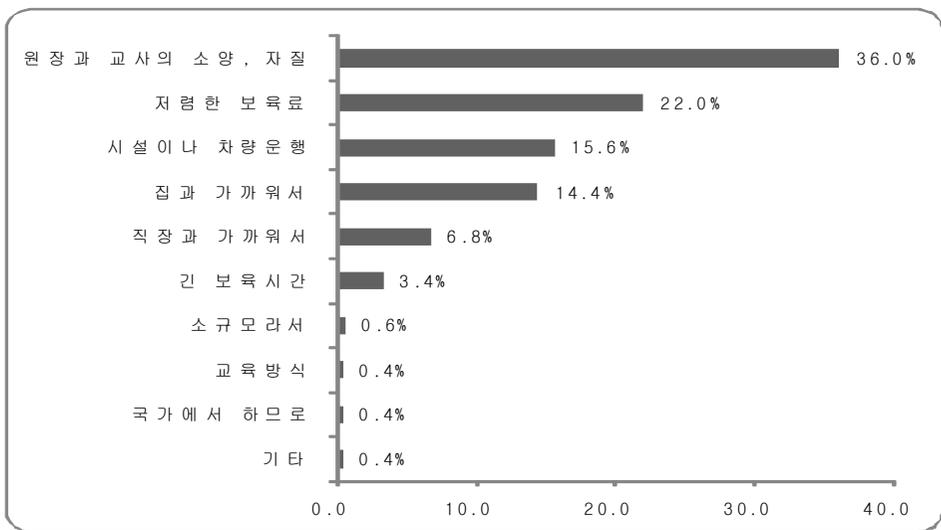
BASE: 전체(N=500)

(3)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는 이유로는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이 36.0%(18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렴한 보육료□□(22.0%, 110명), □□시

설이나 차량운행□□(15.6%, 78명), □□집과 가까워□□(14.4%, 72명), □□직장과 가까워□□(6.8%, 34명), □□긴 보육시간□□(3.4%, 17명), □□소규모□□(0.6%, 3명), □□교육방식□□과 □□국가에서 하므로□□각각 0.4%(2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부모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의 질적 담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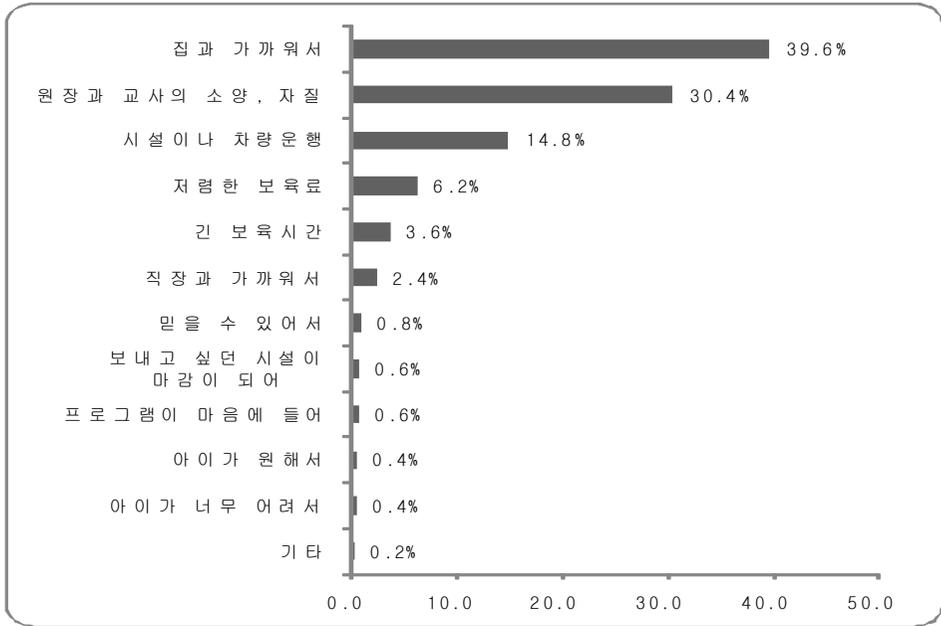
<그림> 선호하는 이유



(4)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로는 □□집과 가까워□□가 39.6%(19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30.4%, 152명), □□시설이나 차량운행□□(14.8%, 74명), □□저렴한 보육료□□(6.2%, 31명), □□긴 보육시간□□(3.6%, 18명), □□직장과 가까워□□(2.4%, 12명), □□믿을 수 있어서□□(0.8%, 4명), □□보내고 싶던 시설이 마감이 되어□□와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가 각각 0.6%(3명), 그리고 □□아이가 원해서□□와 □□아이가 너무 어려서□□가 각각 0.4%(2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 보육 담당자별로 가장 많이 답변한 이유는 어머니, 부모, 조부모, 가족 모두인 경우는 집과 가까워서, 아버지인 경우는 시설이나 차량 운행 등이 만족스러워서, 어린이집인 경우는 믿을 수가 있어서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 또는 아버지만 직업을 가진 경우는 집과 가까워서, 어머니만 직업을 가진 경우는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을 믿을 수 있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집과 가까워서, 시설이나 차량 운행 등이 만족스러워서와 보육시간이 길어서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이 직장 보육시설인 경우와 국·공립 보육시설인 경우는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을 믿을 수 있어서를 주된 이유로 들었고, 가정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은 집과 가까워서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표>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J*	K*	L*	Total (%)
전 체	(500)	30.4	14.8	39.6	2.4	3.6	6.2	0.8	0.6	0.4	0.4	0.6	0.2	100.0
■ 주 보육 담당자 ■														
아이의 어머니	(412)	29.9	15.5	39.1	2.7	3.2	6.8	0.5	0.7	0.2	0.5	0.7	0.2	100.0
아이의 아버지	(4)	25.0	5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65)	35.4	9.2	43.1	1.5	6.2	1.5	1.5	0.0	1.5	0.0	0.0	0.0	100.0
아이의 조부모	(17)	29.4	11.8	41.2	0.0	5.9	11.8	0.0	0.0	0.0	0.0	0.0	0.0	100.0
가족 모두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어린이집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 부모의 직업 유무 ■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0.0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21.2	12.3	45.8	6.1	6.7	5.0	0.6	0.0	0.6	1.1	0.6	0.0	100.0
어머니만	(8)	37.5	25.0	12.5	0.0	25.0	0.0	0.0	0.0	0.0	0.0	0.0	0.0	100.0
아버지만	(310)	35.8	15.8	36.8	0.3	1.0	7.1	1.0	1.0	0.3	0.0	0.6	0.3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28.6	14.3	14.3	14.3	0.0	14.3	14.3	0.0	0.0	0.0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64)	23.4	4.7	54.7	1.6	4.7	1.6	1.6	1.6	1.6	3.1	1.6	0.0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28.2	18.3	43.3	2.8	2.8	2.8	0.6	0.6	0.3	0.0	0.3	0.0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41.5	10.4	20.8	0.9	5.7	18.9	0.0	0.0	0.0	0.0	0.9	0.9	100.0

주: A*: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을 믿을 수 있어서, B*: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이 만족스러워서,
 C*: 집과 가까워서, D*: 직장과 가까워서,
 E*: 보육시간이 길어서, F*: 보육료가 저렴해서,
 G*: 믿을 수 있어서, H*: 보내고 싶던 시설이
 I*: 아이가 원해서, 마감이 되어서,
 K*: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J*: 아이가 너무 어려서,
 L*: 기타

BASE: 전체(N=500)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학부모의 경우 보육시설의 교육질에 대한 부분과 보육료 등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집과의 근접성이 최우선적인 선택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근접성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시 보육시설의 근접성을 확보하도록 시설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교육질의 담보와 보육료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유아 보육법 관련 사항

(1) 국가의 보육료 지원 인지 여부

국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94.4%(472명)가 □□안다□□고 응답하고, 5.6%(28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볼 때, 소득과 관련된 인지도에서 특히 100만원 미만과 700만원 이상의 인지도는 100.0%인 것으로 조사되어 차등 지급의 대상별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상과 받지 못하는 대상 그룹이 모두 인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가의 보육료 지원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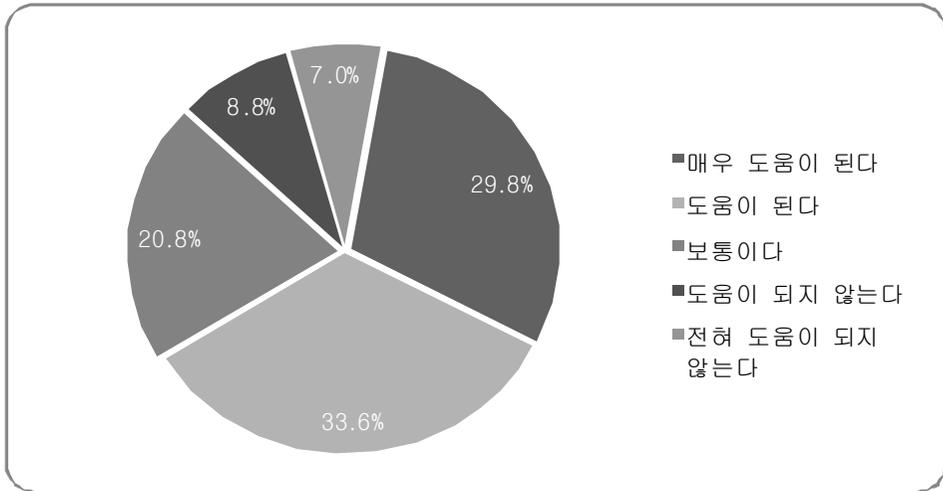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안다	모른다	Total(%)
전 체	(500)	94.4	5.6	100.0
■ 소득 ■				
100만원 미만	(9)	100.0	0.0	100.0
100-200만원 미만	(65)	98.5	1.5	100.0
200-300만원 미만	(155)	96.8	3.2	100.0
300-400만원 미만	(130)	94.6	5.4	100.0
400-500만원 미만	(74)	87.8	12.2	100.0
500-600만원 미만	(37)	91.9	8.1	100.0
600-700만원 미만	(10)	70.0	30.0	100.0
700만원 이상	(17)	100.0	0.0	100.0
모름 /무응답	(3)	100.0	0.0	100.0

BASE: 전체(N=500)

(2)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4%인 317명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함)는 응답(15.8%, 79명)보다 많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8%인 104명이다.

<그림>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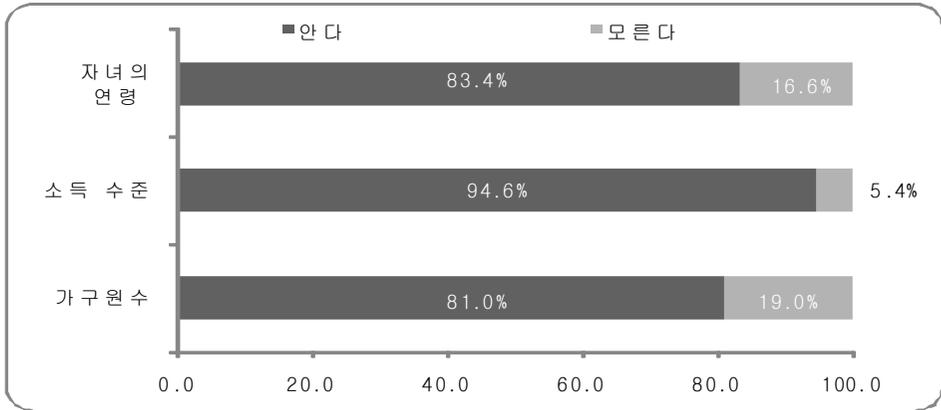
(3) 보육료 지원의 근거가 보육법임을 아는지 여부

보육료 지원의 근거가 보육법임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4.4%(422명)가 □□안다□□고 응답하고, 15.6%(78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근거가 보육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인지 여부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대상별로 차이가 난다. □□안다□□는 응답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94.6%(473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83.4%, 417명),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81.0%, 405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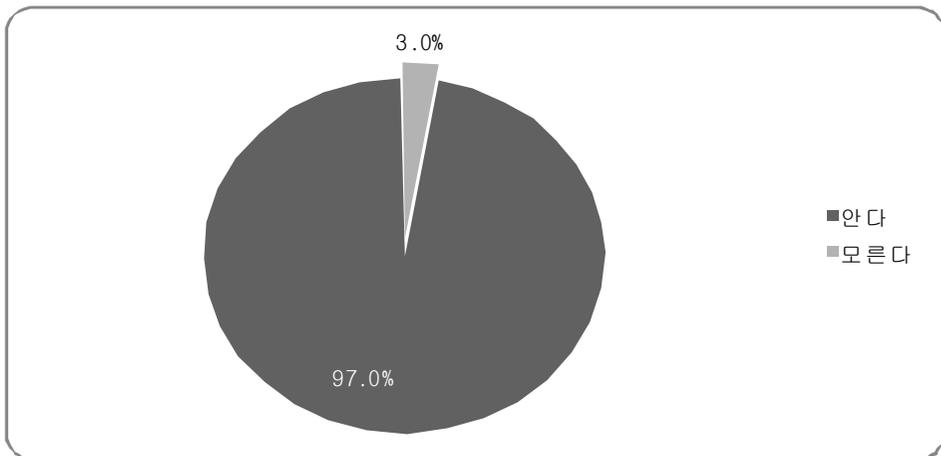
<그림>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 인지 여부



(5) 보육료를 지급 받기 위해 관공서에 서류 제출 필요 인지 여부

보육료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97.0%(485명)가 □□안다□□고 응답하고, 3.0%(15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관공서에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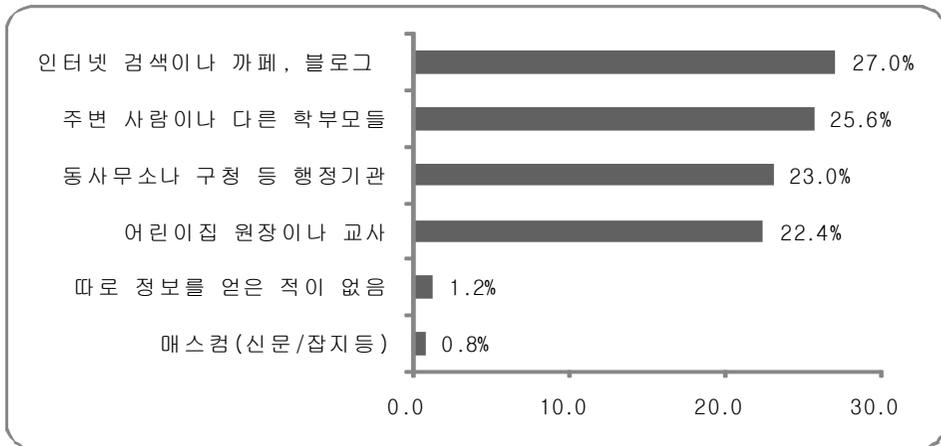
<그림> 보육료를 지급 받기 위해 관공서에 서류 제출 필요 인지 여부



(6) 보육료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보육료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블로그가 27%(13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이나 다른 학부모들(25.6%, 128명),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23.0%, 115명),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22.4%, 112명), 따로 정보를 얻은 적이 없음(1.2%, 6명), 매스컴(신문/잡지등)(0.8%, 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로 주변지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보육료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는 행정기관,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는 인터넷, 아버지만 직업을 가진 경우는 주변 사람이나 학부모, 어머니만 직업을 가진 경우는 행정기관, 어린이집, 주변 사람이나 학부모가 주 취득 경로로 나타나, 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정보 취득의 성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홍보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보다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보육료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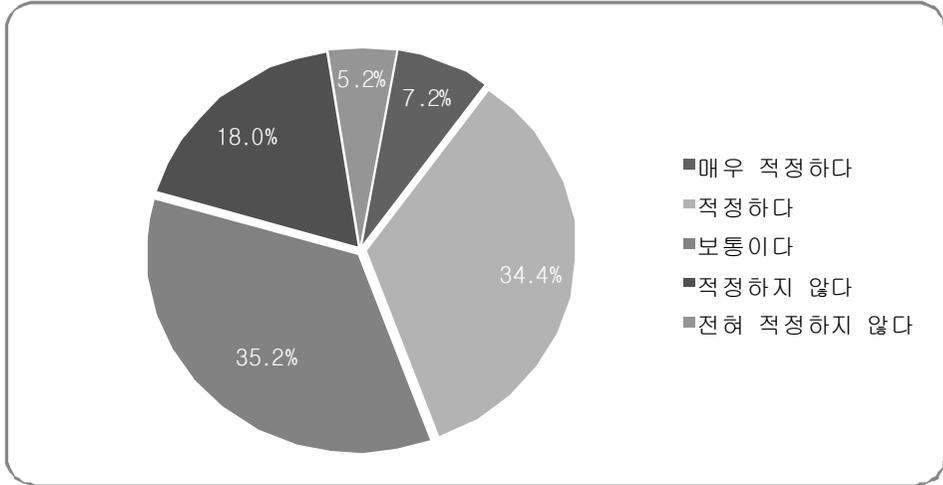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	주변 사람 이나 다른 학부모들 에게서	인터넷 검색 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매스컴 (신문/ 잡지 등)	다른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	Total (%)
전 체	(500)	23.0	22.4	25.6	27.0	0.8	1.2	100.0
■ 부모의 직업 유무 ■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66.7	0.0	33.3	0.0	0.0	0.0	100.0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14.5	26.8	20.7	35.8	1.1	1.1	100.0
어머니만	(8)	25.0	25.0	25.0	12.5	12.5	0.0	100.0
아버지만	(310)	27.4	20.0	28.4	22.6	0.3	1.3	100.0

BASE: 전체(N=500)

(7)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자녀 연령, 소득 수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41.6%인
208명이 □□적정하다□□(□□매우 적정 하다□□ 포함)고 응답하여 □□적정하지 않
다□□(□□전혀 적정하지 않다□□ 포함)는 응답 23.2%(116명)보다 많다. □□보
통이다□□는 응답은 35.2% 176명이다.

<그림>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걱정하다는 의견은 읍/면(농어촌)이 59.1%, 중소도시 41.5%, 대도시(특별/광역시) 40.5%로 나타났다.

<표> 보육료 지원 금액의 대상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의견

	응답자 수 (명)	매우 걱정 하다	걱정 하다	보통 이다	걱정 하지 않다	전혀 걱정 하지 않다	Total (%)
전 체	(500)	7.2	34.4	35.2	18.0	5.2	100.0
■ 거주지역의 규모 ■							
읍/면(농어촌)	(22)	22.7	36.4	22.7	18.2	0.0	100.0
중소도시	(152)	3.3	38.2	39.5	15.8	3.3	100.0
대도시(특별/광역시)	(326)	8.0	32.5	34.0	19.0	6.4	100.0

BASE: 전체(N=500)

(8)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실태조사 대상인 학부모 500명 중에서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51.6%인 258명이며, 비대상자는 48.8%인 242명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함께 사는 가족 수가 5명 이상 8명인 경우는 인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3~4명인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2명인 경우는 비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졌거나 갖지 못한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둘 중 한명만 직업을 가진 경우는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2~3명인 경우는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에 소득 수준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이 직장 보육시설이거나 국공립 보육시설인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가정보육시설이거나 민간 보육시설인 경우는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조사되었다.

<표>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응답자 수 (명)	안다	모른다	Total(%)
전 체	(500)	51.6	48.4	100.0
■ 함께 사는 가족수 ■				
2명	(20)	50.0	50.0	100.0
3명	(90)	37.8	62.2	100.0
4명	(303)	48.2	51.8	100.0
5명	(85)	72.9	27.1	100.0
6명	(15)	66.7	33.3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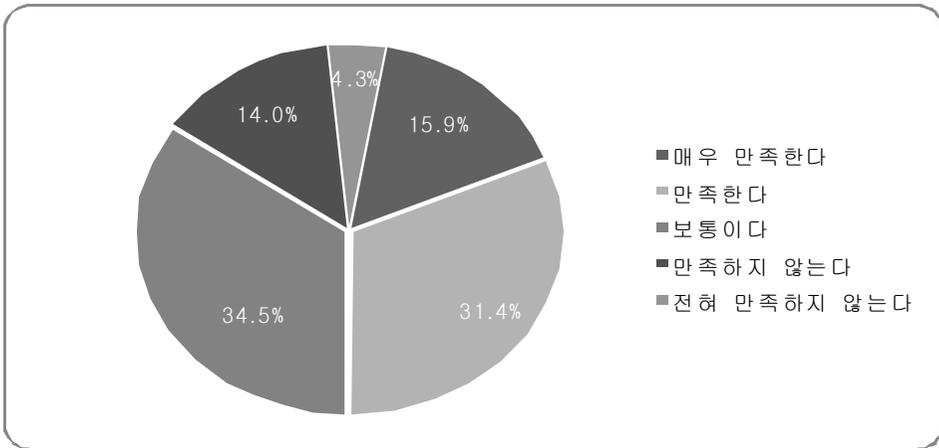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안다	모른다	Total(%)
7명	(4)	100.0	0.0	100.0
8명	(1)	100.0	0.0	100.0
■ 부모의 직업 유무 ■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3)	33.3	66.7	100.0
아버지, 어머니 둘 다	(179)	43.6	56.4	100.0
어머니만	(8)	75.0	25.0	100.0
아버지만	(310)	55.8	44.2	100.0
■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 ■				
1명	(262)	42.4	57.6	100.0
2명	(217)	59.9	40.1	100.0
3명	(21)	81.0	19.0	100.0
■ 자녀수 ■				
1명	(102)	34.3	65.7	100.0
2명	(313)	49.5	50.5	100.0
3명	(81)	79.0	21.0	100.0
4명	(4)	100.0	0.0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14.3	85.7	100.0
가정 보육시설	(64)	53.1	46.9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54.8	45.2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43.4	56.6	100.0

BASE: 전체(N=500)

(9) 현재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 만족 정도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인 258명중에서 현재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는 응답이 47.3%인 122명이며,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포함)는 응답은 18.3%인 47명이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4.5%인 89명이다.

<그림> 현재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 만족 정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규모별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읍/면(농어촌)이 78.6%, 중소도시 39.8%, 대도시(특별/광역시) 48.2%로 나타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현재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 만족 정도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Total (%)
전 체	(258)	15.9	31.4	34.5	14.0	4.3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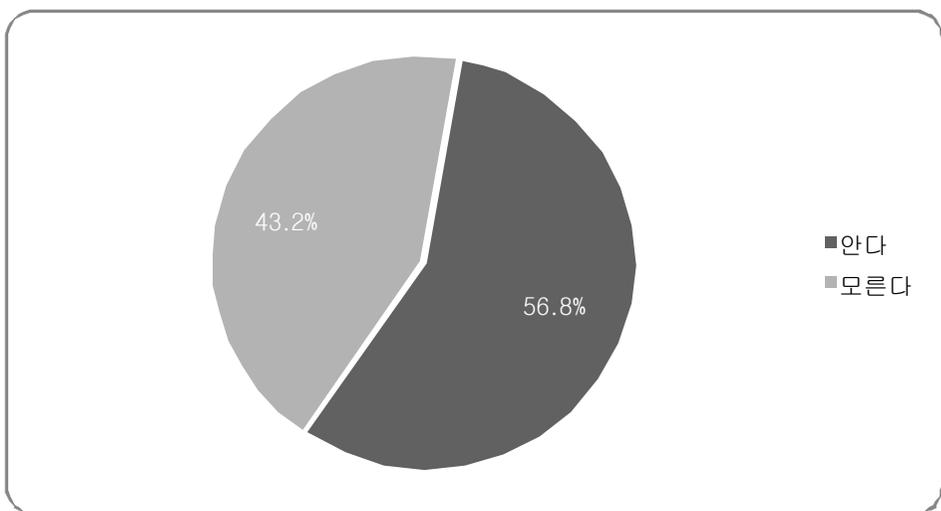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Total (%)
■ 거주지역의 규모 ■							
읍/면(농어촌)	(14)	42.9	35.7	14.3	0.0	7.1	100.0
중소도시	(78)	9.0	30.8	43.6	15.4	1.3	100.0
대도시(특별/광역시)	(166)	16.9	31.3	31.9	14.5	5.4	100.0

BASE: 전체(N=258)

(10) 2009년 7월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한 인지 여부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변경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6.8%인 284명이 알고 있으며, 43.25인 21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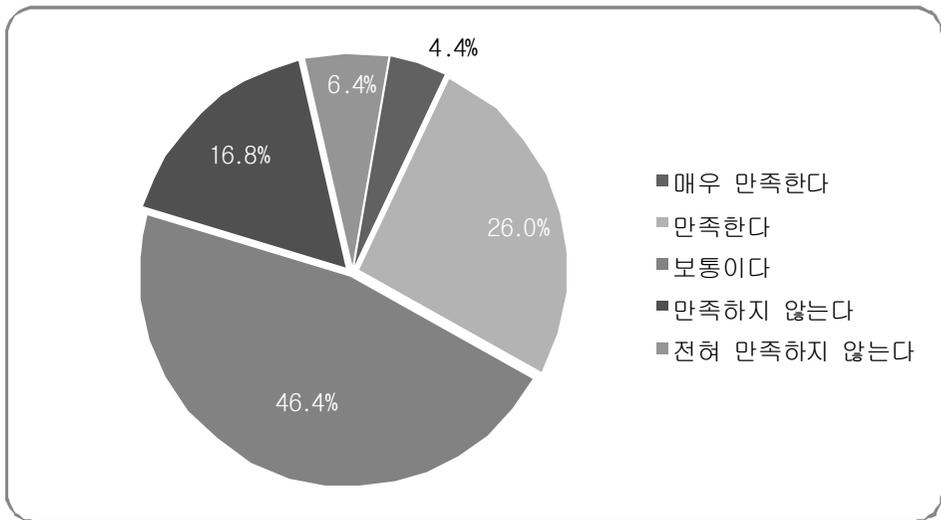
<그림>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인지 여부



(11)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한 만족 정도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대해서는 30.4%인 152명이 □□만족 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고 응답하였으며, 21.2%인 116명이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포함)고 응답하고 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6.4%인 232명이다.

<그림>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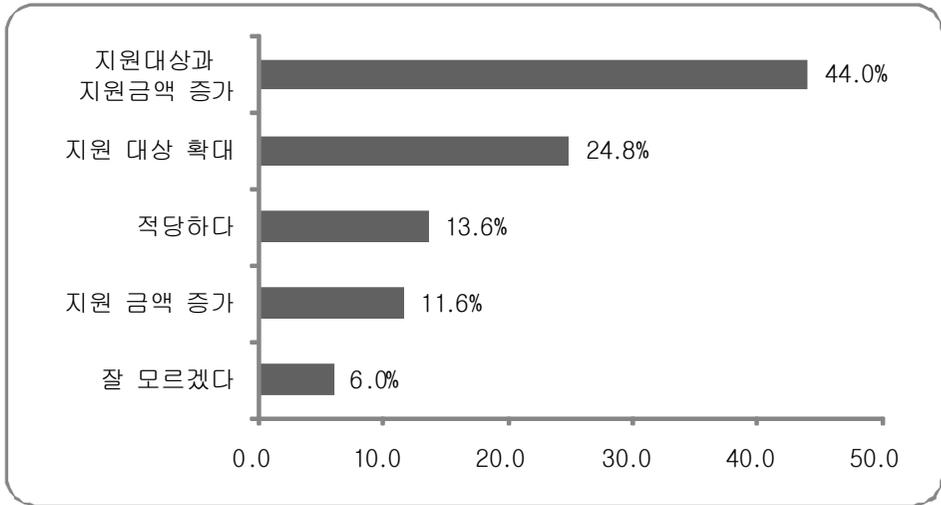


n=500

(12)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에 대해서 13.6%인 68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80.4%인 402명이 □□지원대상 확대□□(24.8%, 124명)나 □□지원 금액 증가□□(11.6%, 58명) 또는 □□두 가지 모두□□(44.0%, 220명)를 원하고 있다.

<그림> 현 보육료 지원 금액 수준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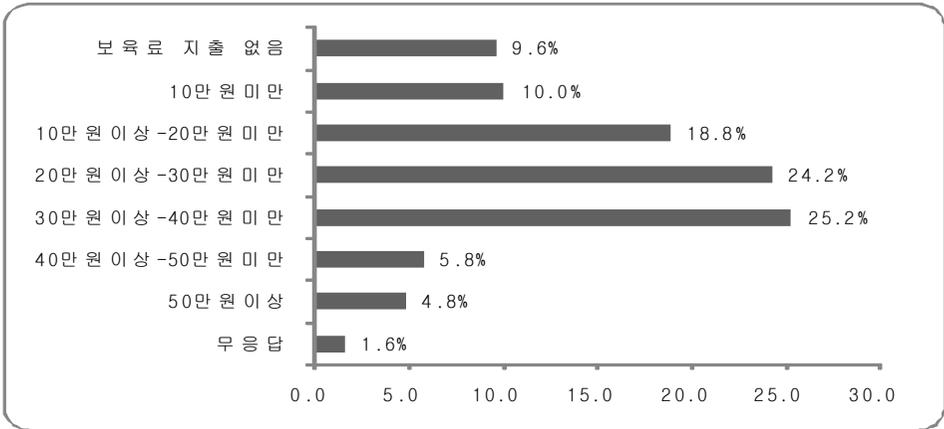
n=500

4. 보육료 관련 사항

(1)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 평균 보육료(개방형)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 평균 보육료는 □□30만원이상-40만원미만□□이 25.2%인 12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24.2%, 121명), □□10만원이상-20만원미만□□(18.8%, 94명), □□10만원미만□□ (10.0%, 50명), □□40만원이상-50만원미만□□(5.8%, 29명), □□50만원이상□□(4.8%, 24명)의 순으로 많으며, □□보육료 지출 없음□□ 경우는 9.6%인 48명이다. 이들의 평균은 250,295원이다.

<그림>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 평균 보육료(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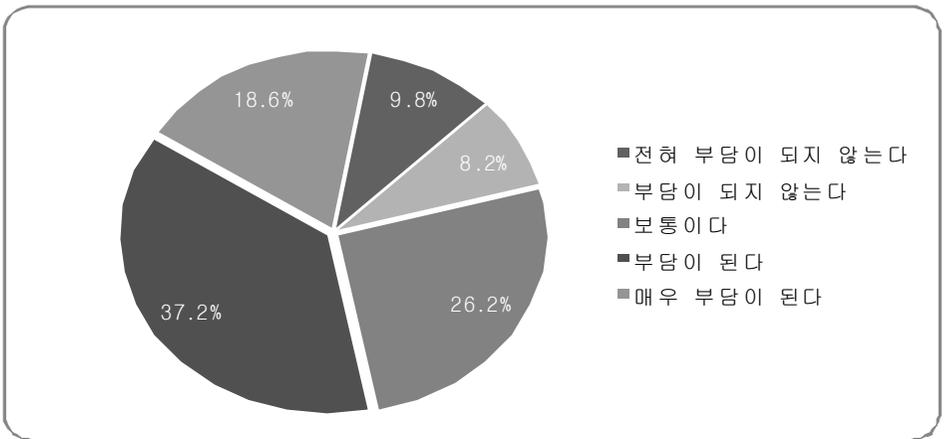


n=500

(2) 보육료의 가계 부담 정도

보육료가 가계에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이 된다□□ 포함)가 55.8%인 279명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의 18.1%(90명) 보다 많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6.2%인 131명이다.

<그림> 보육료의 가계 부담 정도



n=500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함께 사는 가족 수별 부담의 정도를 보면 7명과 8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7명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0%이며 8명은 100.0%임. 2명(50.0%), 3명(52.2%), 4명(58.1%), 5명(55.3%), 6명(46.7%)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 별 부담의 정도를 보면, 1명과 2명은 각각 53.8%와 60.8%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3명은 52.3%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수 별 부담의 정도를 보면, 1명, 2명, 3명은 각각 53.0%, 59.4%, 48.1%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4명은 75.0%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보육료의 가계 부담 정도

	응답자 수 (명)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이 된다	매우 부담이 된다	Total (%)
전 체	(500)	9.8	8.2	26.2	37.2	18.6	100.0
▣ 함께 사는 가족수 ▣							
2명	(20)	0.0	0.0	50.0	0.0	50.0	100.0
3명	(90)	6.7	5.6	35.6	42.2	10.0	100.0
4명	(303)	9.6	7.9	24.4	36.3	21.8	100.0
5명	(85)	9.4	10.6	24.7	40.0	15.3	100.0
6명	(15)	20.0	13.3	20.0	20.0	26.7	100.0
7명	(4)	75.0	0.0	0.0	25.0	0.0	100.0
8명	(1)	0.0	100.0	0.0	0.0	0.0	100.0
▣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 ▣							
1명	(262)	4.6	8.0	33.6	38.2	1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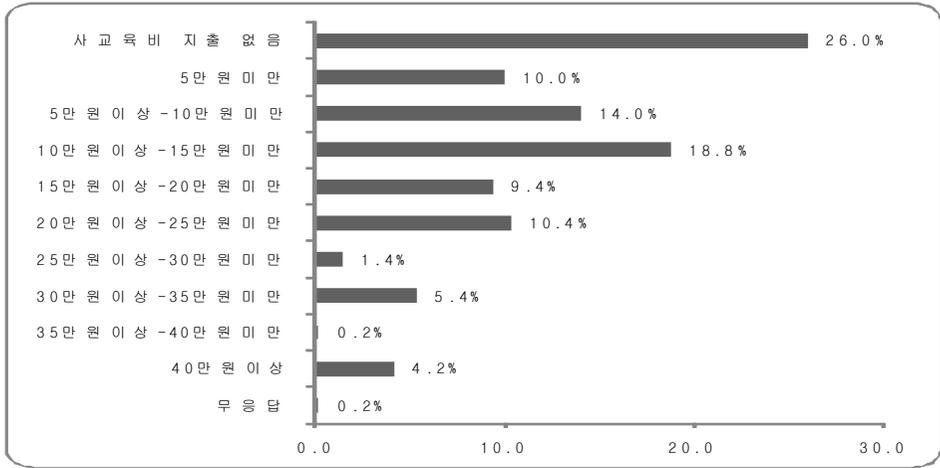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이 된다	매우 부담이 된다	Total (%)
2명	(217)	13.8	7.4	18.0	37.3	23.5	100.0
3명	(21)	33.3	19.0	19.0	23.8	4.8	100.0
■ 자녀수 ■							
1명	(102)	5.9	4.9	36.3	41.2	11.8	100.0
2명	(313)	8.9	8.3	23.3	37.4	22.0	100.0
3명	(81)	16.0	11.1	24.7	33.3	14.8	100.0
4명	(4)	50.0	25.0	25.0	0.0	0.0	100.0

BASE: 전체(N=500)

(3) 월평균 사교육비(보육료 제외)(개방형)

보육료를 제외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이상-15만원미만□□이 18.8%인 9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만원이상-10만원미만□□(14.0%, 70명), □□20만원이상-25만원미만□□(10.4%, 52명), □□5만원미만□□(10.0%, 50명), □□15만원이상-20만원미만□□(9.4%, 47명), □□30만원이상-35만원미만□□(5.4%, 27명), □□40만원이상□□(4.2%, 21명), □□25만원이상-30만원미만□□(1.4%, 7명), □□35만원이상-40만원미만□□(0.2%, 1명)의 순으로 많으며, □□사교육비 지출 없음□□의 경우는 26.0%인 130명이다. 이들의 평균은 145,428원이다.

<그림> 월평균 사교육비(보육료 제외)(개방형)



(4) 보육료의 추가 경비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의견

보육료의 추가 경비의 상한액 설정에 대하여는 80.0%인 400명이 찬성한 반면에, 20.0%인 100명이 반대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 보육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큼. 특히 주보육자가 아버지, 조부모, 가족 모두인 경우는 100.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보육료의 추가 경비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의견

	응답자 수 (명)	보육료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다	굳이 추가 경비에 대해 보육료 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Total(%)
전 체	(500)	80.0	20.0	100.0
■ 주 보육 담당자 ■				
아이의 어머니	(412)	80.3	19.7	100.0

	응답자 수 (명)	보육료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다	굳이 추가 경비에 대해 보육료 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Total(%)
아이의 아버지	(4)	100.0	0.0	100.0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65)	72.3	27.7	100.0
아이의 조부모	(17)	100.0	0.0	100.0
가족 모두	(1)	100.0	0.0	100.0
어린이집	(1)	0.0	100.0	100.0

BASE: 전체(N=500)

(5)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지불 금액(개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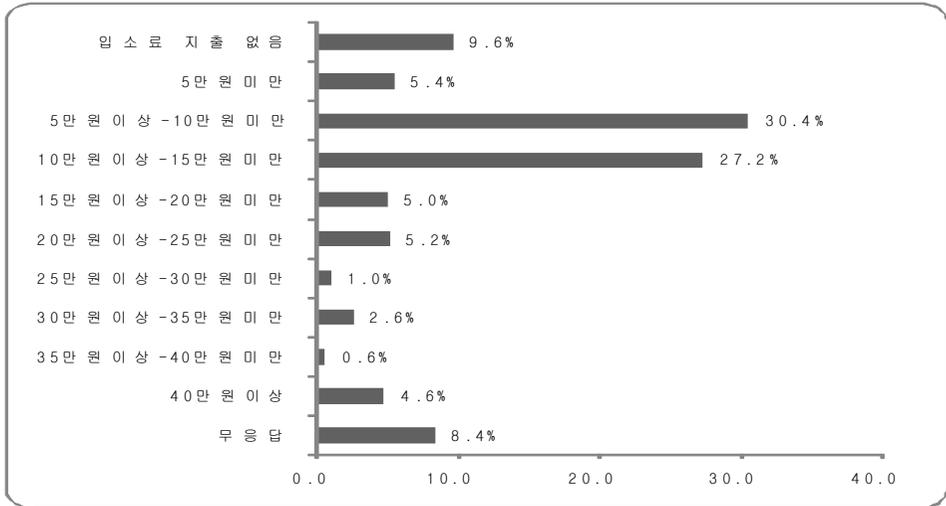
1) 입소료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소료는 □□5만원이상-10만원미만□□이 30.4%인 15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만원이상-15만원미만□□(27.2%, 136명), □□5만원미만□□(5.4%, 27명), □□20만원이상-25만원미만□□(5.2%, 26명), □□15만원이상-20만원미만□□(5.0%, 25명), □□40만원이상□□(4.6%, 23명), □□30만원이상-35만원미만□□(2.6%, 13명), □□25만원이상-30만원미만□□(1.0%, 5명), □□35만원이상-40만원미만□□(0.6%, 3명)의 순으로 많으며, □□입소료 지출 없음□□의 경우는 9.6%인 48명이다. 이들의 평균은 127,820원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농어촌)과 대도시(특별/광역시)는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각각 27.3%와 33.7%로 가장 많으며, 중소도시는 10만원 이상~15만 미만이 34.2%로 가장 많으며,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각각 42.9%, 39.1%, 41.5% 가장 많으며, 민간 보육시설은 10만원 이상~15만 미만이 3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그림> 입소료 지불 금액(개방형)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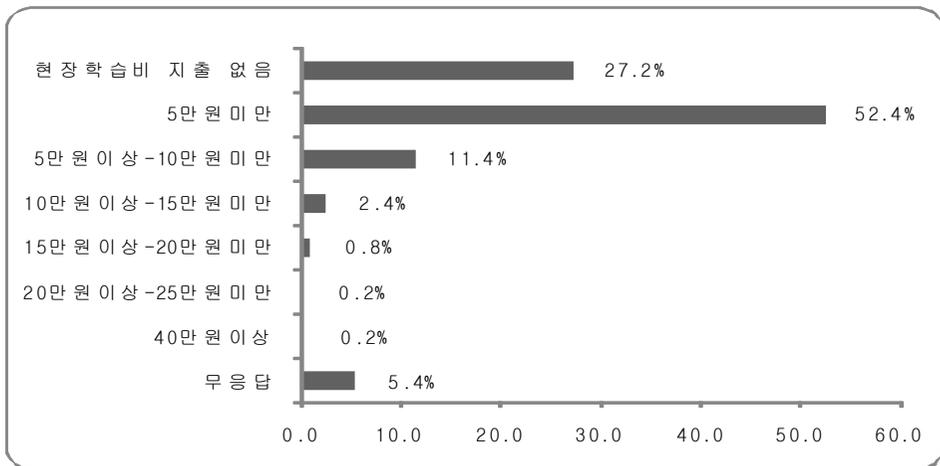
<표> 입소료 지불 금액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J*	K*	Total (%)
전 체	(500)	9.6	5.4	30.4	27.2	5.0	5.2	1.0	2.6	0.6	4.6	8.4	100.0
■ 거주지역의 규모 ■													
읍/면(농어촌)	(22)	9.1	22.7	27.3	18.2	13.6	0.0	0.0	0.0	0.0	0.0	9.1	100.0
중소도시	(152)	9.9	3.9	23.7	34.2	5.3	5.3	0.7	3.3	1.3	5.9	6.6	100.0
대도시(특별/광역시)	(326)	9.5	4.9	33.7	24.5	4.3	5.5	1.2	2.5	0.3	4.3	9.2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28.6	14.3	42.9	0.0	14.3	0.0	0.0	0.0	0.0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64)	12.5	6.3	39.1	20.3	6.3	4.7	0.0	0.0	0.0	3.1	7.8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9.3	2.5	24.8	33.1	5.3	5.9	1.2	3.7	0.9	5.9	7.4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7.5	13.2	41.5	15.1	2.8	3.8	0.9	0.9	0.0	1.9	12.3	100.0

2) 현장학습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학습비는 □□5만원미만□□이 52.4%인 26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만원이상-10만원미만□□(11.4%, 57명), □□10만원이상-15만원미만□□(2.4%, 12명), □□15만원이상-20만원미만□□(0.8%, 4명), 그리고 □□20만원이상-25만원미만□□과 □□40만원이상□□(각각 0.2%, 1명)의 순으로 많으며, □□현장학습비 지출 없음□□의 경우는 27.2%인 136명이다. 이들의 평균은 320,083원이다.

<그림> 현장학습비 지불 금액(개방형)



n=500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은 없음이 각각 57.1%, 54.7%로 가장 많으며,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은 5만원 미만이 각각 52.9%와 6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현장학습비 지불 금액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Total (%)
전 체	(500)	27.2	52.4	11.4	2.4	0.8	0.2	0.2	5.4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57.1	28.6	14.3	0.0	0.0	0.0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64)	54.7	31.3	6.3	3.1	0.0	0.0	0.0	4.7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24.5	52.9	11.8	3.1	1.2	0.3	0.3	5.9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17.0	65.1	13.2	0.0	0.0	0.0	0.0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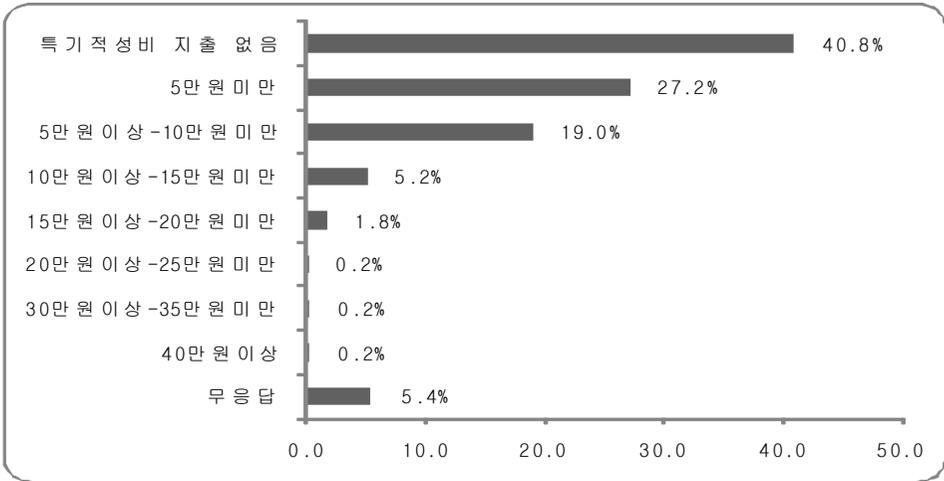
주: A*: 현장학습비 지출 없음, B*: 5만원미만,
 C*: 5만원이상-10만원미만, D*: 10만원이상-15만원미만,
 E*: 15만원이상-20만원미만, F*: 20만원이상-25만원미만,
 G*: 40만원이상, H*: 무응답

BASE: 전체(N=500)

3) 특기적성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기적성비는 □□5만원미만□□이 27.2%인 13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만원이상-10만원미만□□(19.0%, 95명), □□10만원이상-15만원미만□□(5.2%, 26명), □□15만원이상-20만원미만□□(1.8%, 9명), 그리고 □□20만원이상-25만원미만□□과 □□30만원이상-35만원미만□□및 □□40만원이상□□(각각 0.2%, 1명)의 순으로 많으며, □□특기적성비 지출 없음□□ 경우는 40.8%인 204명이다. 이들의 평균은 54,491원이다.

<그림> 특기적성비 지불 금액(개방형)



n=500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은 없음이 각각 57.1%, 67.2%, 37.8%로 가장 많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5만원 미만이 각각 41.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특기적성비 지불 금액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Total (%)
전 체	(500)	40.8	27.2	19.0	5.2	1.8	0.2	0.2	0.2	5.4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57.1	42.9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정 보육시설	(64)	67.2	23.4	7.8	0.0	0.0	0.0	0.0	1.6	0.0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Total (%)
민간 보육시설	(323)	37.8	22.9	22.0	7.7	2.5	0.3	0.0	0.0	6.8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33.0	41.5	17.9	0.9	0.9	0.0	0.9	0.0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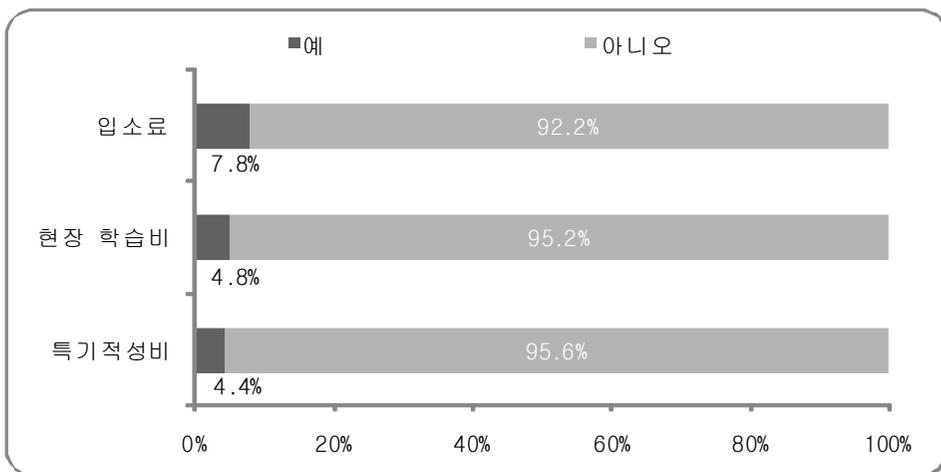
주: A*: 특기적성비 지출 없음, B*: 5만원미만,
 C*: 5만원이상-10만원미만, D*: 10만원이상-15만원미만,
 E*: 15만원이상-20만원미만, F*: 20만원이상-25만원미만,
 G*: 30만원이상-35만원미만, H*: 40만원이상,
 I*: 무응답

BASE: 전체(N=500)

(6)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 인지 여부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의 상한액에 대한 인지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그 중에서도 특기 적성비에 대한 인지도가 4.4% (22명)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는 4.8%(24명)의 현장 학습비, 그리고 입소료(7.8%, 39명)의 순으로 인지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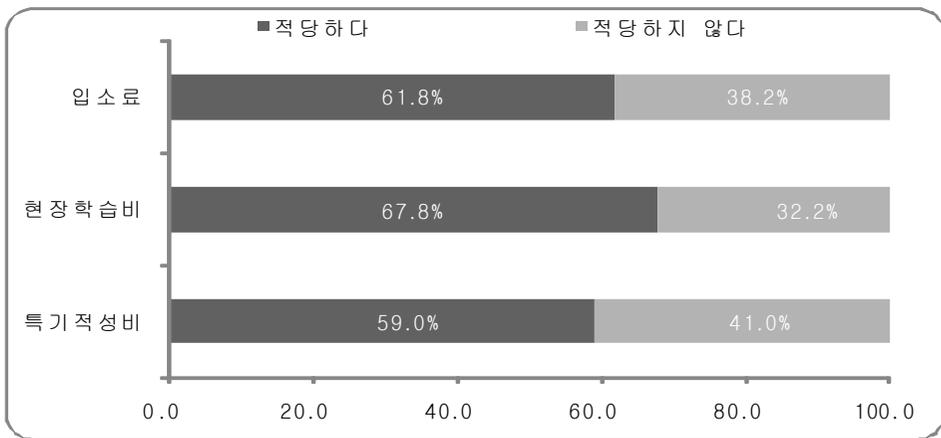
<그림>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상한액 인지 여부



(7)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 적정성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현장 학습비가 67.8%(339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61.8%(309명)의 입소료, 59.0%(295명)인 특기 적성비 순으로 높다.

<그림>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 적정성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입소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71.4%, 53.1%, 66.3%, 그리고 52.8%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수납한도액 적정성-입소료

	응답자 수 (명)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Total(%)
전 체	(500)	61.8	38.2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71.4	28.6	100.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응답자 수 (명)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Total(%)
가정 보육시설	(64)	53.1	46.9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66.3	33.7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52.8	47.2	100.0

BASE: 전체(N=500)

다음으로 현장학습비의 경우,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85.7%, 59.4%, 71.8%, 그리고 59.4%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수납한도액 적정성-현장학습비

	응답자 수 (명)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Total(%)
전 체	(500)	67.8	32.2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85.7	14.3	100.0
가정 보육시설	(64)	59.4	40.6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71.8	28.2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59.4	40.6	100.0

BASE: 전체(N=500)

마지막으로 특기적성비에 대하여, 거주 지역별로 읍/면(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특별/광역시)는 모두 적당하다는 견해가 각각 54.0%와 65.8%, 86.4%로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수납한도액 적정성-특기적성비

	응답자 수 (명)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Total(%)
전 체	(500)	59.0	41.0	100.0
▣ 거주지역의 규모 ▣				
읍/면(농어촌)	(326)	54.0	46.0	100.0
중소도시	(152)	65.8	34.2	100.0
대도시(특별/광역시)	(22)	86.4	13.6	100.0

BASE: 전체(N=500)

5. 아이 사랑 카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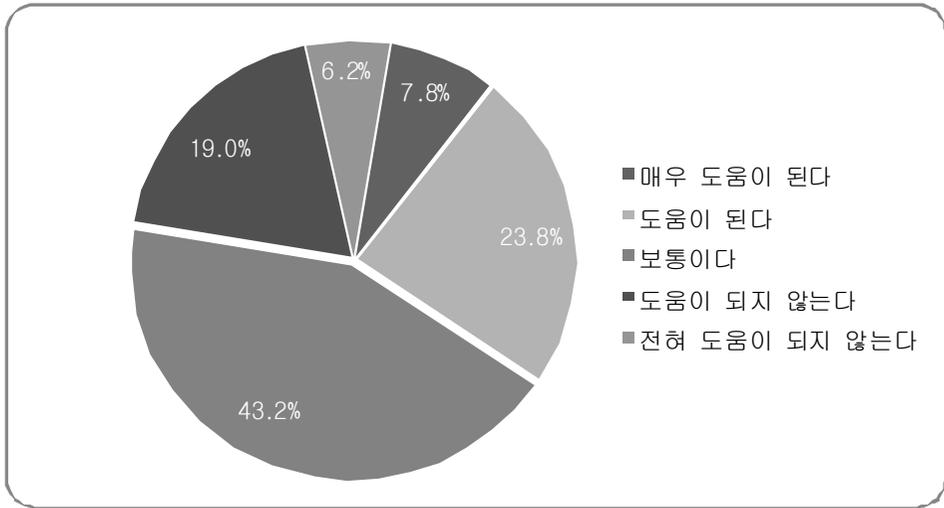
(1)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아이 사랑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84.2%인 421명이 알고 있으며, 모르는 학부모는 15.8%인 79명이다.

(2)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6%인 158명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함)는 응답(25.2%, 126명)보다 약간 많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43.2%인 216명이다.

<그림>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n=500

(3)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개방형)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된다면 보육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158명 중에서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19.6%인 31명이 □□보육료지원이 투명해짐□□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음□□(13.9%, 22명), □□편리성□□(10.1%, 16명), □□보육관련 경비를 조절할 수 있음□□(7.0%, 11명), □□어린이집의 비리 방지□□와 □□학부모가 직접 수납 가능/정확할 것 같음□□(각각 5.7%, 9명), □□어린이집 선택의 폭이 넓어짐□□(5.1%, 8명),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학부모 권리 강화□□(각각 3.8%, 6명), □□학부모가 관리 가능□□(3.2%, 5명),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느낌□□(2.5%, 4명), □□아이차별이 방지□□와 □□프라이버시 보호□□및 □□다른 교육을 더 시킬 수 있어서□□(각각 1.9%, 3명), □□서류가 간소해짐□□과 □□어린이집에 더 관심 증가□□(각각 1.3%, 2명)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4)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보육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개방형)

아이 사랑카드 도입이 된다면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126명 중에서 보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46.8%인 59명이 응답한 □□번거로움/불편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전과 같음□□(19.%, 24명),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16.7%, 21명), □□카드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3.2%, 4명), □□카드를 만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서□□(2.4%, 3명), □□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음□□(1.6%, 2명)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6. 관련 개선안의 모색을 위한 조사

(1)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25.0%인 125명이 들고 있는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청절차가 번거로움□□(23.8%, 119명), □□복잡한 보육료지원제도□□(18.2%, 91명), □□과도한 개인의 소득이나 금융정보 요구□□(15.2%, 76명),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13.4%, 67명), □□지원대상 선정이 불투명□□(1.4%, 7명), 그리고 □□홍보 부족□□(0.4%, 2명)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표>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	125	25.0
신청절차가 번거로움	119	23.8
복잡한 보육료지원 제도	91	18.2
과도한 개인의 소득, 금융 정보 요구	76	15.2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67	13.4
지원 대상 선정이 불투명	7	1.4
홍보가 부족	2	0.4
기타	4	0.8
없음	6	1.2
모름	3	0.6
합 계	500	100.0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을(27.1%), 2명(24.4%)과 3명(28.6%)은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과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를(25.6%), 2명인 경우는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을 (26.2%), 3명(24.7%)과 4명은(50.0%)어린이 집에 다니는 경우만 지원하는 것을 불합리함으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별로는 직장 보육시설은 개인의 소득이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요구를(28.6%), 가정 보육시설과(28.1%) 민간 보육시설은(24.8%)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을, 그리고 국공립 보육 시설은 보육료 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와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을 각각 24.5%씩 응답하였다.

<표> 현 보육료 지원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점

	응답자 수 (명)	A*	B*	C*	D*	E*	F*	G*	H*	I*	J*	Total (%)
전 체	(500)	18.2	23.8	25.0	13.4	15.2	1.4	0.4	0.8	1.2	0.6	100.0
▣ 2003년 이후 출생 자녀수 ▣												
1명	(262)	19.8	22.9	27.1	11.8	14.9	1.5	0.4	0.0	0.4	1.1	100.0
2명	(217)	17.1	24.4	24.0	12.9	16.1	1.4	0.5	1.4	2.3	0.0	100.0
3명	(21)	9.5	28.6	9.5	38.1	9.5	0.0	0.0	4.8	0.0	0.0	100.0
▣ 자녀수 ▣												
1명	(102)	25.5	21.6	24.5	8.8	13.7	2.0	1.0	0.0	1.0	2.0	100.0
2명	(313)	17.9	25.2	26.2	11.5	15.7	1.0	0.3	0.6	1.3	0.3	100.0
3명	(81)	11.1	21.0	22.2	24.7	16.0	2.5	0.0	2.5	0.0	0.0	100.0
4명	(4)	0.0	25.0	0.0	50.0	0.0	0.0	0.0	0.0	25.0	0.0	100.0
▣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7)	0.0	14.3	14.3	14.3	28.6	0.0	0.0	0.0	14.3	14.3	100.0
가정 보육시설	(64)	18.8	26.6	28.1	17.2	7.8	0.0	0.0	0.0	1.6	0.0	100.0
민간 보육시설	(323)	16.7	23.2	24.8	14.2	16.4	1.9	0.0	1.2	1.2	0.3	100.0
국공립 보육시설	(106)	23.6	24.5	24.5	8.5	15.1	0.9	1.9	0.0	0.0	0.9	100.0

주: A*: 보육료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B*: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
 C*: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
 D*: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 개인의 소득이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F*: 지원대상 선정이 투명하지 않다(편법이용), G*: 홍보가 부족함,
 H*: 기타, I*: 없음, J*: 모름

BASE: 전체(N=500)

(2) 보육료 지원과 관련 바라는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의견
(개방형)

보육료 지원과 관련 바라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14.8%인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12.6%, 63명),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의 간소화□□(7.4%, 37명), □□보육료 지원 금액 확대□□(5.0%, 25명), □□소득 신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4.4%, 22명), □□보육료 무료 지원□□(4.0%, 20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원□□과 □□보육료 외에 추가 경비를 지원□□(각각 2.2%, 11명), □□미취학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보육료 지원□□(2.0%, 1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지원□□(1.8%, 9명), □□맞벌이 부부에게도 혜택□□(1.6%, 8명), □□많은 사람들에게 보육료 혜택□□(1.4%, 7명),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더라도 보육료 지원□□(1.2%, 6명), □□국공립 보육 시설 증대□□(1.0%, 5명),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은 번거롭다□□와 □□더 많은 홍보□□(각각 0.8%, 4명), □□국가 차원의 시설 운영 관리감독□□와 □□초등학생에게도 지원□□및 □□교사 및 교육의 질 향상□□(각각 0.6%, 3명), □□보육료 자체가 낮아져야 한다□□와 □□국공립 보육 시설과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평등한 보조□□(각각 0.4%, 2명), 그리고 □□전체적인 지원□□(0.2%, 1명)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IV. 시설장과 학부모의 조사결과 비교

1. 비교항목표

이 장에서는 시설장과 학부모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되는 항목들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시설장과 학부모 비교 항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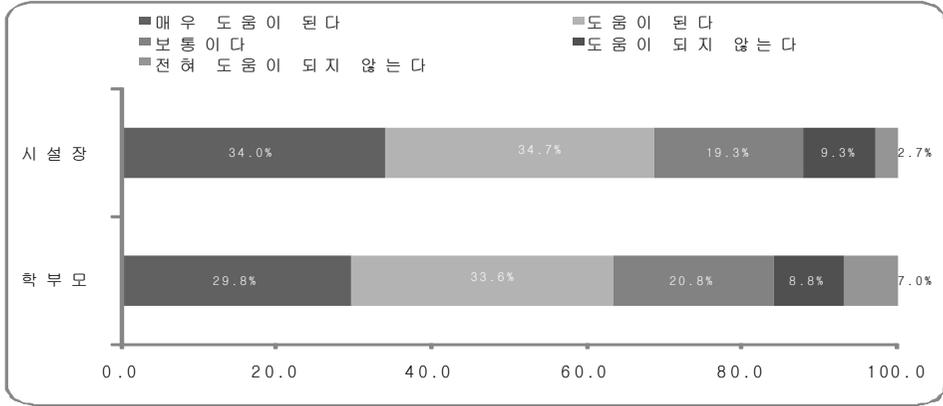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보육료 지원 도움 여부	문 4	문 5
시설별 차등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문 9	문 9
소득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문 10	문 10
소득액 기준별 지원 금액 수준 적정성 평가	문 11	문 12
수납한도액 인지 여부_입소료/현장학습비/특기적성비	문 18	문 13
수납한도액적정성_입소료/현장학습비/특기적성비	문 19	문 14
아이사랑카드 인지 여부	문 20	문 21
아이사랑카드 학부모 보육에의 도움정도	문 21	문 22

2. 조사결과 비교

(1)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에 대한 시설장과 학부모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즉,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는 응답은 학부모가 63.4%(317명)인 반면에, 시설장은 68.7%(103명)이어서 시설장들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학부모들보다 5.3% point 높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움이 되지 않는다□□)도 학부모들이 15.8%(79명)로 시설장들의 12.0%(18명)보다 3.8% point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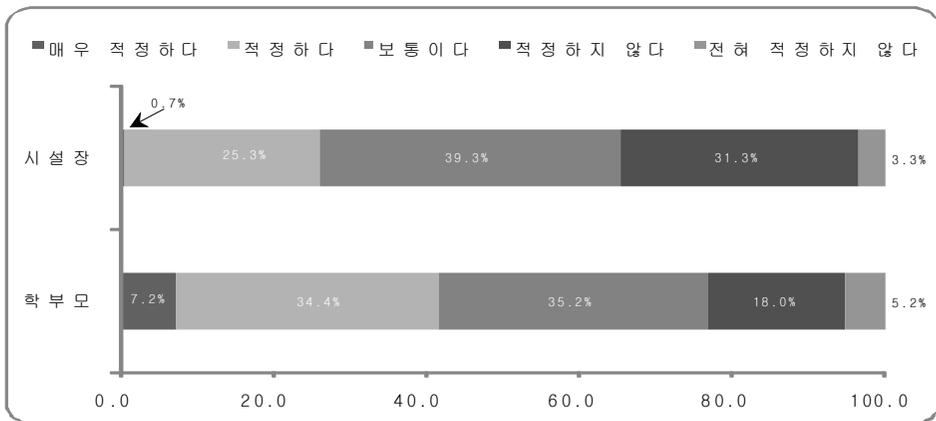
<그림> 보육료 지원이 주는 도움의 정도 비교



(2) 시설별 차등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시설별 차등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들이 시설장보다 높다. 즉, □□적정하다□□(□□매우 적정하다□□ 포함)는 응답은 학부모가 41.6%(208명)인 반면에, 시설장은 26.0%(39명)이어서 학부모들의 □□적정하다□□는 견해가 시설장들보다 15.6% point 높다. 마찬가지로,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전혀 적정하지 않다□□)도 학부모들이 23.2%(116명)로 시설장들의 34.6%(52명)보다 11.4% point 낮았다.

<그림> 시설별 차등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3) 소득 기준 변경 인지 여부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소득 기준에 대한 변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시설장들이 76.0%(114명)으로 56.8%(284명)인 학부모들보다 19.2% poin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소득 기준 변경 인지 여부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안다	284	56.8	114	76.0
모른다	216	43.2	36	24.0
합 계	500	100.0	150	100.0

(4) 소득액 기준별 지원 금액 수준 적정성 평가

소득액 기준별 지원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의 24.0%인 36명이 그리고 학부모들은 13.6%인 68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금액 그리고 양쪽 모두를 확대하거나 증대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학부모가 80.4%(402명)로 시설장 67.4%(101명)로 13.0% point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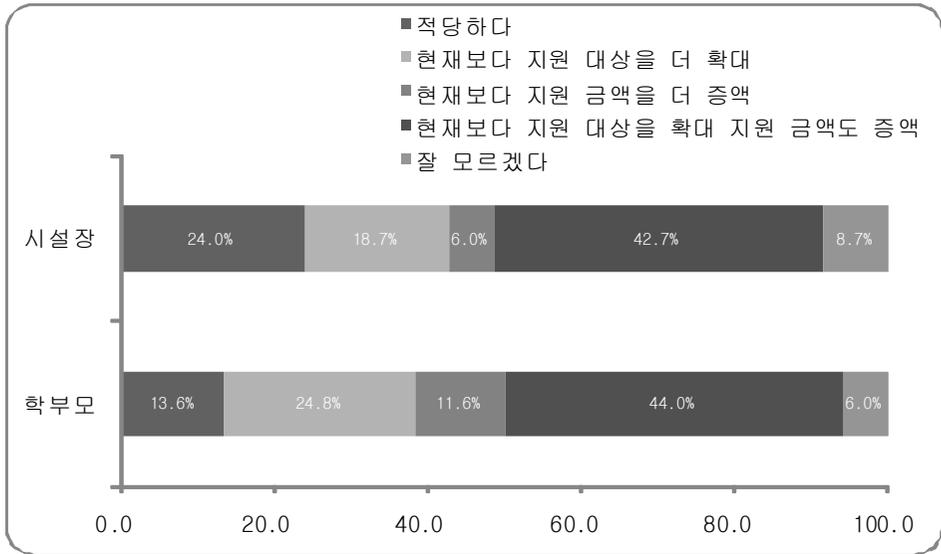
<표> 소득액 기준별 지원 금액 수준 적정성 평가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적당하다	68	13.6	36	24.0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	124	24.8	28	18.7
현재보다 지원 금액을 더 증가하여야 한다	58	11.6	9	6.0

제 3 장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하여야 한다	220	44.0	64	42.7
잘 모르겠다	30	6.0	13	8.7
합 계	500	100.0	150	100.0

<그림> 소득액 기준별 지원 금액 수준 적정성 평가 비교



(5) 수납한도액 인지 여부(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의 수납한도액에 대한 인지의 정도는 세 가지 모두 시설장들이 학부모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에 대한 시설장 대 학부모의 인지도는 각각 7.8% 대 96.7%, 4.8% 대 92.0%, 그리고 4.4% 대 90.0%이다.

<표> 수납한도액 인지 여부(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예	아니오	합 계	예	아니오	합 계
입소료	빈도(명)	39	461	500	145	5	150
	퍼센트(%)	7.8	92.2	100.0	96.7	3.3	100.0
현장 학습비	빈도(명)	24	476	500	138	12	150
	퍼센트(%)	4.8	95.2	100.0	92.0	8.0	100.0
특기 적성비	빈도(명)	22	478	500	135	15	150
	퍼센트(%)	4.4	95.6	100.0	90.0	10.0	100.0

(6) 수납한도액 적정성(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의 수납한도액 적정성에 대한 시설장들과 학부모의견해는 비교적 차이가 작은 편이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에 대한 시설장 대 학부모의 인지도는 각각 61.8% 대 70.0%, 67.8% 대 61.3%, 그리고 59.0% 대 60.7%이다.

<표> 수납한도액 적정성(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합 계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합 계
입소료	빈도(명)	309	191	500	105	45	150
	퍼센트(%)	61.8	38.2	100.0	70.0	30.0	100.0
현장 학습비	빈도(명)	339	161	500	92	58	150
	퍼센트(%)	67.8	32.2	100.0	61.3	38.7	100.0
특기 적성비	빈도(명)	295	205	500	91	59	150
	퍼센트(%)	59.0	41.0	100.0	60.7	39.3	100.0

(7)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아이 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지의 정도는 시설장(98.7%, 148명)들이 학부모들(84.2%, 421명)보다 14.5% point 높다.

<표> 아이 사랑카드 도입 인지 여부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안다	421	84.2	148	98.7
모른다	79	15.8	2	1.3
합 계	500	100.0	150	100.0

(8) 아이 사랑카드가 학부모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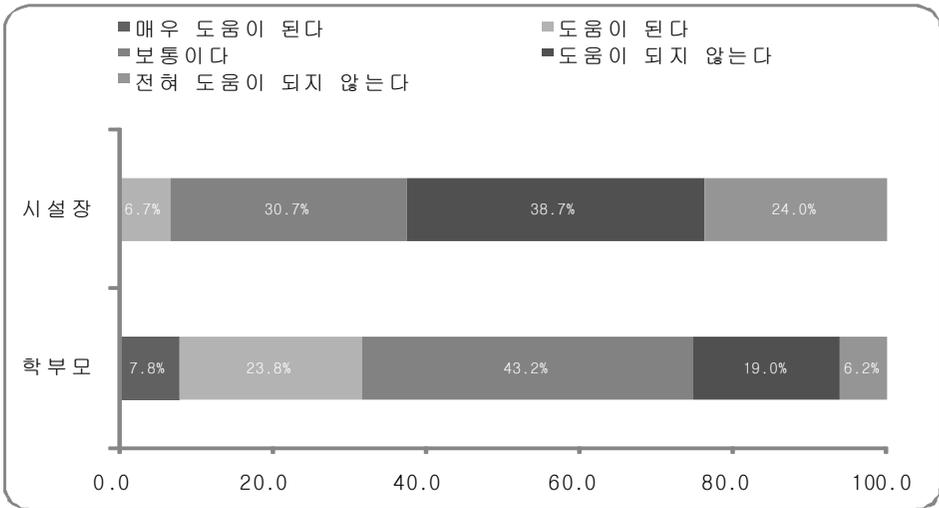
아이 사랑카드 학부모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견해는 학부모들이 시설장들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즉, 학부모들 31.6%(158명), 시설장들 6.7%(10명)로 학부모들이 24.9% point 높다. 따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포함)는 견해는 학부모 25.2%(126명), 시설장 62.7%(94명)로 학부모들이 37.5% point 낮다.

<표> 아이 사랑카드가 학부모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비교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도움이 된다	39	7.8	0	0.0
도움이 된다	119	23.8	10	6.7
보통이다	216	43.2	46	30.7

항 목	학부모		시설장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도움이 되지 않는다	95	19.0	58	38.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6.2	36	24.0
합 계	500	100.0	150	100.0

<그림> 아이 사랑카드가 학부모 보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비교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제 1 절 대안 : 관련 법령 개선안

보육료 지급과 관련된 평가를 통한 대안의 제시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보육료의 지원은 보육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육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등의 보육정책 전반에 그 대안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의 대안 역시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그 밖에 연계된 사항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기로 한다.

I. 보육료 관련 법제의 체계성 확보

1. 보육료지원사업의 위임근거 명확화

현재 보육료 지원의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 보육사업안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제 영역에서 금전급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급여의 종류, 내용, 수급자의 자격요건, 급여의 산정기초를 모두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영역이 다른 사회보장법제영역보다 시급성과 현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입법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행정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현대 입법론의 핵심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제의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은 의무지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의무지출 사업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결정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부여와 현행 소득수준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⁷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비용의 부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u>보건복지가족부령</u> 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u>거주 지역</u>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대통령령 ② 거주지역·자녀수 등을

2.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위임 근거 명확화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는 다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나, 조례의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두는 경우 규칙의 제정·개정권자의 임의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대안⁷⁹⁾의 성립이 가능하다.

78) 2008년 10월 28일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12) 참조.

79)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u>④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립보육시설과 제3항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중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

II. 보육의 공공성 · 보편적 서비스화

영유아들은 모든 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⁸⁰⁾

OECD국가들은 복지이념과 보육이념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보육의 핵심요소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생의 출발에 있어서 공평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이 된다.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이라 함은 보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보장의 정도는 보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수준과 보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가져야

6298) 참조.

80) 황취선, 앞의 논문(2008), 77면.

하는 것이다.⁸¹⁾ 보육의 공공성이 성취될 때 보육복지, 사회복지 등이 가능하게 되며 복지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장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효율성과 공평성의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하여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적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과 관리의 확대가 필요하다.⁸²⁾ 현재와 같이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고 국가가 보육료지원 등을 통하여 재정 분담만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 정부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야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공성의 확보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설형태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라는 구체적인 대안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접근성이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지역별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뜻하는 지리적 접근성⁸³⁾과 연령별 프로그램

81)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6면.

82) 성호용,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여성연구(2004), 29면 이하.

83) 특히 지리적 접근성에 대하여는 본 평가의 실태조사 결과 학부모가 현재의 보육시설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자의 39.6%인 198명이 들고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담보가 되는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공되는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이 마련되었는지를 뜻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복합적인 의미이다.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부모의 노동권 보호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보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⁸⁴⁾ 특히 취업여성에게 있어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⁸⁵⁾ 즉 보육수요자들은 가까운 거리의 보육 시설에서 안심하고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보육 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육 정책 및 법제도적 지원도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2008년 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5.5% 수준인 1,826개소로 시설 이용 아동의 약 10%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⁸⁶⁾ 보육시설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현상은 부

84) 김금숙, 앞의 논문(2009), 55-56면.

85) 황휘선, 앞의 논문(2008), 77면.

86) <표> 보육시설 일반현황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의	민간 개인				
시설수	개소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비율)	100.0%	5.5%	4.4%	42.6%	2.9%	39.7%	0.2%	46.3%	1.0%
아동수	정원	1,429,105	141,353	144,158	849,078	66,730	782,348	1,908	269,482	23,126

제 4 장 대안 및 권고

모의 선택권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통제
 제가 불가능하여 공급자 주도의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며, 보육료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 및 보호자 부담 증가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보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
 진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로 응
 답자의 63%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들고 있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보
 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90명 중 84.1%
 이 답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공보육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
 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이 타당하다고 인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의외	민간 개인				
	(비율)	100.0%	9.9%	10.1%	59.4%	4.7%	54.7%	0.1%	18.9%	1.6%
	현원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16,809
	(비율)	100.0%	10.9%	10.0%	59.0%	4.7%	54.3%	0.1%	18.5%	1.5%
	이용률	79.5%	87.3%	79.0%	78.8%	80.7%	78.7%	78.1%	78.1%	72.7%
직원수	인원	191,103	17,853	16,572	97,964	7,889	90,075	331	55,169	3,214
	(비율)	100.0%	9.3%	8.7%	51.3%	4.1%	47.1%	0.2%	28.9%	1.7%
시설1개당 아동수	33.9	67.6	78.1	46.9	55.5	46.3	22.9	13.6	48.0	
직원1인당 아동수	5.9	6.9	6.9	6.8	6.8	6.8	4.5	3.8	5.2	

식한 보육시설 원장이 68.1%이며 다음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든 경우가 24.8%, 학부모의 국공립보육시설 선호가 7.1% 순으로 나타났다.⁸⁷⁾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⁸⁸⁾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보육시설을 2배 확충한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확충된다고 하여도 전체보육시설의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보육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운영경비 보조⁸⁹⁾ 등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적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공공

87) 최선자,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46면.

88) 김승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김현숙,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20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김미숙, 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등 참조.

89)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07.10.17]”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또한 국·공립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⁹⁰⁾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2. 보육인력의 전문성 확대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동을 둘러싼 보육 환경 중에서도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⁹¹⁾이유로 원장과 교사의 소양 내지 자질을 들고 있는 경우가 전체 500명 중에서 36%인 180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적인 부분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²⁾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⁹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의 선택시 중요한 사항으로 교사의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36%로 학부모들이 높은 수준의 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설문 결과 보육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는 일관적인 사랑과 관심이 73.9%로 나타났으며,

90)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9월 5일 이해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850)참조.

91)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별 지원체계의 상이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본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시설장 15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이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하여 □□불만족□□이 59.7%로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든 것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이었다. 응답자 중 국공립시설의 장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난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5.5%,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10.9%로 나타나 시설 지원에 대한 시설장의 의견이 보육시설별로 큰 편차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장 대상 설문조사 문항 8) 참조.

92)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2-1의 결과 참조.

9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적정인력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200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270면 이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각각 19.4%, 5.2%로 나뉜다.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좀 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핌을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⁹⁴⁾

이를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있어 현장 경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인터넷 교육제도 활용) 및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우⁹⁵⁾가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의 안정적 정착 없이 직업의 전문성 확보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또한 보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즉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는 영유아기 아동이 타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자율성에 기초하여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신체, 인지,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적합한 발달 상태를 획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가 아동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인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⁹⁶⁾ 정부는 표준보육과정을 통하여 영유아의 바른 성장과 보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하는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인 보육과정의 제시는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양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가

94) 이세희,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69면.

95) 2005년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주로 12시간 근무에 보수도 한달에 60-8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것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앞의 책(2005), 271면. 2009년 현재 추산으로 1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메디컬투데이, “보육재정 증가해도 보육환경 개선 ‘제자리’”, 2009년 10월 5일자, http://ex.mdtoday.co.kr/news_naver.html?no=100494 (2009년 10월 8일 검색) 참조.

96) 유선옥, 포괄적 보육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11면.

족·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일이다.⁹⁷⁾ 다만 보편적 보육 과정은 보육서비스의 기본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이지 보편적 보육과정을 넘어서는 더 나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막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 및 보육료 지원의 현실화

(1)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와 취업모 지원

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취업모의 경우가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09년 10월 현재 15세 이상 여성의 48.6%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로 조사⁹⁸⁾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0개소인 1%로 극히 미미하다는 점⁹⁹⁾

97) 김금숙, 앞의 논문(2009), 55면.

98) 자세한 것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09년 10월 7일 검색) 참조.

99) - 직장보육시설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시도	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수	비고
		보육정원	보육현원		
계	350	23,126	16,809	2,341	
서울	91	5,974	4,511	693	
부산	20	1,189	812	116	
대구	13	883	514	66	
인천	25	1,147	859	110	
광주	14	913	717	84	
대전	17	1,570	1,178	157	
울산	10	740	639	88	
경기	84	6,076	4,559	672	
강원	6	156	125	15	
충북	9	549	341	34	
충남	15	1,016	565	62	
전북	4	211	102	15	
전남	9	696	531	59	
경북	15	808	531	72	

에서 중요하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¹⁰⁰⁾이 51.6%로 매우

시도	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수	비고
		보육정원	보육현원		
경남	14	925	658	78	
제주	4	273	167	20	

100)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여성부에서 제공한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가 있다. 아래는 시설 유형별 취업모 가정 아동의 수와 연령별 취업모 아동의 수이다.

- 시설 유형별 취업모 가정 아동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취업모가 있는 시설			
	시설수 (A)	아동수 (B)	시설수 (C)	아동수 (D)	시설비율 (E=C/A*100)	아동비율 (F=D/B*100)
전체	2,265	93,469	1,845	43,563	81.5	46.6
설립유형						
국·공립	155	12,596	128	6,490	82.6	51.5
사회복지법인	144	12,129	128	5,494	88.9	45.3
기타법인	86	5,409	74	2,516	86.0	46.5
단체	25	1,400	17	570	68.0	40.7
민간개인	1,076	50,192	882	21,904	82.0	43.6
직장	22	1,186	19	764	86.4	64.4
가정(놀이방)	752	10,313	594	5,669	79.0	55.0
공동육아	5	244	3	156	60.0	63.9

* 출처: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2004), 여성부

- 연령별 취업모 아동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취업모가 있는 시설			
	시설수 (A)	아동수 (B)	시설수 (C)	아동수 (D)	시설비율 (E=C/A*100)	아동비율 (F=D/B*100)
만1세미만	542	1,975	351	1,154	64.8	58.4
만1세	1,466	7,241	1,015	4,231	69.2	58.4
만2세	2,039	17,356	1,484	8,537	72.8	49.2
만3세	1,837	23,892	1,314	9,630	71.5	40.3
만4세	1,529	21,732	1,092	8,709	71.4	40.1
만5세	1,292	17,695	927	7,755	71.7	43.8
방과후	327	2,558	162	1,160	49.5	45.3

* 출처: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2004), 여성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의 경우 일일 평균 근로시간에 출·퇴근 시간 및 가사활동 시간, 불규칙한 야근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1일 12시간의 보육으로는 보육서비스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부가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¹⁰¹⁾ 따라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인근에 부업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사기업체의 베이비시터 파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시간외 보육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육지원센터¹⁰²⁾¹⁰³⁾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부모의 수요에 맞게 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보육교사의 풀을 확보하는 등 인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취업모의 지원을 위하여 보육 서비스와 유치원(pre-school)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더 높은 아동의 경우 방과 후 교육이나 방학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일 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필수적이다.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보육의 형태와 시간에 따라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공교육은 효과적인 질적 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10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앞의 책(2005), 267면.

102)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고 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103) 이에 따라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를 두고 각 지방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4 장 대안 및 권고

현 행	개정안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영유아
<신 설>	6.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여성의 자녀
<신 설>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와</u>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u>수급자</u> , 및 근로여성의 자녀 등의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u>지역</u>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및 소득수준 등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가정보육교사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기존 보육제도로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도입하여 실시하

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확대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¹⁰⁵⁾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육아나 출산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찾아가 1:1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23개의 시·군에서 총 261명의 가정보육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출산 후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취업여성과, 보육문제로 오랫동안 직장을 쉬어야했던 가정주부 등에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 사용자들의 호응이 크다¹⁰⁶⁾고 한다.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 제공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가정 내 보육에 대해선 아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보육 및 가정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인정 및 보육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대안의 제안 가능하다.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u>가정양육</u>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p>	<p>제 2 조(정의)</p> <p>..... .</p> <p>1. (현행과 같음)</p> <p>2.</p> <p>.....</p> <p>..... 가정보육·양육</p> <p>.....</p> <p>..... .</p>

105) 자세한 것은 2009년 2월 13일 심재철의원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21) 참조.
 106) 아시아투데이, “제2의 인생...가정보육교사로 시작하세요”, 2009년 9월 17일자 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5964>(2009년 10월 2일 검색) 참조.

제 4 장 대안 및 권고

현 행	개 정 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가정보육”이란 영유아의 가정 또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 교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보육을 말한다.
<u><신 설></u>	7. “가정보육교사”란 영유아 또는 보육교사의 가정에서 개별보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가정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제50조(경력 인정) ①·② (생 략)	제50조(경력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3) 시간연장제 등의 다양한 보육과정의 확대와 그에 대한 비용보조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율은 OECD의 Education at glance에 따르면 평균치인 12%보다 현격하게 높은 41.3%로 가계부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유아교육 가계부담율은 76.8%

인 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은 17.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보육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53.4%, 부모는 46.6%로 두고 있으며, 부모가 부담하는 46.6%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차등을 두고 있다.¹⁰⁷⁾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책임의 주된 대상자인 국가(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¹⁰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수당의 지원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한정되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경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대상의 폭이 좁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학부모 대상 조사¹⁰⁹⁾에서도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의 불평등함□□을 이유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5%에 해당하는 125명이었으며,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응답한 경우가 23.8%인 119명, □□복잡한 보육료 지원 제도□□를 들은 경우가 91명인 18.2%로 나타나 보육료 지원이 현재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 확대는 국가의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예산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산장려와 보육 지원은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므로 국가의 보육 책임 확대 없이는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져오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

10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앞의 책(2005), 268면.

108)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내지 제34조의2.

109)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22) 참조.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을 것이므로 백년대계 교육의 첫걸음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 배정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육과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과정을 신설하여 부모가 영유아를 맡김에 있어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므로 보육실태조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며,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보육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조사·발표한 표준보육단가 이상으로 결정·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육료 산정을 명문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¹¹⁰⁾을 대안으로 소개한다.

현행	개정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정의)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중일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7. “시간연장제”란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을 말한다.
<신설>	8. “야간연장제”란 1일 12시간의 보육과정을 말한다.
제 9 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 9 조(보육 실태 조사) ① 5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10) 2009년 7월 14일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61).

현행	개정안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 ④ (생략)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보건복지가족부장은 제1항의 운영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기준을 참고하고,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시설 운영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⑥보육시설의 운영자는 보호자와 협의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초과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생략)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를 결정·고시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발표한 표준보육비의 연령별 평균단가에 한국은행이 매

현행	개정안
	<p><u>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③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군·구에 신고한 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시설인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수납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④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고시하여 다음 연도 원아 모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p>

(4) 보육료 및 특기적성비 등 부대비용의 지원

보육료의 부모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를 두고 있지만, 보육료 외에 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이와 관련하여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학부모 500명¹¹²⁾에게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평균 보육료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설문한 결과,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111) 메디컬 투데이, “보육시설 필요경비 상한액 지역별 ‘천차만별’ ”, 2009년 10월 5일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00498>(2009년 10월 6일 검색) 참조.

112) 현재 자녀가 국가 지원 대상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전체 조사 학부모의 4.0%인 20명만이 대상자로 답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학부모가 대부분이어서 보육료와 정부지원의 함의를 분석하기에 급변 조사가 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5.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24.2%로 나타났으며,¹¹³⁾ 평균적으로 250,29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279명으로 55.8%에 달하였다.¹¹⁴⁾ 또한 입소료, 특기적성비, 현장학습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의 상한액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비의 경우 4.4%만이 상한액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¹¹⁵⁾ 그 금액은 입소료의 경우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비에 대하여는 □□5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경비로 인하여 정부가 보육료 지원 재정을 확대하여도 부모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보육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 상한액을 지자체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보육료와 함께 중앙에서 정하도록 하거나 필요경비를 포함하는 총 보육료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보육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 보육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된 교사가, 어떤 보육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영유아들과 어떻게 하루 일과를 전개해 나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들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¹¹⁶⁾

113)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13) 참조.

114)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14) 참조.

115)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18)

116) 김금숙, 앞의 논문(2009), 60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원되는 공공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관리·점검하는 일¹¹⁷⁾¹¹⁸⁾이다. 다른 하나는 영유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시설운영의 실제에 관한 서비스 수준의 감독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직·간접적인 보육의 수준관리의 기능을 보육정보센터가 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가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확대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공급자 간의 대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육수요자들의 정보 활용 및 대화 공간으로 유용한 보육정보센터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한계

현행 보육정책 관련 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인 시설의 경우에 두 가

117)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은 제30조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0.17]

118) 이는 전자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 카드의 도입으로 일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이사랑 카드의 도입으로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이 투명해짐□□, □□어린이집 비리방지□□ 등을 들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문항 21-1) 참조.

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규제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평가에서는 그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법제로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법제정비시에는 관련 법의 통합 등 관련 법의 체계성을 갖추는 방안에도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평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의 산정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산정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연구인력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관련 법 개정시에는 보육료의 현실화 및 그 상한액 결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 내

【단행본】

- 공인숙 외,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5.
- 권대은 외, 보육학개론, 양서원, 2005.
- 김경희 외, 보육학개론, 창지사, 2006.
- 김미숙, 인구정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성희, 여성인력활용정책의 효과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김승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방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나정·장영숙,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의 동향, 2002.
- 나정 외, 한국의 유아정책과 보육정책, 양서원, 2005.
- 노용오, 최신 영유아보육학개론, 구상, 2007.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보건복지부, 2008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사업안내, 2009.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 서문희·나정·최혜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걱정 분담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참고문헌

- 서문희 · 조애저 · 김유경 · 최은영 · 박지혜 · 최진원,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2004.
- 서문희 · 최혜선, 유은영, 민간시설 유아 기본 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적정인력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2005.
- 양옥승 외 9인 공저,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1998.
- 여성가족부, 2005년 OECD 세계여성정책동향, 여성가족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2005.
- 육아정책개발센터, OECD 영유아교육 · 보육정책 II,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 유승희 외 7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연구
포럼, 2006.
- 장혜경,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0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2006.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 조복희 외,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7.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연구(I) -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 1991.
_____, 입법이론연구(IV) -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 1996.
_____,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2003.
_____,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I) - 프랑스의 법령입안심사
기준 -, 2003.
_____,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II) - 스위스의 법령입안심사
기준 -, 2004.

_____,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Ⅲ) - 오스트리아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 2005.

_____,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지급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위
크숍 자료집, 2009.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정책과제보고서 2006.12.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박영도/장병일 역, 입법평가입문-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 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오스
트리아 입법학회 2003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논 문】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금숙,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옥례, 영유아보육사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3.

김현숙,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문무경, 영국의 육아지원서비스 현황 및 정책동향, 육아정책포럼, 2008.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2.3.

_____, 효과지향적 입법관리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월간법
제 2006.3.

변용찬, 보육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보육수요, 도시문제, 2002.

참고문헌

- 서문희, 육아선진국을 위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과제, 육아정책포럼, 2008.
- 성호용,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여성연구, 2004.
- 송승민,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체계 비교, EU학연구, 2006.
- 유선옥, 포괄적 보육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희정, 보육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젠더리뷰, 2007.
- 이경순,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세희,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선자,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방안, 월간법제 2006.5.
- _____, 법률(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국회개혁연속토론(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자료집 2004.10.
-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통권 제258호) 2006.
- 황희선, 영유아보육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II. 국 외

【단행본】

Schäffer, Heinz : **Evaluierung der Gesetz.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Österreich und im benachbarten Ausland**, Wien 2005.

Karpen, Ulrich(Hrsg.) : **Gesetzgebungslehre -neue evaluiert Legistic - freshly evaluated**, Baden-Baden 2006.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規制に関する政策評価の手法に関する研究会, **規制に関する政策評価の手法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2005.7.

山田 晟, **立法學序説 -體系論の試み**, 有斐閣 1994.

龍 慶昭 外, **政策評価の理論と技法**, 多賀出版 2001.

中島誠, **立法學: 序論.立法過程論**, 法律文化社 2007.

【논 문】

Bussmann, Werner : **Rechtliche Anforderungen an die Qualität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ZG 1998, S.127f.

ussmann, Werner : **Typen und Terminogie von Evaluationsklauseln**, LeGes 2005, S.97f.

Köck, Wolfgang : **Gesetzesfolgenabschätzung und Gesetzgebungslehre**, *Verwaltungs Archiv* 2002, Heft 1, S.1ff.

Besharov, J & Samari, N. (2000). Child-care vouchers of public services, (pp.195-223).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Ⅲ. 인터넷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hildren.seoul.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ducare.or.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wdi.re.kr/>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메디컬투데이, “보육시설 필요경비 상한액 지역별 천차만별”, 2009년
10월 5일자.

아시아투데이, “제2의 인생... 가정보육교사로 시작하세요”, 2009년 9월
17일자.

자 료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850	2008.9.5.	(이애주) 우제창·이한성· 송영길·신낙균· 김학송·양정례· 박종희·안상수· 김희철·송광호· 김기현·정양석· 박상돈·이진삼· 박상은·신영수· 조정식·김상희· 최인기·나경원· 김성수·김효재· 김옥이 의원(24인)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 운영하는 시설로 서 공공의 편의 나 복지 등을 위 한 시설로 정의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종류 중 국공립보육시 설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운영 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하되, 이미 직장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제6호 신설, 제10조 1호 개정, 제12조의2 제1·2·3항 개정	새싹플랜의 예산 안에 근거하여 별 도 재정이 필요 하지 않다고 판 단, 오히려 국공 립보육 인프라 확 충을 위해 신규 시설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본 개 정안에 근거해서 정부·지자체의 유휴공간과 시설 을 이용하는 쪽 이 재정절감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612	2008.10.28.	(임두성)·나경원· 김성조·윤석용· 송광호·황우여· 이혜훈·홍사덕· 정해길·김무성 의원(10인)발의	<input type="checkbox"/> 의무지출사업인 '차등보육료 지 원사업'과 '두자 녀이상 보육료지 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여 및 대상가구 소 득수준 결정을 대 통령령으로 변경 하여 지원의 근 거를 명확화	영유아보육법 안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1792	2008.11.6.	(손숙미)·김태원· 강명순 남경필·원희룡· 강용석 정미경·임동규· 임해규 원희목·김재경· 조문환 의원(12인)	<input type="checkbox"/> 보육의 정의를 보 육시설과 가정양 육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함(안 제2조). <input type="checkbox"/> 취약보육 대상에 다문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6조 제1항).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안전 사고 예방 및 보 상의 제도화를 위 하여 보육시설 안 전공제사업 및 안 전공제회 설립 관 련 근거를 규정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 육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보육서비스 이용 권 제도를 도입 하여 보육비용 지 원을 이용권을 통 해 지급 <input type="checkbox"/> 보육비용 지원에 필요한 보육비용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금융 재산의 조사 등 근거 규정을 마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2호, 제23조1항 개정 및 제31조의2, 제32조의 3항, 제34조의2~6, 제54조의 제2항 제6호, 제43조 제3항 신설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백만원): 2009년: 241,789 2010년: 868,029 2011년: 1,374,116 2012년: 1,771,735 <input type="checkbox"/> 보육서비스 이용권 소요 예산: 2009년: 7,556 2010년: 7,921 2011년: 8,446 2012년: 7,293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안 전 공 제 사 업 초기 2년간 소 요예산: 2009년: 1,950 2010년: 1,612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input type="checkbox"/>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		
2067	2008.11.17.	(전혜숙)·박은수·전현희·백원우·송영길·최영희·양승조·최문순·조정식·이성남 (10인)	<input type="checkbox"/> 국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책임을 명시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지자체장들이 실시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를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11조의2, 제34조 제1항 개정, 제34조의2 신설	소요예산총계 (백만원): 2009년 하반기 추계비용의 총액은 178,808백만원으로 추계됨. - 소득하위 50%: 149,008 - 소득하위 60%: 178,808 - 소득하위 70%: 208,610 - 소득하위 80%: 238,412
3821	2009.2.13.	심재철·정진섭·박준선 정병국·차명진·이범관·주광덕·윤상현·김태원 원유철 의원(10인)	<input type="checkbox"/> 보육의 범주에 가정보육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에 가정보육 및 가정보육교사 조항을 신설 <input type="checkbox"/> 비용의 보조대상에 가정보육교사를 포함 <input type="checkbox"/>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제2호 개정, 같은조 제6호, 제7호 신설, 제36조 개정, 제50조 제3항 신설	제도 시행 5년간 필요한 소요비용은 86억 7천 120만원으로 추계(국비 부담분)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3844	2009. 2. 16.	손숙미·유성엽· 이한성·손범규· 김성곤·이윤석· 이학재·김기현· 이화수·이성현· 안상수·김성수· 안효대·김소남 의원(14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설치 한 보육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자에 근로여성의 자녀 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근로여성 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	영유아보육 법안 제28조 제1항 5호의 개정, 제28조 제1항 6·7호 신설, 제34조 제1항 및 2항 개정	『의안의 비용추 계 등에 관한 규 칙』 제3조제1항 단서 제3호(의안 의 내용이 선언 적·권고적인 형 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 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4086	2009.3.6.	(임두성)김무성· 서청원·김소남· 진 영·최옥철· 안상수·이인기· 김성수·강성천 의원(10인)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 시간연장형 보육 과정을 운영하도 록 권장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보육정보센터에 서 시간연장형 보 육과정을 운영하 는 보육시설에 대 한 정보를 제공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 제29조의3 신설	『의안의 비용추 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해당 하여 미첨부
4876	2009.5.18.	(여상규)신성범· 조문환·조진래· 김재경·김종률· 오제세·김우남· 강창일·정병국· 이윤석·이한성·	<input type="checkbox"/> 이 법의 목적에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추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가 자신이 나 보호자의 인 종에 따른 차별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3항, 제17조 제2항 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924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장세환·이주영 의원(14인)	을 받지 아니하 고 보육되도록 명 문화 □ 보육시설운영위 원회의 심의 사 항에 보육시설종 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 항, 영유아의 보 육환경 개선에 관 한 사항 및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 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국공립보 육시설 및 법인 보육시설에 예산 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 분의 80 이상을 보조	및 제25조 제4항 제5호를 제8호로, 같은 항 제5호~7호까 지, 제36조 단서 신설	
5403	2009.7.7.	(원희목) 이춘식·현경병 손숙미·오제세· 김소남·박은수· 전혜숙·유정현· 이정선·임동규· 신성범 의원(12인)	다문화 가정의 자 녀에 대한 보육시 설 이용에서의 편 의향상과 평등보육 의 기회부여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 제28조 제1항 5호를 제6호로 같은 항 제5호를 신설, 제35조 제1항 개정	2010년 998억 7,200만원, 향후 5년간 9,350억 1,200만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 정(보완필요성이 있다는 부대의견 이 있음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5461	2009.7.14.	(양승조) 강창일·김우남· 신학용·송영길· 전현희·백원우· 박선숙·박은수· 최영희·오제세· 전혜숙 김재윤 의원(13인)	<input type="checkbox"/>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 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 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 <input type="checkbox"/> 5년마다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을 보완 <input type="checkbo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을 보조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등의 결정고시 관련 제도를 보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2조 6·7·8호 신설, 제9조 제1항 개정, 제24조 제5·6항 신설, 제36조 개정, 제38조 제목 외 부분은 제1항으로 같은조 제2·3·4항 신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및 제3호의 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5551	2009.7.27.	(김영선) 구상찬·권영진· 김선동·김성수· 김태원·안효대· 유승민·이사철	<input type="checkbo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하여 해당 영유아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보육법안 제34조의2 제1항·제2항 1호~4호, 제32조의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이종혁 · 이진복 · 임두성 임해규 의원(13인)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 본적인 소득보존 을 해줌으로써 양 육부담을 완화하 고 출산을 장려	제1항 개정 및 제34조의7 신설	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에 해 당하여 미첨부
5635	2009.7.31.	(오제세) 김우남 · 변재일 최옥철 · 임두성 · 강창일 임영호 · 김성곤 · 심대평 최영희 · 유성엽 · 김재운 이한성 · 강운태 · 김상희 이해봉 · 김성태 · 김종률 이명수 의원(19인)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와 장애아는 무 상으로 보육하고, 영유아(嬰幼兒) 와 장애아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순차적 으로 무상보육을 실시	영유아보육 법안 제4조 제4항, 제35조 제1항 개정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부족한 보육시 설의 확충 및 인력충원과 관 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나 본 추계서 는 이를 제외 하고 무상보육 료 지원과 관 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산정 <input type="checkbox"/> 부족한 보육시 설의 확충 및 인력충원과 관 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나 본 추계서 는 이를 제외 하고 무상보육 료 지원과 관 련된 비용에

자 료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대해서만 산정 <input type="checkbox"/> 개정안의 시행 으로 향후 5년 간 약 27조 4,2 6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5643	2009.7.31.	(임두성) 임동규·김무성 손숙미·김성수· 윤 영·강명순· 윤석용·이성현· 김소남 의원(10인)	<input type="checkbox"/> 『입양촉진 및 절 차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입양 된 영유아에 대 하여 무상보육 을 지원	영유아보유 법 개정안 제35조 제1항 개정	자료과약의 한계 로 인해 미첨부
5714	2009.8.18.	(정부)	<input type="checkbox"/> 보육비용 지원액 의 환수 <input type="checkbox"/> 과징금 제도 도입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 개정, 제40조의2 신설, 제45조 제2항 삭제, 제45조의2를 제45조의3으 로 하고, 제45조의2 신설, 제49조 개정, 제54조 제8호 삭제, 제55조, 제56조 제3항 개정, 제56조 제4·5·6항 삭제	미첨부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5715	2009.8.18.	(손숙미) 조진래·김효재· 김정권·주호영· 오제세·김을동· 권영진·서상기 임두성·이명수 의원(11인)	<input type="checkbox"/>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보육 및 양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 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재 장구 없이 금융 기관 등의 장애 계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 제34조의6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 같은 조 제2항 신설, 같은조 제3·4·5· 6항, 제43조 제1항 개정	미첨부
6131	2009.9.25.	(김영우) 이계진·신상진· 송영선·김장수· 조해진·이한성· 김옥이·이해봉· 김무성·권영세· 유승민 의원(12인)	<input type="checkbox"/>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군의 임 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 등이 생활하고 있 는 군 관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군인밀집지역” 이라 한다)에 국 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 치·운영	영유아보육 법 안 제12조 제1항의 개정 및 제2항의 신설	미첨부
5786	2009.8.27.	(오제세) 이경재·김중률 이시중·양승조· 변재일 김창수· 안민석·최인기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부정 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거 나 보조금을 유	제16조제7호 삭제,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삭제, 제49조	미첨부

자 료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유성엽 · 박상돈 의원(11인)	용(流用)하는 등 의 경우 시설은 영정지나 시설의 폐쇄 처분 대신 별칙이나 과태료 로 대체 <input type="checkbox"/> 유사 입법례에 맞 추어 과태료 규 정을 개정	중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의”를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의”로 교체, 제54조제3항 제7호 및 제8호 삭제 제56조제2항 에 제4호 신설, 같은 조 제4항~6항까 지 삭제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6298	2009.10.16.	(권경석) 조진형 · 김성조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가족부 령에서는 다시 공 립 보 육 시 설 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군·구의 조 례로 정하도록 위 임하나, 조례의 제정 근거를 시 행규칙으로 두는	영유아보육 법 안 제24조 제4항 개정	미첨부

자료 1. 영유아보육료 관련 의안비교

의안 번호	발의일	제안자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변경 조문	비고 (비용추계관련)
		의원(18인)	경우 규칙의 제정·개정권자의 임의 결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화		

자료 2.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중 비용 관련 규정

(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 5 장 비 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1.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개정 2005.09.30, 2008.11.13)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05.09.30)
3. 교재·교구비(개정 2005.09.30)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개정 2005.09.30, 2008.11.13)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개정 2005.09.30)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개정 2005.9.3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개정 2005.09.30, 2008.11.13)
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5.09.30, 2008.11.13)

②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8.11.13)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개정 2005.09.30)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센터등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1.13)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개정 2008.11.13)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08.11.13)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08.11.13)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8.11.13)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 5 장 비 용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 등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6. 8, 2008. 11. 5>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개정 2005. 2. 16, 2005. 6. 8, 2008. 11. 5>
3. 보육교사 교육비
4.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시간연장형·휴일 보육시설의 운영비
6.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7. 교재교구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8. 11. 5>

②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1. 시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조치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2. 보육시설내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3)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 5 장 비 용 등

제17조(비용의 부담)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급식비
 8. 보육교사 출산 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9. 그 밖에 차량지원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1. 당해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보호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제1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때

(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 5 장 비 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과 보육교사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사용 비용,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사회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광주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 5 장 비용의 보조와 반환

제21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
8. 기타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경우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 6 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20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2.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에 관한 비용
3. 센터의 설치·운영비
4.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6.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수당
7.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8.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9.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10.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11.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국·공립·법인·민간·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및 부모협동시설이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 결과 우수한 시설로 평가 받은 경우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 06. 05 조례 제3738호]

제2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7)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제 5 장 비 용

제18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관련법의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10·9>

1. 영아·유아·장애아 보육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재교육비
4. 취약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인건비 미 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 교재교구비 및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할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8) 강원도 보육조례

제 5 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제17조 (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시설에 관한 비용
7.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8.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9. 그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도지사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때

(9)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 5 장 비 용

제2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4. 센터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7.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운영비
8.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10.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의 정지·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0)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 5 장 비 용

제17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등에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인성학습원 설치·운영비
9.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11)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 5 장 비 용

제21조 (비용의 부담) ①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체교사 지원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7. 모·부가 외국인인 가정의 영유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영유아 건강검진비, 장애 영유아의 진단 및 판정비
9. 농어촌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아 전담교사 근무수당

10. 그 밖의 부모교육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등 도지사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비용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취약보육시설
2.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평가인증을 진행 중인 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보조조건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제 4 조(지원사업 대상) 도지사는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2. 모자보건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3. 보육지원사업
4. 그 밖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도지사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도지사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자료 3. 관련 서식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09.7.3>

(제1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①후견인 <input type="checkbox"/>
②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명	③출생 순위	④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차등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차등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차등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차등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자 료

⑤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p>『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4조의2·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면)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근로자(원)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농업소득(원) <input type="checkbox"/> 임업소득(원) <input type="checkbox"/> 어업소득(원)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업소득(원)
	재산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원)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원)
	공적이전 소득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원)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원)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원) <input type="checkbox"/>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연금(장려금, 생활 보 조금)(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원) <input type="checkbox"/> 분양권(원)
	자 동 차	<input type="checkbox"/> ⑧평가액(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input type="checkbox"/>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 장기관 인정차량, 차령10년 이상)

<p>임차 보증금</p>	<p><input type="checkbox"/> 전세·월세 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p>
<p>금융재산</p>	<p>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p>
<p>동 산</p>	<p><input type="checkbox"/> 소(원) <input type="checkbox"/> 돼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임목(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회원권(원)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원) <input type="checkbox"/> 분양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p>
<p>부채</p>	<p>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p>
<p>유의사항</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3. 비용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비용 지원결정이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자료 3. 관련 서식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면)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후견인: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 ② 주소: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 ③ 출생 순위: 신청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기재
- ④ 신청 구분: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시
(차등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표시)
- ⑤ 가족사항: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⑥ 급여계좌: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이며,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 ⑦ 소득사항: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 월평균소득 산출식: 연간소득 합계 ÷ 12개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 월평균소득 산출식: 3개월간의 소득 합계 ÷ 3월
-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 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근로자: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의 연간 급여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는 사람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영유아 추계인구

(단위 : 명)

연도	합계	영아(0~2세)				유아(3~5세)			
		소계	0세	1세	2세	소계	3세	4세	5세
1990	3,870,483	1,926,571	656,359	638,815	631,397	1,943,912	631,237	645,395	667,280
1991	3,883,148	1,978,157	685,857	654,807	637,493	1,904,991	630,277	630,432	644,282
1992	3,945,711	2,051,026	713,725	684,136	653,165	1,894,685	636,082	629,066	629,537
1993	4,030,683	2,117,566	723,892	711,589	682,085	1,913,117	651,206	634,361	627,550
1994	4,115,854	2,154,148	723,148	721,633	709,367	1,961,706	679,958	649,177	632,571
1995	4,192,911	2,160,596	720,201	720,954	719,441	2,032,315	707,213	677,895	647,207
1996	4,237,522	2,129,805	696,175	713,685	719,945	2,107,717	720,998	708,270	678,449
1997	4,231,289	2,085,322	675,996	696,967	712,359	2,145,967	718,896	719,857	707,214
1998	4,171,905	2,022,801	650,449	676,139	696,213	2,149,104	711,700	718,307	719,097
1999	4,066,423	1,943,355	623,394	645,239	674,722	2,123,068	695,210	710,608	717,250
2000	3,969,179	1,891,965	622,098	626,100	643,767	2,077,214	673,556	694,262	709,396
2001	3,846,860	1,838,595	596,105	617,730	624,760	2,008,265	643,272	672,080	692,913
2002	3,682,604	1,746,119	533,117	594,547	618,455	1,936,485	623,549	642,529	670,407
2003	3,502,786	1,619,102	494,291	531,559	593,252	1,883,684	619,580	622,535	641,569
2004	3,338,225	1,503,732	480,092	493,050	530,590	1,834,493	592,274	620,756	621,463
2005	3,166,691	1,424,179	453,778	478,335	492,066	1,742,512	529,523	591,110	621,879
2006	2,980,232	1,370,450	442,831	450,503	477,116	1,609,782	491,176	528,586	590,020
2007	2,832,282	1,338,077	449,027	439,640	449,410	1,494,205	476,281	490,314	527,610
2008	2,744,597	1,331,110	446,738	445,796	438,576	1,413,487	448,625	475,449	489,413
2009	2,691,497	1,331,263	443,017	443,528	444,718	1,360,234	437,813	447,843	474,578
2010	2,648,490	1,320,465	438,169	439,839	442,457	1,328,025	443,947	437,053	447,025
2011	2,627,098	1,305,973	432,164	435,030	438,779	1,321,125	441,691	443,178	436,256
2012	2,609,833	1,288,510	425,454	429,072	433,984	1,321,323	438,022	440,928	442,373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자 료

(2) 연도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

(단위 : 명)

연 도	계	3세	4세	5세	6세이상
1990	414,532		120,535	258,315	35,682
1991	425,535		131,832	249,897	43,806
1992	450,882	37,546	151,293	262,043	
1993	469,380	46,075	162,477	260,828	
1994	510,100	57,621	177,203	275,276	
1995	529,265	68,652	182,770	277,843	
1996	551,770	74,209	194,343	283,218	
1997	568,096	72,057	191,915	304,124	
1998	533,912	54,834	166,773	312,305	
1999	534,166	61,028	169,877	303,261	
2000	545,263	65,520	173,776	305,967	
2001	545,142	69,595	168,980	306,567	
2002	550,256	74,746	172,356	303,154	
2003	546,531	75,392	170,940	300,199	
2004	541,713	76,829	168,613	296,271	
2005	541,603	74,824	176,963	287,000	2,816
2006	545,812	77,669	170,652	292,870	4,621
2007	541,550	93,005	170,726	271,326	6,493
2008	537,822	99,499	184,178	246,871	7,274

* 자료: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3) 전국 시·도별 36개월 미만 아동수 및 가정보육 대상 적정 아동수¹⁾

(단위 : 명)

구 분	아 동 수								비 고
	계 (100%)		12개월미만 (34.8%)		24개월미만 (33%)		36개월미만 (32.2%)		
	총아동수	대상 아동수	총아동수	대상 아동수	총아동수	대상 아동수	총아동수	대상 아동수	
계	1,350,307	1,350	470,258	470	446,103	446	433,946	435	
서울특별시	261,817	262	93,087	91	86,849	86	81,881	84	
부산광역시	76,497	76	26,615	27	25,158	25	24,724	25	
대구광역시	61,174	61	20,956	21	19,993	20	20,225	20	
인천광역시	73,894	74	25,679	26	24,412	24	23,803	24	
광주광역시	41,438	41	14,177	14	13,769	14	13,492	13	
대전광역시	43,207	43	14,967	15	14,299	14	13,941	14	
울산광역시	32,513	33	11,468	11	10,664	11	10,381	10	
강 원 도	37,899	38	13,076	13	12,288	13	12,535	12	
경 기 도	351,917	370	120,899	129	117,347	122	113,671	119	
충청북도	41,138	41	14,406	14	13,469	14	13,263	13	
충청남도	56,646	57	19,718	20	18,932	19	17,996	18	
전라북도	47,784	48	16,474	17	15,525	16	15,785	15	
전라남도	47,828	48	16,916	17	15,519	16	15,393	15	
경상북도	68,197	68	23,924	24	22,191	23	22,082	22	
경상남도	91,036	91	32,063	32	29,889	30	29,084	29	
제주특별 자치도	17,322	17	5,833	6	5,799	6	5,690	6	

※ 출처 : 2007년 보육통계(보건복지가족부)

1) 의안번호 3821(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8쪽

자 료

(4) 영유아보육료 지원현황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저소득 차등 보육료 총계(①+②+③+④+⑤)									1층(①)						
										계(㉑+㉒+㉓+㉔)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592,256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378	19,375	43,211	2,695	4,991	7,556	8,814	10,226	250	8,679
서울	79,282	7,339	13,350	18,770	18,286	16,506	66	4,965	8,217	473	771	1,124	1,403	1,731	52	2,663
부산	38,042	2,949	5,863	10,075	9,423	7,591	14	2,127	3,670	187	388	599	651	779	8	1,058
대구	35,247	2,382	5,177	9,291	9,775	7,575	19	1,028	2,368	126	304	438	502	593	16	389
인천	30,510	2,596	5,058	8,019	7,632	6,591	17	597	2,001	123	267	385	461	528	12	225
광주	24,819	2,586	4,233	6,159	5,974	5,550	9	308	1,965	136	250	378	474	524	7	196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저소득 차등 보육료 총계(①+②+③+④+⑤)								1층(①)							
									계(㉑+㉒+㉓+㉔)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대전	20,263	2,035	3,777	5,680	4,843	3,657	12	259	1,413	90	192	291	348	372	8	112
울산	10,925	786	1,917	3,335	2,790	1,923	5	169	555	49	58	121	127	136	3	61
경기	120,491	12,792	21,127	30,544	28,782	25,075	60	2,111	6,089	476	775	1,172	1,330	1,498	26	812
강원	21,280	1,275	3,186	5,555	5,742	5,039	10	473	1,473	83	156	296	362	390	9	177
충북	22,805	1,542	3,509	5,918	6,023	5,288	21	504	1,486	85	182	286	336	377	13	207
충남	25,799	1,778	4,183	6,612	6,786	5,873	11	556	1,921	112	229	385	435	459	4	297
전북	33,921	3,674	5,742	7,984	7,552	6,821	41	2,107	3,298	203	362	541	570	722	28	872
전남	29,166	2,548	4,942	7,345	7,191	6,616	10	514	2,238	146	303	412	482	620	8	267
경북	39,221	3,139	6,326	10,558	9,705	7,561	18	1,914	2,615	151	262	454	487	561	13	687
경남	48,551	4,609	8,724	13,385	11,498	8,661	65	1,609	2,890	177	336	502	615	641	43	576
제주	11,934	1,042	2,309	2,846	2,915	2,688	-	134	1,012	78	156	172	231	295	-	80

* 5세이상: 시간연장 등의 보육료 지원, 방과후: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자 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2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1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30,955	2,010	3,753	5,477	6,097	6,947	18	6,653	626	5	11	38	206	262	1	103
서울	4,992	319	500	687	774	952	4	1,756	44	1	2	1	6	13	-	21
부산	2,635	141	284	447	456	507	1	799	58	-	1	-	18	20	-	19
대구	1,919	115	259	368	381	460	-	336	47	1	-	2	21	23	-	-
인천	1,420	97	206	280	325	355	-	157	14	-	-	1	1	4	-	8
광주	1,408	95	192	250	338	354	2	177	45	-	-	-	16	29	-	-
대전	1,021	66	154	205	235	266	1	94	17	-	-	1	8	7	-	1
울산	392	37	43	82	92	90	-	48	-	-	-	-	-	-	-	-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1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경기	4,243	365	571	811	902	998	-	596	93	-	3	4	31	33	-	22	
강원	1,162	67	124	245	276	291	-	159	5	-	-	-	3	2	-	-	
충북	1,014	59	134	202	220	232	2	165	38	-	-	1	18	19	-	-	
충남	1,432	81	163	288	304	338	-	258	40	-	-	7	16	13	-	4	
전북	2,817	161	319	466	486	605	6	774	25	-	-	1	10	14	-	-	
전남	1,719	109	241	317	364	475	2	211	79	2	2	6	17	24	-	28	
경북	2,131	117	220	368	388	433	-	605	53	1	1	5	19	27	-	-	
경남	2,040	132	240	360	417	434	-	457	55	-	2	9	15	28	1	-	
제주	610	49	103	101	139	157	-	61	13	-	-	-	7	6	-	-	

자 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3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1층																
	모·부자 가정 아동(㉠)								기타 모·부자보호시설·여성쉼터 등 입소아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8,132	364	1,546	2,798	3,604	4,504	18	3,066	3,498	316	454	642	709	765	222	390	
서울	2,415	86	178	307	471	599	4	770	766	67	91	129	152	167	44	116	
부산	698	25	65	99	130	186	-	193	279	21	38	53	47	66	7	47	
대구	275	6	24	53	75	84	-	33	127	4	21	15	25	26	16	20	
인천	414	17	46	77	102	128	1	43	153	9	15	27	33	41	11	17	
광주	379	27	43	91	88	112	1	17	133	14	15	37	32	29	4	2	
대전	186	10	18	47	49	52	-	10	189	14	20	38	56	47	7	7	
울산	113	8	13	29	21	31	-	11	50	4	2	10	14	15	3	2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1층															
	모·부자 가정 아동(㉠)								기타 모·부자보호시설·여성쉼터 등 입소아동(㉡)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경기	1,319	70	132	258	323	369	1	166	434	41	69	99	74	98	25	28
강원	212	8	25	37	57	75	-	10	94	8	7	14	26	22	9	8
충북	297	14	25	59	68	96	-	35	137	12	23	24	30	30	11	7
충남	302	12	45	61	81	76	-	27	147	19	21	29	34	32	4	8
전북	239	16	22	44	43	68	-	46	217	26	21	30	31	35	22	52
전남	289	20	33	57	77	80	1	21	151	15	27	32	24	41	5	7
경북	285	13	21	62	54	81	-	54	146	20	20	19	26	20	13	28
경남	440	16	49	73	105	110	1	86	355	29	45	60	78	69	41	33
제주	269	16	34	45	58	105	-	11	120	13	19	26	27	27	-	8

자 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4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2층(②)								3층(③)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179,226	15,616	29,517	43,280	42,293	37,736	88	10,696	115,786	11,109	21,288	30,925	28,589	23,855	20	-
서울	24,965	2,295	4,004	5,658	5,447	5,247	12	2,302	14,809	1,525	2,772	3,732	3,653	3,127	-	-
부산	10,910	838	1,664	2,599	2,607	2,128	5	1,069	7,689	622	1,356	2,221	1,975	1,514	1	-
대구	11,961	808	1,798	2,982	3,106	2,626	2	639	7,095	517	1,082	1,937	2,036	1,523	-	-
인천	9,209	780	1,507	2,309	2,207	2,030	4	372	5,900	494	1,038	1,644	1,500	1,224	-	-
광주	5,511	543	926	1,359	1,316	1,253	2	112	6,382	688	1,162	1,586	1,535	1,411	-	-
대전	5,993	552	1,059	1,573	1,463	1,198	1	147	4,437	460	933	1,250	1,030	763	1	-
울산	2,455	178	442	688	575	463	1	108	1,973	174	408	598	451	342	-	-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2층(②)								3층(③)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경기	29,856	3,023	5,038	6,995	6,980	6,498	23	1,299	23,910	2,610	4,337	6,274	5,701	4,981	7	-
강원	6,865	423	1,107	1,647	1,774	1,617	1	296	3,981	279	675	1,084	1,048	895	-	-
충북	7,340	511	1,175	1,851	1,850	1,652	4	297	4,218	310	713	1,120	1,104	969	2	-
충남	8,025	571	1,312	2,000	2,032	1,847	4	259	4,697	314	844	1,230	1,251	1,057	1	-
전북	13,711	1,459	2,262	3,120	2,959	2,667	9	1,235	5,880	750	1,151	1,444	1,365	1,167	3	-
전남	11,184	940	1,897	2,805	2,757	2,537	1	247	5,648	531	1,042	1,499	1,356	1,220	-	-
경북	13,264	1,025	2,118	3,248	3,125	2,518	3	1,227	7,321	660	1,354	2,059	1,821	1,426	1	-
경남	13,869	1,323	2,396	3,444	3,115	2,542	16	1,033	9,119	918	1,856	2,586	2,118	1,637	4	-
제주	4,108	347	812	1,002	980	913	-	54	2,727	257	565	661	645	599	-	-

자 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5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4층(④)								5층(⑤)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136,615	13,301	24,048	37,160	34,440	27,656	10	-	117,418	10,351	19,579	33,155	30,781	23,542	10	-
서울	16,846	1,694	3,191	4,347	4,129	3,484	1	-	14,445	1,352	2,612	3,909	3,654	2,917	1	-
부산	8,689	759	1,396	2,526	2,238	1,770	-	-	7,084	543	1,059	2,130	1,952	1,400	-	-
대구	7,683	570	1,155	2,125	2,252	1,581	-	-	6,140	361	838	1,809	1,879	1,252	1	-
인천	7,364	678	1,236	1,998	1,859	1,592	1	-	6,036	521	1,010	1,683	1,605	1,217	-	-
광주	6,319	737	1,119	1,620	1,503	1,340	-	-	4,642	482	776	1,216	1,146	1,022	-	-
대전	4,617	552	881	1,344	1,084	755	1	-	3,803	381	712	1,222	918	569	1	-
울산	2,925	200	525	925	786	488	1	-	3,017	185	484	1,003	851	494	-	-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4층(④)								5층(⑤)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경기	31,557	3,504	5,772	8,208	7,668	6,403	2	-	29,079	3,179	5,205	7,895	7,103	5,695	2	-
강원	4,675	288	691	1,310	1,323	1,063	-	-	4,286	202	557	1,218	1,235	1,074	-	-
충북	5,153	335	787	1,416	1,403	1,212	-	-	4,608	301	652	1,245	1,330	1,078	2	-
충남	5,686	446	960	1,564	1,502	1,214	-	-	5,470	335	838	1,433	1,566	1,296	2	-
전북	6,270	755	1,126	1,626	1,459	1,303	1	-	4,762	507	841	1,253	1,199	962	-	-
전남	5,799	553	1,003	1,514	1,475	1,253	1	-	4,297	378	697	1,115	1,121	986	-	-
경북	8,492	773	1,472	2,476	2,156	1,615	-	-	7,529	530	1,120	2,321	2,116	1,441	1	-
경남	12,023	1,222	2,258	3,551	2,957	2,033	2	-	10,650	969	1,878	3,302	2,693	1,808	-	-
제주	2,517	235	476	610	646	550	-	-	1,570	125	300	401	413	331	-	-

자 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6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두자녀이상 보육료 총계(①+②+③+④)						두자녀이상 보육료 3층(①)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계	108,500	19,645	28,437	34,329	20,050	6,039	29,701	5,548	8,212	9,140	5,213	1,588
서울	12,190	2,387	3,389	3,606	2,104	704	3,480	725	984	994	591	186
부산	6,399	1,061	1,663	2,186	1,175	314	1,850	307	525	602	332	84
대구	5,436	783	1,319	1,885	1,181	268	1,656	264	412	571	328	81
인천	5,428	960	1,422	1,684	1,041	321	1,465	244	398	481	254	88
광주	5,522	1,042	1,401	1,713	1,036	330	1,839	348	489	557	335	110
대전	3,952	811	1,116	1,252	601	172	1,208	236	376	375	164	57
울산	2,116	297	581	765	377	96	477	78	145	165	75	14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두자녀이상 보육료 총계(①+②+③+④)						두자녀이상 보육료 3층(①)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경기	25,452	5,326	6,781	7,628	4,342	1,375	6,209	1,318	1,676	1,837	1,043	335
강원	3,676	436	849	1,291	820	280	989	148	255	325	194	67
충북	4,053	524	1,005	1,350	898	276	1,093	154	288	351	231	69
충남	4,686	624	1,181	1,515	1,040	326	1,127	147	317	355	236	72
전북	5,670	1,119	1,439	1,743	1,034	335	1,707	349	469	504	294	91
전남	5,278	950	1,343	1,569	1,050	366	1,613	302	458	480	286	87
경북	6,354	1,089	1,630	2,187	1,153	295	1,733	310	471	575	297	80
경남	9,832	1,885	2,597	3,235	1,686	429	2,456	490	704	746	404	112
제주	2,456	351	721	720	512	152	799	128	245	222	149	55

자 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

시·도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타(④)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 상	방과후
계	1,049	121	278	346	215	89	122,857	15,644	1,081	913	1,593	1,979	2,244	4,538	3,296
서울	3	1	1	-	-	1	17,218	2,408	200	119	189	332	388	775	405
부산	5	-	-	5	-	-	7,080	1,058	66	54	125	126	128	314	245
대구	7	-	2	3	1	1	6,170	1,123	38	57	96	146	156	338	292
인천	11	1	4	5	1	-	6,493	760	34	40	73	105	114	218	176
광주	2	-	-	-	1	1	6,432	737	8	34	68	75	96	219	237
대전	-	-	-	-	-	-	3,273	401	31	32	83	50	61	110	34
울산	1	-	-	1	-	-	1,491	538	47	42	55	64	77	129	124
경기	80	14	17	22	15	12	25,015	3,106	291	220	320	410	492	881	492

자료 4. 관련 통계 자료

시·도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타(④)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 상	방과후
강원	54	2	12	16	17	7	5,257	338	15	33	48	52	40	100	50
충북	41	4	12	15	9	1	5,647	433	9	14	52	68	64	131	95
충남	106	12	20	45	18	11	6,111	564	21	37	57	76	85	179	109
전북	109	11	21	42	22	13	8,015	689	39	32	51	65	85	231	186
전남	166	17	47	47	40	15	7,400	814	28	47	80	101	115	281	162
경북	72	5	20	18	24	5	6,880	1,142	49	59	118	134	169	300	313
경남	100	19	26	38	12	5	8,380	1,223	198	77	128	125	126	254	315
제주	292	35	96	89	55	17	1,995	310	7	16	50	50	48	78	61

※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등에 지원하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1) 시설장 대상 설문지

영·유아 보육법제에 관한 인식 조사(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원 ○○○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는 시설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어 응답하신 시설장님의 귀한 의견은 영유아보육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8.

☞ 선 문

SQ1) 어느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나요?

- ① 서울
- ② 경기(인천포함)
- ③ 강원
- ④ 충청
- ⑤ 경상
- ⑥ 전라

자 료

SQ2) 지역의 규모는 어떠한가요?

-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농어촌)

SQ3) 운영하시는 보육 시설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국, 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 ② 민간(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 포함)
- ③ 가정
- ④ 직장보육시설

SQ4) 운영하시는 보육시설의 영아반과 유아반의 보육 정원은 각각 몇 명입니까?

영아반: ()명, 유아반: ()명=총 ()명
(만 0~2세까지) (만 3세부터)

SQ5) 운영하시는 보육 시설에 고용된 교사는 영아반과 유아반 각각 몇 명입니까?

영아반: ()명, 유아반: ()명=총 ()명

SQ6) 운영하시는 보육 시설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몇 시입니까?

시작시간: () ~ 종료시간: ()

SQ7) 운영하시는 보육 시설의 보육시간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 ① 시간 연장
- ② 24시간

- ③ 휴일
- ④ 방과 후 교육

Part 1. 보육료 관련 인지

문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필요한 내용은 알고 있다
- ③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
- ④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안다.
- ⑤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

문2) 정부의 영유아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지급방식과 지급 수준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의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 ③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 알지만, 잘 모른다.
- ④ 지급 관련 내용을 거의 모른다.
- ⑤ 지급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

문3) 귀하께서는 보육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보육시설별로 다른 보육시설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 ②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보육시설별로 다르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 ③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만 알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 ④ 보육료 상한선에 대해 거의 모른다.
- ⑤ 보육료 상한선에 대해 전혀 모른다.

문4)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급은 보육시설별로 차등지급 방식에 따라 직접 시설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보육시설별로 다른 지급방식 및 보육료 지원 단가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 ② 지원 단가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보육시설별로 다른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 ③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식만 알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 ④ 보육료 차등지급 방식에 대해 거의 모른다.
- ⑤ 보육료 차등지급 방식에 대해 전혀 모른다.

문5) 국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과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Part 2. 차등보육료 관련 만족도 및 적정성 평가

문6)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문 6-1로 가시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 6-1로 가시오

문6-1) 만족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① 보육료 지원 방식(서류 제출 후,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 ② 보육료 지원 대상(소득별, 연령별)
- ③ 보육료 지원 액수
- ④ 기타()

문7)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정하다
- ② 적정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지 않다 -> 문 7-1로 가시오
- ⑤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 7-1로 가시오

문7-1) 적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조절하면 적정할 것 같으세요?

- ① 현재보다 지원 단가를 낮춰야 한다.
- ② 10~30% 정도 증가
- ③ 30~50% 증가
- ④ 50%~70% 증가
- ⑤ 70%~100% 증가
- ⑥ 기타()

문8) 현재 보육시설별 지원체계는, 국공립 시설은 인건비 지원을, 민간 시설에는 영유아 연령별로 기본보조로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별 지원체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8-1) 만족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8-2)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9)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별, 자녀연령별, 가구원수,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적정하다
- ② 적정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지 않다> 문 9-1로 가시오
- ⑤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 9-1로 가시오

문9-1) 적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문10) 정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

문11) 현재 보육료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0~50%/50~60%/60~70%로 층을 나누어 보육료의 전액, 60%,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58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339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 60%, 436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

자 료

액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 금액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 ②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
- ③ 현재보다 지원 금액을 더 증가하여야 한다.
- ④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하여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문12) 정부가 소득별, 자녀 연령별, 가구원수,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소득에 따른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효과가 있다.
-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 ③ 효과가 없다.
- ④ 전혀 효과가 없다.

Part 3. 추가경비 및 보육시간에 따른 지원체제 평가

문13) 보육료 이외의 학부모 부담 추가경비 수납 한도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문 14 전에 읽어주세요

* 입소료는 최소 5만원~9만 8천원, 현장학습비는 월 1~6만원, 특기적성비는, 월 3만원~8만원까지 그 한도액입니다.

문14) 보육료 이외의 학부모 부담 추가경비 수납 한도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3~14>

항 목	문 13. 추가경비 수납한도액 인지여부	문 14. 수납한도액 적정성
입소료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현장학습비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특기적성비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문15)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경비 중 그 한도액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무엇인가요?

- ① 입소료
- ② 현장학습비
- ③ 특기적성비
- ④ 세 개 모두
- ⑤ 없음

*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휴일 보육료는 하루 보육료의 1.5배 내에서 결정되고, 시간제로 맡기는 경우 시간당 2,600원,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시간당 2,400원을 지원합니다.
야간 보육은 정부가 정한 월보육 지원 단가의 100%, 24시간 보육의 경우에는 200% 한도내에서 결정됩니다.

문16) 현재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의 한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하다.
- ② 적당하지 않다.

문17) 현재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문 17-1로 가시오
- ② 만족한다. → 문 17-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7-2로 가시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7-2로 가시오

문17-1)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7-2) 만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4. 시설별 지원 만족도 평가

☞ 다음의 문18~19번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시설장님(SQ3의 ①)에게만 물어볼 것

문18)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 문 18-1로 가시오
- ② 만족한다. → 문 18-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8-2로 가시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8-2로 가시오

문18-1)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8-2) 만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료

문19) 정부가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교육등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별 지원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 문 19-1로 가시오
- ② 만족한다. → 문 19-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9-2로 가시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 19-2로 가시오

문19-1)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9-2) 만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의 문20번은 민간(사회복지법인 제외한 법인 포함), 가정시설 시설장님(SQ3의 ②③), 직장보육시설 시설장님((SQ3의 ④)에게만 물어볼 것

문20) 정부가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는 기본보조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 문 20-1로 가시오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② 만족한다. → 문 20-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문 20-2로 가시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문 20-2로 가시오

문20-1)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0-2) 만족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5. 아이사랑카드

문21) 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09년 9월부터 도입되는 <i-사랑 카드> 또는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

문22) 정부의 보육료 지급 방식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되던 것에서 ‘09년 9월부터 전자바우처로 바뀌는 것이 학부모의 보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문 22-1로 가시오
- ② 도움이 된다.-> 문 22-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2-2로 가시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2-2로 가시오

문22-1)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2-2)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6. 향후 개선점 모색

문23) 생각하시기에 보육료 지원제도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
입니까?

- ① 보육료 지원 단가
- ② 보육료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 ③ 보육료 지원 방식
- ④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 ⑤ 기타()

문24) 향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이 생기면 좋겠다’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바라는 점
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위해 시설장님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DQ2)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69세
- ⑥ 70세 이상

DQ3) 현장 교육 경력(보육교사 경력 포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20년
- ④ 20-30년
- ⑤ 30-40년
- ⑥ 40년 이상

DQ4) 보육 시설을 운영하신 총 경력(보육교사 경력을 제외한 시설 운영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① 5년 미만
- ② 5-10년
- ③ 10-20년
- ④ 20-30년
- ⑤ 30-40년
- ⑥ 40-50년
- ⑦ 50년 이상

(2) 학부모 대상 설문지

영·유아 보육법제에 관한 인식 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원 ○○○입니다.

본 설문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귀한 의견 하나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8.

☞ 선 문

SQ1)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 ① 서울
- ② 경기(인천 포함)
- ③ 강원
- ④ 충청
- ⑤ 경상
- ⑥ 전라

SQ2)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규모는 어떠한가요?

-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② 중소도시③ 읍/면(농어촌)

SQ3) 댁에 자녀가 몇 명 있으세요? ()명

SQ3-1) 자녀 중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몇 명이세요?
()명 → 없으면 면접중단

기준표

만 0세	08.1.1일 이후~ 현재 출생
만 1세	07.1.1~07.12.31
만 2세	06.1.1~06.12.31
만 3세	05.1.1~05.12.31
만 4세	04.1.1~04.12.31
만 5세	03.1.1~03.12.31

SQ4-5)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SQ4. (03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는 몇 년 생인가요?	SQ5. 그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까?
1	()년=> 만 ()세	① 예 ② 아니오
2	()년=> 만 ()세	① 예 ② 아니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한 명도 없으면 면접 중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이 있으신 경우, 이제부터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

SQ6)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떤 시설인가요?

- ①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 ② 민간(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 포함)-영유아 21인이상 보육 시설

자 료

- ③ 가정-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보육 시설
- ④ 직장보육시설

SQ7) 자녀는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 입니까?(등/하원 시간 제외)

()시 ~ ()시 = 총 ()시간

SQ8) 다음 중 자녀가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 ① 장애아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③ 한부모 가정 아동
- ④ 해당사항 없음

Part 1. 보육시설 이용 현황

문1)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에 보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 ② 맞벌이 등 직장생활로 인해 직접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 ③ 집에서 보살피는 것이 힘들어서
- ④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더 좋을 것 같아서
- ⑤ 또래 아이들과 지내게 하고 싶어서
- ⑥ 기타 ()

문2) 보육시설(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보육시설(사회복지 법인 포함)
- ② 민간 보육시설(사회복지 법인을 제외한 법인 포함)
- ③ 가정운영 보육시설
- ④ 직장보육시설
- ⑤ 기타()

문2-1) 위 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을 믿을 수 있어서
- ②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이 만족스러워서
- ③ 집과 가까워서
- ④ 직장과 가까워서
- ⑤ 보육시간이 길어서
- ⑥ 보육료가 저렴해서
- ⑦ 기타()

문2-2) 그렇다면 지금 자녀를 보내는 보육시설을 선택하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 ① 원장과 교사의 소양이나 자질을 믿을 수 있어서
- ②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이 만족스러워서
- ③ 집과 가까워서
- ④ 직장과 가까워서
- ⑤ 보육시간이 길어서
- ⑥ 보육료가 저렴해서
- ⑦ 기타()

Part 2. 영유아 보육법 관련

문3) 국가가 영유아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 ① 안다
- ② 모른다

문4) 국가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과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5)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세요?

- ① 안다
- ② 모른다

문6) 현재 보육료 지원금액은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1) 보육료 지원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 ① 안다 ② 모른다

자 료

2) 보육료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 ① 안다 ② 모른다

3) 보육료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 ① 안다 ② 모른다

문7)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일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 ① 안다
② 모른다

문8) 보육료 지원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얻으시나요?

- ①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②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과 상담을 통해
③ 주변 사람이나 다른 학부모들에게서
④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⑤ 기타 ()
⑥ 따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

문9) 현재 보육료지원은 소득별, 자녀연령별, 가구원수,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적정하다
② 적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정하지 않다
⑤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9-1) 귀하께서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 10으로 가시오.

문9-2) 귀하께서 현재 받고 계시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10) 정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안다
- ② 모른다

문11) 정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자 료

문12) 현재 보육료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0~50%/50~60%/60~70%로 층을 나누어 보육료의 전액, 60%,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339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 60%, 436만원 이하이면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 금액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적당하다
- ②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
- ③ 현재보다 지원 금액을 더 증가하여야 한다.
- ④ 현재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하여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Part 3. 보육료 관련

문13) 현재 자녀에 대해(응답대상 자녀)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원

문14) 현재 자녀에 대해(응답대상 자녀)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료는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세요?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② 부담이 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담이 된다.
- ⑤ 매우 부담이 된다.

문15) 자녀를 키우실 때 드는 비용 중 어린이집에 수납하는 비용을 제외한 사교육비(학습지, 학원,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16) 지금 현재,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수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내는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의 경비는 각 지역의 시,도지사가 한도액을 정해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경비에 대해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료

- ① 보육료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다.-> 문 17로 가시오.
- ② 굳이 추가 경비에 대해 보육료 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문 16-1로 가시오.

문16-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17) 입소료 질문 →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 이외에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 내는 입소료를 얼마나 지불하셨나요?

현장학습비 질문 → 그럼, 한 달 평균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로는 얼마나 지불하세요?

특기적성비 질문 → 어린이집의 특기적성비로는 얼마나 지불하세요?

문18) 입소료 질문 → 정부가 정한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내는 입소료의 수납 한도액을 알고 계세요?

현장학습비 질문 → 현장학습비의 한도액은 알고 계신가요?

특기적성비 질문 → 특기적성비는요?

* 문 19전에 읽어주세요

* 입소료는 최소 5만원~9만 8천원, 현장학습비는 월 1~6만원, 특기적성비는, 월 3만원~8만원까지 그 한도액입니다.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문19) 입소료 질문 → 입소료의 수납 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학습비 질문 → 현장학습비는요?

특기적성비 질문 → 특기적성비는요?

<문 17~19>

항 목	문 17. 추가경비 수납액	문 18. 추가경비 수납한도액 인지여부	문 19. 수납한도액 적정성
입소료	0만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현장학습비	0만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특기적성비	0만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Part 4. 아이사랑 카드

문20) 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09년 9월부터 도입되는 <i-사랑 카드> 또는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① 안다
- ② 모른다

* 09년 9월부터 도입되는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는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보육 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합하여 학부모가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문21) 정부의 보육료 지급 방식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되던 것이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로 바뀌면 학부모의 보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22) 정부의 보육료 지급 방식이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되던 것에서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로 바뀌는 것이 학부모의 보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문 22-1로 가시오
- ② 도움이 된다. → 문 22-1로 가시오

자료 5.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③ 보통이다. → 문 23으로 가시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 22-2로 가시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 22-2로 가시오

문22-1)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2-2)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Part 5. 향후 개선점 모색

문23) 현재 보육료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육료지원제도가 복잡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②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
- ③ 소득이나 연령,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불평 등하다
- ④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⑤ 개인의 소득이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 ⑥ 기타 ()

문24) 향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이 생기면 좋겠다’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학부모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질문 없이 목소리로 구별)

- ① 남자
- ② 여자

DQ2) 올해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69세
- ⑥ 70세 이상

DQ3)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DQ4) 현재 태의 아이의 보육은 주로 누가 담당합니까?

- ① 아이의 어머니
- ② 아이의 아버지
- ③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 ④ 아이의 조부모
- ⑤ 기타()

DQ5) 현재 학부모님 중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만
- ② 어머니만

자 료

- ③ 아버지, 어머니 둘 다
- ④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음
- ⑤ 기타

DQ6) 닥의 월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